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성폭력 2차 피해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본 연구보고서는 2003년도 법무부 용역과제로서
연구내용은 법무부의 공식견해가 아님

연 구 진

책임연구원 : 장필화

공동연구원 : 김정희, 박중선, 안수진, 이경환
이미경, 이영란, 조중신

발 간 사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이후인 최근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과 관련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바꾸려는 여성인권단체들이 전국적으로 130여개가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성폭력 피해 고소율은 10%미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상담현장에서는 큰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형사사법절차상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지난 2년동안의 성폭력 피해 사례 중, 형사사법절차상 겪는 2차 피해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본 연구는 성폭력 2차 피해 발생의 주요인으로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과 태도,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 대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성폭력 2차 피해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들이 내면에 갖고 있는 치유에의 강한 힘과 용기를 지지받고, 건강한 삶을 되찾아가도록 우리 사회가 구체적인 노력을 전개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필화 교수님을 비롯한 공동연구원, 그리고 연구를 지원해 준 법무부에 감사드립니다.

2003년 12월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경

목 차

연구요약	8
제 1 장 서론	17
1. 연구 목적	17
2. 연구 방법	19
3.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20
제 2 장 이론적 논의	29
1. 2차 피해 연구의 배경	29
2. 2차 피해 연구의 방향	38
제 3 장 2차 피해에 대한 유형별 이해	42
1.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2차 피해	43
(1) 아동 성폭력	43
(2) 청소년 성폭력	49
(3) 성인 성폭력	53
2.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55
(1)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55
1) 가족·친족에 의한 성폭력	56
2) 교제관계에서의 성폭력	59
3) 이웃 등에 의한 성폭력	61
(2) 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62
1) 직장·학교 등 일터에서의 성폭력	63
2) 종교·의료 등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폭력	71
(3) 기타 특수 관계에서의 성폭력	73
1)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74
2) 동성에 의한 성폭력	78

3)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 외	82
3.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	87
(1) 경찰수사 과정	88
(2) 검찰수사 과정	92
(3) 공판 과정	95
1) 공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개괄	96
2) 부적절한 증인신문 및 공판 전담검사의 문제점	97
3) 상소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100
제 4 장 형사사법 절차상 2차 피해 발생의 맥락	101
1.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과 태도에 기인한 2차 피해	102
(1) 성폭력의 사적 문제화	103
(2) 피해자 유발론	106
(3) 가해자 옹호론	112
(4) 동의된 성관계론	117
2. 법·제도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2차 피해	121
(1)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변보호제도의 미흡	121
(2) 증거확보 지원제도의 미흡	125
(3) 정보권 보장의 미흡	128
(4) 부적절한 증인신문	132
(5) 아동·장애인 피해자에 적합한 수사·공판 체계의 미흡	132
(6)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시 보호제도 미흡	140
(7) 처벌조항 없음 외	143
제 5 장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147
1. 피해자의 권리 강화와 보호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147
(1) 성폭력의 개념 및 범위 확대	147
1)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성폭력 개념의 명시	148
2)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149
3) 부부간간의 처벌	151
4) 강간죄의 객체 확대	152
(2) 피해자의 권리보호 강화	153

1)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변보호제도의 강화	153
2) 아동·장애인 등 특수상황에 대한 배려	154
3) 수사·공판 과정의 환경 개선	155
4) 명예훼손, 무고 등 역고소시 성폭력 피해자 권리존중	156
(3) 피해자 지원제도 강화	156
1) 신뢰 관계인의 동석 제도 확대	156
2) 증거확보 지원제도 보완	157
3) 성폭력 사건 전담제 실시	159
4) 피해자 변호인 제도	159
(4)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적극적 참여권리 인정	160
1) 피해자의 정보권 신설	160
2) 공판절차 참여권 보장	161
(5) 기타 제도의 보완	162
1) 친고죄 조항의 폐지 및 보완	162
2)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도입	163
3) 배상명령제도의 범위확대	164
4)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165
2. 수사·공판 담당자의 인식전환	166
(1) 성인지적 교육의 의무화	166
1) 교육기관에서 범여성학의 제도화	166
2) 민간 파트너십과 다양한 성인지 교육의 제도화	173
(2) 2차 피해방지 지침의 보완 및 실행 방안	175
1) 경·검찰의 지침강화 및 수사기법 개발	176
2) 변호사 윤리규정의 강화	177
3) 성폭력사건 공판진행 예규의 마련	178
제 6 장 결 론	180
참고문헌	183
부록	203

표 · 그림 목차

<표 1> 상담사례의 법적 지원 (2001-2002)	21
<표 2> 법적 지원을 바라는 내담자들의 주된 상담내용 분류	22
<표 3> 2001년도, 2002년도 법적 문의 사건	23
<표 4> 2001년-2002년 피해유형별 상담현황	24
<표 5> 피해유형별로 본 고소 건수(2002)	24
<표 6> 피해연령별로 본 고소 건수(2002)	25
<표 7> 피해자/가해자 관계별로 본 고소 건수(2002)	26
<표 8>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2차 피해	27
<표 9>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	27
<표 10>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28
<표 11> 한국성폭력상담소 2002년도 상담현황	44
<표 12>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2000-2002년)	49
<표 13> 피해자의 연령(2001-2002년)	50
<표 14>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55
<표 15> 사적관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56
<표 16> 공적관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62
<표 17> 특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74
<표 18>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	75
<표 19>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	88
<표 20>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89
<표 21> 성 범죄자 처분 결과 (1997 / 2002)	94
<표 22> 공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96
<그림 1>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 속에서 전도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103

연구 요약

1. 연구의 목적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법률적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법적·제도적인 보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여성 인권 단체들은 그 동안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무엇보다 우선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NGO와 경찰·사법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와 관행들로 인한 문제들을 '2차 피해'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와 체계적인 분석 작업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기초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책이나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이의 실천을 위한 관계자 공조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는 위의 연구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성폭력 관련 주제 연구들에 대한 문헌 연구, 상담 사례 분석, 심층면접, 전문가 간담회, 성폭력 관련 법조문과 제도에 대한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상담 사례 분석은 본 연구의 골격을 이루는 연

구방법으로, 분석 자료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1년과 2002년의 상담 사례 총 2,869건과 2,961건 중 각 연도의 고소 사례 425건과 375건을 중심으로 하였다. 또한 상담 사례 분석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담소 내담자 중 형사절차와 관련해 2차 피해를 경험한 피해 여성 20여명을 심층면접 하였다.

사례 분석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2차 피해 실태를 연령별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특성과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로 나누어 교차 분석했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피해자를 아동,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해 2차 피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에 따른 2차 피해는 친족, 학내, 직장 내, 데이트, 이웃 등 사적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직장, 학교, 종교인, 의료인에 의한 공적 관계에서 성폭력 및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이 분석은 3장의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2단계 사례 분석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상 2차 피해를 이와 같은 연령, 관계 특성, 수사·공판 단계에 따라 분석한 바탕 위에서 발생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과 태도에 기인한 2차 피해와, 법·제도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2차 피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의 내용은 4장의 연구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5장에서는 3, 4장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성폭력 관련법과 제도 및 수사·공판 담당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분석하였고, 그 분석에 의거해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한 자문을 받기 위해 형사사법계 실무자 및 전문가들-지방경찰청 강력계·여성청소년계 수사관, 법무연수원, 검찰청 수사검사·조사관, 각 법원 공판 검사실 조사관, 검사, 변호사, 판사 등 형사절차 관계자 20인과 여성단체 활동가, 법조인, 여성학자, 성폭력전문상담소 실무자,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 20인이 간담회를 가졌다.

3. 2차 피해에 대한 유형별 이해

본 연구의 사례 분석에 의하면 2차 피해 건수는 2001년도 232건, 2002년 266건이다. 이를 대상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2차 피해 발생율은 2001년의 경우 성인 81.1%, 청소년 9.0%, 아동 1.3%이며 2002년의 경우 성인 85.3%, 청소년 5.3%, 아동 0.8%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폭력 1차 피해의 연령별 순서와 일치한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 피해는 전체 사건의 25~30% 인데 반해 2차 피해 비율은 0.8%(2001년), 1.3%(2002년)로 나타나고 있어 2차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동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배려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아동 성폭력의 경우 법적 문의 사례는 많으나 보호자가 아이의 고통과 장래를 염려하여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롯된다. 또한 고소 이전의 합의로 끝나거나 가해자가 형사 미성년자로서 고소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 대상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는 사적 관계, 공적 관계, 특수 관계에서의 비율이 비슷하게 분포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즉,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2001년 27.4%, 2002년 23.8% 이다.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2차 피해는 이웃 등 아는 사람, 교제 관계, 가족·친족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2차 피해는 약 25%로, 직장·학교 등 일터, 종교·의료 등에서의 관계에 의한 순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2차 피해는 35%로,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인 성폭력, 동성 성폭력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표 1>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사적 관계	가족·친족	10	4.2	10	3.7
	교제관계	25	10.5	29	10.6
	이웃 등 아는 사람	30	12.7	26	9.5
	소계	65	27.4	65	23.8
공적 관계	직장·학교 등 일터	40	16.9	63	23.1
	종교·의료 등	18	7.6	8	2.9
	소계	58	24.5	71	26
특수 관계	장애인	3	1.3	4	1.5
	동성	2	0.8	3	1.1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 외	79	33.3	89	32.0
	소계	84	35.4	96	34.6
기타		30	12.7	41	15.0
합계		237	100	273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 이 표에서는 특수관계에서 비롯되는 성폭력으로 분류된 장애인, 동성 2차 피해 2001년 5건, 2002년 7건이 사적, 공적 관계의 통계에도 중복 포함되었다. 따라서 각각 이 건수만큼 연령별 합계보다 늘어나 집계되었다.

** 이 표는 본문의 <표 10>과 같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 사례 분석에 의하면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2차 피해는 수사과정 2001년 80.6%, 2002년 52.2%, 수사·공

판 과정 외 2001년 11.6%, 2002년 21.1%, 공판과정 2001년 7.8%, 2002년 11.7%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아래의 <표2> 참고). 약 80~90%의 2차 피해가 수사·공판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공판 단계의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2>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경찰 수사 단계	신고	45	19.4	45	16.9
	고소	30	12.9	28	10.5
	경찰수사중	73	31.5	66	24.8
검찰 수사 단계	검찰수사중	39	16.8	40	15.0
수사·공판과정 외	수사·공판과정 외	45	19.4	87	32.7
계		232	100	266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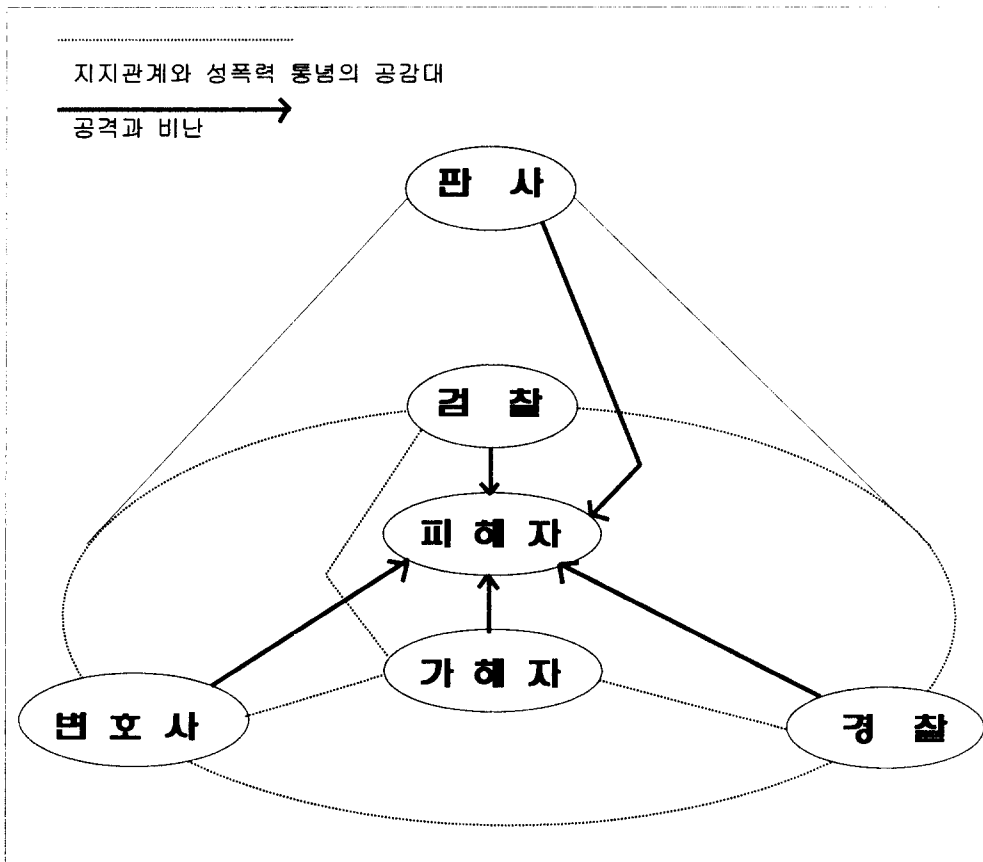
* 이 표는 본문의 <표 9>와 같다.

4. 형사사법 절차상 2차 피해 발생의 맥락

본 연구에서 성폭력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수사·공판 담당자들의 통념과 태도는 1) 성폭력의 사적 문제화 2) 피해자 유발론 3) 가해자 옹호론 4) 동의된 성관계론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사·공판 담당자들은 사회 일반의 가부장적 성 통념과 다르지 않은 생각과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즉 수사·공판 담당

자들은 ‘성폭력은 사적인 문제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유발시킨다, 이른바 성폭력의 대부분은 동의된 성관계이다, 많은 성폭력 피고소인은 성폭력 범죄자가 아니고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다’와 같은 통념들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통념들은 수사·공판 담당자들로 하여금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부적절한 증인 신문의 태도를 취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피해자가 비난받는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지지를 받는 관계로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림 1>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 속에서 전도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한편 본 연구에서 성폭력 2차 피해는 수사·공판 담당자들의 통념과 태도 못지 않게 피해자 인권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배려의 미흡함에서도 비롯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법·제도상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2차 피해는 1)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변보호제도의 미흡, 2) 증거확보 지원제도의 미흡, 3) 정보권 보장의 미흡, 4) 부적절한 증인신문, 5) 아동·장애인 피해자에 적합한 수사·공판 체계 미비, 6)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시 피해자 보호제도 미흡, 7) 처벌조항이 없음 외 기타로 분석되었다. 수사·공판 담당자들의 통념과 이와 같은 피해자 인권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배려의 미흡은 함께 결합되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다.

5.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2차 피해에 대한 앞 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법·제도의 개선점과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및 피해 방지 지침의 보완과 그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피해자의 권리 강화와 보호 확대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점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지적·제안되었다. 성폭력 범죄는 현재와 같이 나열식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변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아동·장애인 피해자를 배려하여야 하며 수사·공판 과정의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시에도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확대시키고 피해자 변호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피해자 지원제도와, 공판조서열람청구권이나 공판참여권과 같은 적극적 참여권에 대한 인정이 요구된다. 그 밖에 친고죄 폐지,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배상명령 제도 및 재정신청 제도 적용 확대 등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에 두 번째 대책으로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의 인식 전환

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의 의무화와 2차 피해 방지 지침의 보완 및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첫 번째 제안인, 성인지 교육의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담당자의 인식 전환이 담당자를 양성하는 제도적 교육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담당자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에서 법여성학의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성인지 교육의 의무화의 두 번째 방안으로는 민간 파트너십과 다양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현재 미약하나마 맹아적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각 교육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법여성학의 제도화 보다는 좀 더 조속히 시행될 것을 기대하게 된다.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두 번째 안으로 2차 피해 방지 지침의 보완 및 실행 방안이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경·검찰의 지침 구체화 및 수사기법 개발, 변호사 윤리규정의 강화, 판사의 공판 진행 예규의 마련을 중심으로 제안되었다.

6. 결 론

이제까지 2차 피해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본 연구는 다른 어떤 연구들보다도 철저히 성폭력 피해 현장의 소리를 대변하였다. 즉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약 5백 여 건의 상담 사례와 20개의 심층면접 사례라는 성폭력 피해자의 체험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수행되었고, 그만큼 예방과 대책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제안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성폭력 2차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여성계와 형사사법계의 폭넓은 공감대에서 가능하였다. 이 연구에서 피해자 체험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대안이 제시된 만큼, 이 연구가 앞으로 2차 피해를 축소하고 근절해가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가는 작업으로 나아가는 데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작업은 아직까지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성폭력 관련법의 기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권위가 공고해지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작업은 여성들에게는 법적 가부장성의 변화, 양성 우호적인 법질서의 확립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여성계와 형사사법계는 그 동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보완의 과정에서 구축한 여성계와 사법계와의 공조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고 질적으로 성숙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제 1 장 서론¹⁾

1. 연구 목적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법률적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실시된 후 이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1999년 대검찰청에서는 성범죄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후 1999년에는 성희롱의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으며, 2000년에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1년에는 아동복지법 내에 아동 학대에 대한 규정과 성희롱·성추행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여성실을 신설하고, 각 경찰서의 청소년계를 여성·청소년계로 전환하고, 성범죄 수사점수를 3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법적·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처럼 법적·제도적인 보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의 연구결과들과 상담 현장의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를 극복하고 안정을 회복하는데 주변의 지지와 배려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적 해결을 선택한 피해자들은 또 다시 ‘2차 피해’를 겪음으로써 성폭력 피해의 고통

1) 이번 연구에 자문을 주신 김엘림(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심희기(연세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명선(늘푸른여성정보센터 소장), 조국(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표창원(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상담일지 분석을 위한 기초작업을 맡아준 김혜옥(한국성폭력상담소 자원활동가), 마지막까지 자료집 편집에 힘을 써준 한은영(이대 여성학과 석사과정)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더욱 심화되는 경험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사례를 토대로 살펴보면, 상담을 의뢰하는 전체 피해자의 40-50%가 법적 문의를 해오고 있으며, 스스로의 무력감을 극복하고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위해 법적 해결을 결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 고소율은 13% 미만에 머물러 있다. 사건 의뢰 과정·재판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여성비하적 발언 등 부당한 관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법적·제도적 대응을 포기하거나, '피해 극복이 오히려 요원해지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성폭력 피해자와 이를 지원하는 상담원들이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사절차상에서의 '2차 피해' 문제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법적 해결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범죄 신고율을 낮추고 법적 해결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2차 피해'의 문제들은 공정한 법적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개별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볼 때 인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한다.

199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강간, 강간미수 등 비교적 피해 정도가 심한 성폭력의 신고율이 6.1% 라고 발표하였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이토록 낮은 신고율을 보이는 데에는, 피해 여성들에게 책임을 묻는 '피해자 비난론'과 '순결을 잃은 여자'라는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팽배해 있으며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이러한 편견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여성인권단체들은 그 동안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6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의 변화 심포지움, 1999년 성폭력 사건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경찰 간담회(서울시내 경찰서)를 개최하였다. 2000년에는 서울여성의전화와 연대하여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경찰교육(서울 시내 경찰서 대상), 2001년 통합적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경찰 워크숍(서울 시내 파출소)을 실시하였다. 2003년에는 법조인들의 성의식·성평등 의식 실태 조사 결

과를 발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하고, 시민감시단 활동을 통해 공판절차 상에서의 2차 피해와 피해자 권리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무엇보다 우선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NGO와 경찰·사법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와 관행들로 인한 문제들을 ‘2차 피해’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와 체계적인 분석 작업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기초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책이나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이의 실천을 위한 관계자 공조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위의 연구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성폭력 관련 주제 연구들에 대한 문헌 연구, 상담 사례 분석, 심층면접, 전문가 간담회, 성폭력 관련 법조문과 제도에 대한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상담 사례 분석은 본 연구의 골격을 이루는 연구방법으로, 분석 자료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1년과 2002년의 상담 사례 총 2,869건과 2,961건 중 각 연도의 고소 사례 425건과 375건을 중심으로 하였다. 또한 상담 사례 분석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담소 내담자 중 형사절차와 관련해 2차 피해를 경험한 피해 여성 20여명을 심층면접 하였다.

사례 분석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2차 피해 실태를 연령별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특성과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로 나누어 교차 분석했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피해자를 아동, 청소년, 성인과 노년기 여성으로 구분해 2차 피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에 따른 2차 피해는 친족, 학내, 직장 내, 데이트, 장애인, 남성, 성직자, 의료진 성폭력 및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이 분석은 3장의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2단계 사례 분석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상 2차 피해를 이와 같은 연령, 관계 특성, 수사·공판 단계에 따라 분석한 바탕 위에서 발생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과 태도에 기인한 2차 피해와, 법·제도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2차 피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의 내용은 4장의 연구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5장에서는 3, 4장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성폭력 관련법과 제도 및 수사·공판 담당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분석하였고, 그 분석에 의거해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한 자문을 받기 위해 형사사법계 실무자 및 전문가들-지방경찰청 강력계, 여성청소년계 수사관, 법무연수원, 검찰청 수사검사, 조사관, 각 법원 공판 검사실 조사관, 검사, 변호사, 판사 등 형사절차 관계자 20인-과 여성단체 활동가, 법조인, 여성학자, 성폭력전문상담소 실무자,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 20인이 간담회를 가졌다.

3.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의 형사사법상 2차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1년 성폭력 상담건수는 2,869건, 2002년에는 2,961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법적 문의는 2001년 839회, 2002년 1,154회로 전체 성폭력 상담건수의 30~40%에 이른다(<표 1>참고). 이 중 법적 지원을 바라는 내담자들의 상담내용을 분류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2001년과 2002년의 법적 지원과 관련한 상담내용을 비교해보면, 법적 문의는 약 300회가 증가하였고 고소건수는 역으로 425건에서 375건으로 50건이 줄었다. 그리고 경찰 연계 건수는 120건에서 35건으로 85건이나 줄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고

소나 경찰 연계와 같은 법적 절차로 나아간 경우가 줄어든 것은 수사·공판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표 1> 상담사례의 법적 지원 (2001-2002)

내용	2001년	2002년
성폭력 사건	2,869건	2,961건
법적 문의	839회	1,154회
고소 건수	425건	375건
토요법률상담	122회	107회
경찰 연계	120건	35건
검찰 수사 중 동행 참고인 출두 상담일지·진정서 송부 법정동행 증인 출두	51회	47회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 사건은 1건으로 계산된다.

** 1건의 사건에 중복되는 회수의 지원이 계산된다.

그러나 상담소의 지원 활동은 <표 2>의 호소 내용에 모두 응해주고 있지는 못하며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경찰 연계 시 상담원 배석 하에 진술하도록 경찰에 동행, 또는 상담소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경찰에게 협조 요청
- 검찰진술 시 동행, 필요시 상담원이 참고인으로 출석
- 필요시 검찰, 재판부에 상담일지 사본을 제출, 진정서 송부
- 피해자 증인 신문 시 법정 동행, 특정 사건은 재판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 무고 등 연루사건,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이혼소송, 친권양도소송 등에 변호사 선임 연계

<표 2> 법적 지원을 바라는 내담자들의 주된 상담내용 분류

고소 전 법적 대처방안문의	고소가능 여부/ 고소방법 및 절차/ 고소장 작성방법/ 증거확보 방안 / 고소 전 합의 방안	
고소 후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대처방안 문의	경찰 수사과정에 대한 문의 및 호소	신고나 고소 후 경찰 진술 시 준비사항/ 증거 채취, 진단서 발급의 어려움/ 피해자 진술, 대질심문시의 어려움/ 보호자동석 못하게 하는 것/ 유아, 어린이 진술에서의 신빙성 의심/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 또는 비난성 발언/ 편파수사 의심/ 가해자 측의 부인, 해코지에 대한 두려움/ 수사기간의 지체/ 재 수사 지시/ 현장경증에서의 어려 움/ 피해자신분 비밀보장/ 합의중용에 대 한 의심/ 죄목변경/ 구속여부/ 불구속시의 불만/ 고령자, 정신질환자인 가해자에 대 한 조치 미흡/ 군인 가해자 처리/ 수사당 당 경찰의 성추행 등
	경찰 수사과정에 대한 문의 및 호소	검찰 송치여부/ 송치 및 계류기간/ 불기소 의견 송치/ 구속영장 기각/ 검찰 조사관의 태도/ 거짓말탐지기/ 무고위협/ 진정서, 탄 원서 작성 및 송부 요청/ 상담일지 송부 요청/ 검찰수사에서 동행 요청/ 기소여 부 사건결과통지서 송달/ 불기소이유/ 항 고, 재항고 여부/ 항고장, 항고이유서 작성
	재판과정에 대한 문의 및 호소	약식재판/ 특방/ 형량/ 벌금형/ 증인 소환 에 대한 대처/ 법정동행 요청/ 진정서, 탄 원서, 의견서 송부/ 공탁금/ 가해자 측 변 호인의 태도/ 비공개재판 신청/ 손해배상 청구 방법/ 이혼 및 친권박탈 소송/ 법률 구조기금 신청/ 무료 법률상담/ 항소 및 상고
	가해자 측의 태도	고소취하 요구/ 협박/ 해코지/ 합의방법/ 합의금액/ 공증하는 방법/ 내용증명/ 무고, 명예훼손, 폭행, 간통 등으로 피고소
	구속 중 또는 출소 이후	출소 이후의 접근/ 해코지/ 협박

상담소의 2001년, 2002년 상담 중 법적 문의를 한 사례의 사법적 절차 단계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2001년도, 2002년도 법적 문의 사례

<단위 : 회>

법적절차	2001년		2002년	
	회	비고	회	비고
고소고려	177		382	
성폭력 고소	405	* 경찰수사중 257 * 검찰수사중 146 * 군검찰 2	512	* 경찰수사중 303 * 검찰수사중 209
고소 취하	3		3	
신고	143	* 112 * 파출소	122	* 112 * 파출소
항고	1		2	
피소	8	* 폭행 3 * 명예훼손 3 * 무고 2	7	* 업무방해 2 * 명예훼손 3 * 무고 2
재판	83	* 1심 66 * 2심 17	102	* 1심 73 * 2심 27 * 3심 2
합의	16		13	
민사	2		7	
진정	1	* 노동부	4	* 노동부 2 * 여성부 1 * 교육청 1
계	839		1,154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표 4> 2001년-2002년 피해유형별 상담현황

<단위 : 건, %>

	강간	강간 미수	특수 강간	성추행	성희롱	음란 전화	사이버 성폭력	몰래 카메라	계
2001년	997	100	113	1,130	423	60	36	10	2,869
2002년	942	88	174	1,196	479	49	26	7	2,961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표 5> 피해유형별로 본 고소 건수(2002)*

<단위 : 건, %>

	유형별 건수	고소건수	유형별 고소비율	전체 상담 중 유형별 고소비율
강간	942	123	13.1	4.2
강간미수	88	29	33.0	1.0
특수강간	174	64	36.8	2.2
성추행	1,196	143	12.0	4.8
성희롱	479	13	2.7	0.4
음란전화	49	2	4.1	0.1
사이버성폭력	26	1	3.9	(0.0)
몰래카메라	7	0	0	0
계	2,961	375	.	12.7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 전체상담 중 1차상담시 고소한 비율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2년 성폭력 피해상담 총 2,961건 중 375건(12.7%)이 1차

상담 시 고소를 하였다. 이를 피해 유형별로 살펴볼 때 고소율이 가장 높은 것은 특수강간으로 174건 중 64건(36.8%)이며, 강간미수 88건 중 29건(33%), 강간 942건 중 123건(13.1%), 성추행 1,196건 중 143건(12%), 음란전화 49건 중 2건(4.1%), 사이버 성폭력 26건 중 1건(3.9%), 성희롱 479건 중 13건(2.7%) 순이다. (<표 5>)

연령별로 보면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고소율이 가장 높아 1,649건 중 249건(15.1%)이 고소를 했고, 미상 70건 중 9건(12.9%), 어린이 461건 중 50건(10.8%), 청소년 570건 중 55건(9.6%), 유아 211건 중 12건(5.7%) 순이다. (<표 6>)

<표 6> 피해연령별로 본 고소 건수(2002)*

<단위 : 건, %>

	연령별 건수	고소건수	연령별 고소비율	전체 상담 중 연령별 고소비율
유아	211	12	5.7	0.4
어린이	461	50	10.8	1.7
청소년	570	55	9.6	1.9
성인	1,649	249	15.1	8.4
미상	70	9	12.9	0.3
계	2,961	375	.	12.7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 전체상담 중 1차상담시 고소한 비율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별로 보면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 572건 중 125건(21.9%), 아는 사람의 경우는 2,278건 중 230건(10.1%)이 고소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전체 피해의 77%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고소율은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아는 사람 중에서도 친분관계가 높은 친족·친인척의 고소율이 낮았고, 이보다 친분관계가 낮은 동네사람과 채팅상대일 경우가 고소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7>)

<표 7> 피해자/가해자 관계별로 본 고소 건수(2002)*

<단위 : 건, %>

		전체건수	고소건수	관계별 고소비율	전체 상당 중 관계별 고소비율
아는 사람	친족/친인척	378	10	2.6	0.3
	직장내	597	49	8.2	1.7
	데이트 상대	152	16	10.5	0.5
	채팅	95	14	14.7	0.5
	동네사람	218	42	19.3	1.4
	서비스 제공자	80	9	11.2	0.3
	성직자/신도	8	0	0	0
	학교/학원내	351	0	0	0
	기타	399	62	15.5	2.1
모르는 사람		572	125	21.9	4.2
미상		111	20	18.0	0.7
계		2,961	375	.	12.7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전체상당중 1차 상담시 고소한 비율

본 연구에서 사례 분석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차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고, 2차 피해의 연령별, 수사·공판 단계별,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현황은 아래의 <표8>, <표9>, <표10>과 같다.

<표 8>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아 동	3	1.3	2	0.8
청소년	21	9.0	14	5.3
성 인	188	81.1	227	85.
미 상	20	8.6	23	8.6
계	232	100	266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표 9>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경찰 수사 단계	신고	45	19.4	45	16.9
	고소	30	12.9	28	10.5
	경찰수사중	73	31.5	66	24.8
검찰 수사 단계	검찰수사중	39	16.8	40	15.0
수사·공판과정 외	수사·공판과정 외	45	19.4	87	32.7
계		232	100	266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표 10>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사적	가족·친족	10	4.2	10	3.7
	교제관계	25	10.5	29	10.6
	이웃 등 아는 사람	30	12.7	26	9.5
	소계	65	27.4	65	23.8
공적	직장·학교 등 일터	40	16.9	63	23.1
	종교·의료 등	18	7.6	8	2.9
	소계	58	24.5	71	26
기타 특수	장애인	3	1.3	4	1.5
	동성	2	0.8	3	1.1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 외 기타	79	33.3	89	32.6
	소계	84	35.4	96	35.2
기타		30	12.7	41	15.0
합계		237	100	273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 이 표에서는 특수관계에서 비롯되는 성폭력으로 분류된 장애인, 동성 2차 피해 2001년 5건, 2002년 7건이 사적, 공적 관계의 통계에도 중복 포함되었다. 따라서 각각 이 건수만큼 연령별 합계보다 늘어나 집계되었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1. 2차 피해 연구의 배경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연구나 사회적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여년 전으로 1983년 여성의전화에서 성폭력 상담을 시작하고, 공권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²⁾.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그다지 길지 않을뿐더러 더군다나 성폭력 2차 피해라는 용어는 아주 최근에서야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다.

1980년대에 군부나 부패한 정권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기타 여러 건의 성폭력 등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상 2차 피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도 후반에 발생한 두 사건으로부터 비롯된다. 1987년 8월 전라남도 고흥군에 사는 어부의 아내가 임신한 몸으로 순경에게 강간당하고 자살한 사건과 1988년 12월 대구 다방 종업원인 여성이 파출소 경찰관에게 윤간 당한 사건이다³⁾. 이 두 사건 모두에서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사법처리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모욕을 당했으며, 87년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끝내 자살을 했다. 88년 사건 같은 경우

2)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 1999, 20-25면.

3)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워 '누구누구(피해자 이름) 사건'으로 명명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중과 매스컴에 피해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이다. 특히 매스컴을 탄 유명한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마치 고유명사처럼 '*** 사건'이라 불리며 각종 자료에 등장해 피해자의 고통을 계속해서 들춰내게 된다. 또한 이렇게 피해자 이름만을 들어 사건을 명명하는 것은 가해자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게하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조교 사건'이라 불리는 성폭력 사건을 가해자 이름을 따서 '신교수 사건' 등으로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이름을 따서 '*** 사건'이라고 성폭력 사건을 지칭하지 않고 사건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을 기술하기로 한다.

에는 피해자가 다방 여종업원이고, 이혼 여성이었다는 편견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또 하나 일반 사회와 사법기관의 성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1988년 성폭력 가해자의 혀를 깨문 여성이 검찰에 의해 성폭력 가해자와 함께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가해자의 범죄 행위보다 그녀가 식당 주인이며,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혼경력이 있으며, 평소 동서와 불화가 잦았다는 등 성폭력 사건 외적인 요소에 초점이 맞춰졌었다⁴⁾.

이러한 일련의 성폭력 사건들은, 분명 존재하고 있었으나 외면되어져 왔던 폭력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성폭력 인권사에 한 획을 긋게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들 피해 여성들이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이 폭로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가 알려지면서 일반인들과 인권운동 단체 등은 사법기관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토양 아래서 성폭력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89년 강간을 주제로 한 세 논문⁵⁾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성폭력 피해자와 2차 피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세 논문 모두 통념에 의한 성폭력 2차 피해자화에 대한 연구를 다루고 있었으나, 이 당시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2차 피해’라는 개념이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피해’라는 용어에 대한 기술 없이 연구되었다.

이들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성폭력 2차 피해가 유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들 피해자들이 심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순결상실감’⁶⁾인데 이는 여성의 정조를 목숨만큼 중요하

4) 그 결과 피해자는 1심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과 300만원의 허값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범인은 강간미수가 아닌 강제추행미수로 판결되었다. 그러나 여성계의 많은 노력에 힘입어 1989년 1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5) 이들 세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이다. 김선영, “강간 범죄의 재판 과정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 연구”, 1989; 박선미,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1989; 이명선,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1989.

6) 이명선, 앞의 글, 1989, 60-65면.

게 여기는 사회 풍토⁷⁾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 문제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⁸⁾을 침해한 폭력이나 인권침해의 문제로 접근되지 않고, 순결이나 정조의 문제로 치부되면서 일종의 성관계로 인식되어 피해자들은 또 한번의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들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지는 고통은 단순히 성폭력 범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고 보기만은 어렵다. 성폭력을 통해 자존감 상실이나 자신의 몸이 도구화되었다는 느낌은 성폭력 피해 때문에 가지게 되겠지만, 순결상실감은 사회가 정해 놓은 성과 여성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디어나 사회적으로 학습해 온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피해에서 2차 피해로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성폭력은 상해나 임신 같은 신체적 후유증뿐만이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남긴다. 특히 사회 통념 등에 의해 성폭력 피해가 2차 피해로까지 발전되면서 그 후유증 역시 더 심각해지게 된다.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기간, 성폭력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에 대한 혐오감, 수치, 우울, 좌절, 불안, 남성 기피, 성관계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또한 성폭력은 피해자의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 등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사람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게 되거나, 남편이나 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나 직장생활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곤란을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피해자가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더구나 직장 성폭력의 경우는 해고나 퇴

7) 특히 우리나라는 성폭력 피해 여성이 성폭력 때문에 받은 영향과 일생에 미친 파급효과는 서구의 여성에 견주어 볼 때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성폭력을 폭력으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관계로 인식함으로써 순결을 상실했다고 여기는 우리 사회의 통념과 무관하지 않다. 이경자,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10권 4호, 한국여성개발원, 1992.

8) 성적 자기결정권(right to sexual autonomy)은 여성의 성(sexuality)과 관계된 많은 영역에서 제기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성폭력이나 스토킹 등 여성의 몸과 정신에 가해지는 폭력에 관한 부분이다.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여성이 지금까지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이 갖지 못했다는 인식에 기반해, 이제는 여성이 한 인격체인 동시에 주체로서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지겠다는 것이다.

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경우 성폭력이 자퇴나 가출, 성매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도 무시할 수 없는데⁹⁾, 피해 아동들은 분리불안 증세를 느끼기도 하고, 밤에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빠는 등 퇴행을 보이기도 하며,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한 후 상담을 청하기까지 3년이 지난 장기 사례가 27.1%나 되었으며, 특히 30년이 지난 사례도 60건(4.8%)이 있었다¹⁰⁾. 이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은 다른 폭력과 달리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매우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다¹¹⁾. 성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는 여성은 단순히 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순결을 잃은 '정상적이지 않은' 여성으로 대접받아야 하며, 아내 구타의 경우에는 여성이 가정에서 아내나 어머니로써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거나, 가정을 일탈했을 것이라는 등 여성적 역할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다른 폭력과 달리 성폭력은 가해자의 행위가 아니라 피해 여성의 사생활이나 여성이 폭력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증거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폭력에 대처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처럼 여성폭력 문제는 가해자의 행위보다는 피해자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침묵하게 만든다.

이러한 피해자 비난은 여성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성폭력 피해 여성

9)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를 보면, 지난 13년 동안 변함없이 아동성폭력 피해 상담이 전체 상담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경, “아동성폭력 피해생존자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성폭력상담소의 역할”, 2003; 「아동성학대의 개입을 위한 효과적 방안」,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12-113면.

10)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2주년 기념 자료집」 1993. 이 자료집은 1991년 2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이루어진 총 1,264건의 상담을 분석한 것이다.

11) 안수진, “스토킹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97-102면.

은 ‘성적으로 도발적이거나, 남성을 유혹하는 헤폰 여자’이거나 ‘여성으로서 몸가짐이 단정하지 못한 여자’로 취급을 받는다. 사회적으로 이미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는 이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오명은 그것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피해자 자신이 내면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우기 힘든 상처로 남는다. 이것이 대표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유형이다.

더구나 피해자나 주변인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청했을 때 제일 처음 접하게 되는 경찰과 그 이후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만나게 되는 검사, 판사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성폭력 통념 등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과 상실감을 안겨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다거나, 성폭력 피해자는 순결을 잃은 사람이라는 식의 통념에 의해 이미 고통을 받아 2차 피해가 시작된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사법인들의 똑같은 반응은 피해자들을 또 한번 좌절시키고, 2차 피해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수사·공판 과정의 담당자들이 성폭력 통념을 수용¹²⁾하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된 성윤리들은 성폭력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를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게 오히려 또 한번의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가해자 재판이 아니라 피해자 재판’¹³⁾이라는 지적은 피해자가 유발한 성폭력이라는 통념이 법조인들에게조차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성격력이나 사건 당시의 옷차림, 행동, 반항 정도 등이 중요한 문제로 질문되며, 피해자는 고통스러웠던 성폭력에 대한 기억을 몇 번이나 되새기며 마치 다시 성폭력을 새로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든

12) 한국성폭력상담소(법조인의 성별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200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성변호사들의 의식이 가장 진보적이며, 남성 검사들의 보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했다고 보는 법조인이 전체의 40%를 넘고 있다. 한편 김선영(“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1989)은 경찰, 의사, 교사, 법조인, 상담원, 언론인 등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관여하는 6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성폭력 통념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경찰집단이 가장 보수적이고,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13) 박선미, “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9.

다.

이렇게 성폭력 사건을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피해자의 성력(sexual history)이나 직업, 사생활 등의 기준으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식의 추궁성 수사와 재판 진행이다. 특히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인데, 이러한 성력은 ‘정조’나 ‘순결’과 결부되어 논의된다¹⁴⁾.

그러나 지금까지 법과 그것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은 매우 이성적인 영역이며 가치 중립적이고,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매우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왔다. 근대형사법이 전제하는 인간은 성중립적인(sex-blind, sex-neutral) 일반 평균인이지만, 성중립적이며 합리적 인간 기준은 사실상 남성편향적이며, 여성의 처지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다¹⁵⁾. 법이나 법학은 어떠한 사회적 가치 체계에도 물들어 있지 않은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것이라고 여겨져 왔으나, 현실 속에서는 이것들이 여성의 경험을 비가시화하며 때로는 여성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어떠한 법도 남성에게 여성을 성폭력 할 권리를 주지 않았고, 어떠한 제도도 성폭력 당한 여성을 오히려 비난해 2차 피해를 유발하게끔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남성적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의 법이나 제도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집행되기 쉽다. 따라서 많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사법기관에서의 성폭력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범죄가 재판과정에서조차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성차별적으로 처리된다는 점¹⁶⁾에 있어서도 2차 피해자화의 양상은 여성과 남성에게 있어서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성폭력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을 여성 범죄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남성에게 의

14)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3; 박선미, 앞의 논문, 1989. 이 두 문헌들은 이러한 그릇된 재판관행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15) 조국, 앞의 책, 2003; Mackinnon Catherine, *Toward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Havard University Press, 1989.

16) 박선미, 앞의 논문, 1989.

한 여성의 피해율이 압도적이며,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에 기반해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¹⁷⁾. 또한 성폭력 피해 여성은 단순히 범죄의 희생자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순결을 잃은 여성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에 남성이 당한 성폭력과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¹⁸⁾.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법적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여성계에서 주장이 과도하다고까지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낸 한 논문¹⁹⁾에서는 형사사법에서 차별받는 여성이 문제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형사사법체계는 전체적인 사회메카니즘에서 일탈행위를 선별하여 그것을 처리하는 최종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은 사건해결의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가치이다. 이에 심희기²⁰⁾는 사법기관에서 행해지는 2차 피해자화의 심각성을 고려해 2차 피해자화 개념을 아예 협소화 시켜 ‘형사사법시스템이 피해자에게 가하는 추가적인 고통’을 2차 피해자화(second victimization)로 명명하고 있다. 나아가 2차 피해자화의 현상은 지금까지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피해자의 심리와 피해자의 걱정거리’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이 이러저러하니 피해자가 형사사법시스템에 협조하고 적응하라’는 식의 일방통행적인 주문을 강요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²¹⁾.

17) 김엘립,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2003, 128면은 성차별·성희롱·성폭력은 각기 행태는 다르지만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평등하고 상호 존중해야 하는 관계로 보지 않는 인식에서 비롯되며 남녀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요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특히 그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8) 김현영은 군대 내의 성폭력 사건을 통해 남성들이 성폭력을 ‘극복해야 하는 사소한 장난’쯤으로 여기거나 ‘피해자의 느낌’이 아닌 ‘가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성폭력 인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현영, “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19) 이호중, “강간범죄와 형사사법적 통제”, 「형사정책연구소식」, 제6호, 1991.

20) 심희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자화의 최소화 방안”,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여성부 주관, 2002.

피해자에게 과거의 이성 교제 관계, 성 경험, 피해를 당할 때의 기분을 물어보는 등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필요한 것까지 지나치게 추궁하듯이 질문을 하는 행위는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신감을 잃고 고소를 취하하거나 침묵하게 된다.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추궁식 질문은 결국 성폭력 피해자를 수사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다시 한번 성폭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피해자들은 2차 피해자화 된다.

사법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자화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의해 지지된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의 조사에 임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러한 그릇된 성폭력 통념을 내면화하고 있으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지 아니한가’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하는 사법기관에서 조차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일반인들이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한국의 성폭력 신고율이 2~6% 밖에 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사법기관에서 부당행위를 당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1974년 미시간 주가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21) 이 밖에도 심회기는 2차 피해자화의 요인을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자화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찰관의 질문, 피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투의 경찰관·검사의 태도, 증거물로 압수된 물건의 환부·가환부의 지연·환부 불능,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수사 결과와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결핍 등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를 초래하는 요인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법정 출석을 기다리면서 한없이 절차가 지연되거나 공소기각·무죄가 선고되어 봉착하는 당혹감과 절망감, 법정에 출석하려고 할 때 봉착하는 교통상의 불편과 양육아동에 대한 우려, 법정출석·증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수입감소·임금감액 등의 기회비용, 공개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한 걱정, 특히 피고인으로부터의 적대적인 질문과 피고인 가족·친구로부터의 위협 등이다.

shield law)’를 제정한 이후, 현재는 연방과 주차원에서 모두 강간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이력이 증거로 사용되는데 중대한 제약을 설정하고 있지만²²⁾ 미야자와 고이치²³⁾는 미국의 경우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의 고소 후 피해자에 대한 사전 청취 단계에서 피해 사실의 존부에 대한 검찰관과 피고인측의 격렬한 반대 심문에 대해 피해자의 답변이 배심원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검찰 측이 패배하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한 태도로 질문을 해서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그 태도를 바꾸지 않고 처벌 요구를 관철시킬지 어쩔지를 확인한다고 지적한다.

독일²⁴⁾도 형사소송법에 의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신문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 ‘불가피한 경우’는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실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²⁵⁾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피해조사와 다양한 개별적 피해연구에서 성범죄의 피해에 관한 연구들을 많이 하여, 1990년대를 기점으로 이들 연구들이 성과를 거두며 형사사법절차의 전반에 걸쳐 이 연구들이 영향을 미쳐 피해자의 권리가 대폭 신장되었다. 특히 피해자학의 등장은 범죄자와 피해자를 다루는 기존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것이 사법절차 과정의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데 의의가 있다.

일본²⁶⁾의 경우는 1974년 미쯔비스 중공업 폭파사건을 계기로 1980년도에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지급등에관한법률²⁷⁾되면서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졌고,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조류를 받아들여 1996년 2월 경찰청의

22) 조국, 앞의 책; 2003, 110-122면.

23) 미야자와 고이치. *Einführung in die Viktimologie*, 장규원 역, 피해자학 입문, 1999.

24) 형사소송법 제 68조 a 제 1항에서 “증인 또는 제 52조 의 제 1항의 의미에서 증인의 근친자에게 불명예가 되거나 개인적 생활영역에 관련된 사실에 관한 질문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조국, 앞의 책, 2003, 109면).

25) 박철현, “캐나다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 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26) 미야자와 고이치, 앞의 책, 1999.

27) 위 법은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에서 2001년 4월 13일 개정되었다.

‘피해자 대책 요강’과 그에 기초한 각 지역 경찰본부에 ‘범죄피해자 대책실’을 설치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여자 경찰관으로 편성된 ‘성범죄 수사반’을 따로 두게 되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점점 쏟게 되었다.

2. 2차 피해 연구의 방향

유럽 등 선진국과 일본 등에 비해서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던 우리나라는 이웃 일본에서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이 제정되자, 여기에 고무된 법무부 등 정부 유관기관들은 범죄 피해자 보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률 마련에 고심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10월 29일 헌법 제30조에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청구권이 신설되었고, 1987년 11월 28일에는 범죄피해자구조법(법률 제3969호)이 제정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에 관한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피해자학회가 설립되면서 피해자와 2차 피해에 대한 연구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²⁸⁾.

특히 최근 들어 대두된 피해자학²⁹⁾은 그간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었던 여성이나 노인, 어린이 등의 사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성폭력 피해 연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피해자학은 여성을 비롯해 노인, 어린이, 소수 집단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거나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한 집단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 성폭력 피해자 연구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피해자학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깨닫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것을 자신의 학

28) 김성돈, “우리나라 피해자학의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29) 피해자학은 종래의 법학이나 범죄학 등이 피의자나 범뢰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을 비판하며 피해자에게까지 그 학술적 연구와 권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학문으로, 195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영역의 과제이다. 피해자학은 1956년 이스라엘의 변호사 Benjamin Mendelsohn이 그의 논문 ‘생물·심리·사회학의 새로운 분야- 피해자학’(Une Nouvelle Branche de la Science Bio-psycho- sociale : Victimologie)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오늘날 피해자학의 중심적인 연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 보호, 피해자 원조 및 피해자 처우 등에 관한 것이다(김성돈, 앞의 글, 1999).

문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특히 피해를 1차·2차·3차 등으로 구분하는 개념이 피해자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선행 성폭력 피해 연구를 한 단계 위로 끌어 올려 '2차 피해' 개념을 개념화시키는 데에 기여를 했다.

피해자학에서의 피해자화는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제1차 피해는 어떤 범죄나 사회문제가 발생해서 받은 피해이다. 제2차 피해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거기에 관계된 사법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 등의 소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해자가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받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제3차 피해는 피해자가 1, 2차 피해를 입고 적절하게 치유 받지 못한 피해자가 반사회적, 비사회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피해자학의 주된 연구 주제는 주로 1차 피해에 관한 내용으로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주제는 1차 피해 직후부터 직면하게 되는 2차 피해자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 연결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2차, 3차 피해자화³⁰⁾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사건 이후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에 대해 인권단체나 여성계 쪽에서 꾸준히 문제제기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래에 들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며 법학자, 사법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성폭력을 비롯해 여타의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30)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그 충격과 고통으로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3차 피해자화라고 한다. (미야자와 고이치, 앞의 책, 1999; 김용세, "일본 피해자학의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피해자학회, 1999; 장규원, "독일피해자학의 발전과정", 「피해자학연구」, 제6호, 피해자학회, 1998) 1991년 자신이 9살이었던 해 성폭력을 했던 이웃집 남자를 21년 만에 찾아가 살해해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 바로 3차 피해자화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1차, 2차 피해의 충격과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21년 간을 지내다가 가해자를 다시 살해함으로써 3차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은 성폭력 문제를 사회표면으로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의 고통과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 경종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 법무부에서도 성범죄피해자 보호대책에 관한 세미나 및 연구를 하고 외국 의 수사지침들을 번역해 발간하는 작업 등을 하고 있다.³¹⁾ 그러나 아직까지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공판 과정에서 입게 되는 2차 피해에 대한 연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바는 거의 없다.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호받고 지원받는 것은 사건 해결에 있어 부차적 가치가 아닌 궁극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사법기관에서의 2차 피해자화는 법적인 차원에서의 불이익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사법기관에서의 모욕적인 경험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 이것은 피해자 개인에게는 극복하기 힘든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며,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비하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처리 능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과 성폭력 예방 차원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법절차상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겪게 되는 2차 피해를 가능한 총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성폭력 2차 피해를 피해의 각 국면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던 기존의 연구 한계에서 벗어나서 성폭력 2차 피해에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앞으로 2차 피해에 대한 연구는 이와 같은 통합적 접근으로 이루어질 때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 방안도 다각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겪을 수 밖에 없는 2차 피해는 본격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2차 피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성폭력 피해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이외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의해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으로 정의한다.

31) 이영주, "수사절차상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추진경과", 「수사와 인권」 토론회, 법무부 대검찰청, 2003, 23-37면.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해 국한해 연구하고자 한다.

제 3 장 2차 피해에 대한 유형별 이해

성폭력은 그 동안 ‘정조에 관한 죄’에서 1995년 형법 개정 시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재정의 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여전히 성폭력을 본인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여성의 정조 문제로 바라보고 성폭력 범죄 구성요건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여전히 성폭력 피해여성을 보호받을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으로 구분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수사·재판과정을 보면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성경험의 유무, 저항의 정도를 중심으로 심문이 진행함으로써 많은 피해 여성들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이면서도 비난의 화살이 본인에게로 돌아오는 듯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단지 성폭력 범죄를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물로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성폭력 피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로부터 받은 상처를 최소화하고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 받고, 격려 받고, 존중받을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98 여성폭력추방주간’에 맞춰 ‘성폭력 피해자 권리 헌장’을 선포하였다³²⁾.

32) 이중 수사·재판과정에서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직업, 나이, 이전의 성 경험, 피해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 받을 권리
-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 이전의 성 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 고소 시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
- 수사·재판과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가족, 변호사, 상담원 등과 함께 동석할 권리
- 사생활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권리
-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울 경우 가해자의 퇴정을 신청할 권리
- 가해자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법 절차상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며 피해자의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 확보되어야 하는지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상담 현장에서 성폭력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사법 절차상의 2차 피해의 실태를 1장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2차 피해, 2장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3장 특수 관계에서의 2차 피해, 그리고, 4장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1.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2차 피해

본 연구 대상의 2001년도와 2002년도 연령별 2차 피해의 비율은 서론의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에 소개되고 있는 <표 8>과 같다. 표에 따르면 연령별 2차 피해는 성인, 청소년, 아동 순으로 상담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 1차 피해의 연령별 순서와 일치한다.

1차 피해에서 피해 유형과 피해자 연령 분포를 2002년도 상담현황에서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1) 아동 성폭력

형사미성년자인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강간, 추행, 희롱, 성기노출, 음란통신, 음란물 보이기, 윤락행위 강요 등이 포함)을 어린이 성폭력, 또는 아동 성학대라 한다. 본 상담소의 2002년도 전체 상담 중 22.7%가 아동 성폭력이다. 만 7세 이하 유아가 7.1%, 학령기 아동이 15.6%를 차지한다. 이들 아동 피해자도 성인 여성 피해자와 동일한 유형의 성폭력을 당하며 강간이 약 24%, 성추행이 약 76%에 이른다.

<표 11> 한국성폭력상담소 2002년도 상담현황

<단위 : 건>

피해유형	연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505	271	113	24	29	942
	17.1%*	9.2%	3.8%	0.8%	1%	31.8%
특수강간	121	34	16		3	174
	4.1%	1.2%	0.5%		0.1%	5.9%
강간미수	73	9	5		1	88
	2.5%	0.3%	0.2%			3%
성추행	503	199	295	183	16	1,196
	17%	6.7%	10%	6.2%	0.5%	40.4%
성희롱	388	49	28	4	10	479
	13.1%	1.7%	1%	0.1%	0.3%	16.2%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음란 전화	41	3		5	49
		1.3%	0.1%		0.2%	1.6%
	사이버 성폭력	13	4	4	5	26
		0.4%	0.1%	0.1%	0.2%	0.9%
	몰래 카메라	5	1		1	7
		0.2%				0.2%
성폭력 계	1,649	570	461	211	70	2,961
	55.7%	19.3%	15.6%	7.1%	2.3%	100%
스토킹	129	6	1		3	139
성관련	78	55	2	2	62	199
흔빙간	26				2	28
기타	90	19	7		90	206
기타 계	323	80	10	2	157	572
총계	1,972	650	471	213	227	3,533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아동 성폭력은 주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약 79%로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같은 유형의 피해가 65%인 것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는 아동이 믿고 신뢰하는 친족, 교사, 유치원 원장, 통학 버스 기사 등이 이러한 신뢰를 악용하여 아동을 성폭력하기 때문이다.

아동을 성폭력하는 어른들은 놀이를 가장한 게임이나, 성교육을 빙자함으로써, 혹은 과자나 장난감을 사주거나 돈을 주는 행위 등으로 아동의 순진성을 악용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또한 비밀노출시 가정이 파탄될 것이라거나, 아동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을 함으로써 피해 사실을 노출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아이에게 장기간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모르는 사람일 경우 길을 가르쳐 달라거나, 아프다고 위장하거나, 선생님을 사칭하여 어린아이를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폭력적 방법(위협, 흉기위협, 구타, 납치, 침입)과 비폭력적 방법(유인, 놀이, 금품, 사칭)의 사용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피해 장소는 옥내가 70%로 옥외 27%보다 월등히 높다. 요즘 들어 피해 대상도 여아에 국한되지 않고 남아도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2.5 ~ 3%(2001년, 2002년)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이러한 사건에 있어 아동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는 어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아직 미숙한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은 성추행에 의해서도 처녀막 파열, 성기 이상이 있을 수 있으며,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임신과 낙태, 불임의 상태까지 야기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를 입는다.

아동은 아직 성폭력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성폭력이 놀이·애정으로 위장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될 수도 있고, 비밀 유지의 위협으로 부모에게 말을 못하기도 한다. 아동은 부모에게 성폭력 경험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으며, 아동은 주변사람의 반응을 민감하게 해석하여 행동하게 된다.

치료 자원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 외면적으로 피해 아동은 성인 여성이나 여성 청소년보다 적응 문제가 적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장기적 적응 문제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피해 사실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피해 아동은 오랫동안 가해자에 대한 불안, 공포, 분노, 좌절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그 결과 신경이 예민해지고 식욕을 잃거나, 두통, 복통을 호소하고, 집중력과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 가기 싫어하고, 친구들과 과도 고립되어 잘 어울리려 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피해 아동은 피해 당시의 충격보다도 문제가 드러났을 때 자신의 주 양육자의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주 양육자를 위시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더 강도 깊게 내면화한다. 어린 피해자라 할지라도 성폭력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책하기도 하고 순결상실감, 낮은 자존감으로 수치스러워하고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생활 환경을 축소하게 된다. 또한 망각, 반복, 불안, 공포, 위압감에 취약하여 후유증이 내면화되기 쉽다. 이러한 피해 아동의 심리적 후유증이 극복되지 않으면, 피해 아동은 가족 관계나 사회생활에 적응 곤란을 느끼며 청소년기에 이르러 가출을 하거나 매춘, 알코올, 약물 남용 등 자신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 아동은 강박적인 자위행위를 하게 되거나 자기보다 약한 아동에게 가해 행위를 하게 되어 이유를 모르는 가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소외되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 성적 자극에 익숙해진 피해 아동은 가해자의 성적 행위의 의도를 관심과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되고 상대방의 관심을 받으려고 성적인 행동으로 접근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오해를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며 또 다른 피해의 목표물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피해 아동은 적절한 도움-의료적 치료와 감정적 지지-을 받아야 한다. 아동의 민감성과 취약성 때문에 신속하고 신중하게 취급되지 않을 경우 피해 아동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피해 아동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는 학령기 어린이(8세~13세)에 비하여 강간보다는 성추행 피해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추행의 경우 신체적인 상해의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 염증, 충혈, 출혈 등이 있어도 피해 경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결국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법 절차상 유아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2차 피해는, 일차적으로 유아들이 자신이 당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묘사하지 못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유아피해자들은 자신의 두려움이나 불안, 거리감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표현(악몽, 퇴행, 신체화 증상)으로 드러낸다. 가해자에게 따진다거나 법적 처리를 하려할 때 아이가 머뭇거리거나 일관성 있게 대답을 못해 오히려 반박과 비난을 받게 되어 어려움에 처해진 경우가 많다. 피해 정황을 다른 아이처럼 분명히 표현 못한다고 야단을 맞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아주 똑똑하게 진술한 아이는 어른에게 사주된 것으로 취급되었고, 수사 공판과정에 불려 다니며 진술을 한 아이는 큰 건물만 보면 공포에 떠는 후유증을 보였다.

2003년 5월 ‘아동성폭행 피해자 부모모임’에서는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경찰 및 검찰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아동의 기억력은 성인에 비하여 미약한데다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서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과 검찰은 이 같은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인처럼 5~6차례 반복 조사와 성인 가해자와의 대질신문 등을 통해 피해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과 같이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행 법상 검사가 증거보전 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피해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증거보전 청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피해아동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³³⁾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경찰청은 시범적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와 관악서, 도봉서 두 곳의 경찰

33) 심희기, “아동 성폭행 피해자 보호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간담회 자료」, 2003년 6월.

서에 녹화 설비를 설치하여 상담전문가 등이 배석하거나 주도하여 아동 인터뷰를 하고 그 과정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증거를 영장 신청에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배석할 상담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하여 1주일 이상 피해자 진술을 유보시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증거력을 가진 녹화가 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과 배석자의 교육과 훈련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003년 6월 11일 검찰은 성폭행 피해아동에 대한 수사기관의 중복조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담 검사가 초기 경찰수사를 직접 지휘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피해자 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 담당자는 피해아동의 발달상의 특성과 피해아동이 범죄와 형사절차를 통해서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사례 3-1> 2003년 10월 피해 아동이 법정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추행범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었다³⁴⁾. 피해 당시 5세이던 피해 아동은 경찰수사, 검찰수사에서 여러 번 진술을 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후유증이 심각하였다. 형사소송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된 후 항고, 재항고도 기각되었으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6,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헌법소원을 통해 다시 검찰 수사를 재개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부에서 피해 아동을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후유증을 염려한 보호자는 진술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출두할 수 없음을 표명하였다. 1심 재판부는 재판 장소 이외의 진술이나 초기의 진술자료 활용 등을 시행해 보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³⁵⁾.

34) 중앙일보 2003년 10월 30일자 기사 참조.

35) 이외 사례는 4장의 아동 피해자에 적합한 수사·공판 체계의 미흡 부분을 참조.

(2) 청소년 성폭력

범죄분석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 중 10대 여성 청소년 피해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2>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2000-2002년)

<단위 : 건>

연도	성별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0세 초과	소계	총계
2001	여	47	115	149	843	1,456	878	480	141	67	4,176	4,355
	남	5	3	9	25	62	40	30	2	3	179	
2002	여	93	424	291	1,126	1,943	1,015	584	136	81	5,693	6,034
	남	5	26	14	33	103	75	43	13	29	341	
계		150	568	463	2,027	3,564	2,008	1,137	292	180	10,389	10,389

출처 : 범죄분석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현황에서도 여성 청소년의 강간 및 특수강간 피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13> 피해자의 연령(2001-2002년)

<단위 : 건>

피해유형	연도	연령					총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2001	591	256	93	23	34	997
	2002	505	271	113	24	29	942
특수강간	2001	65	39	5	0	4	113
	2002	121	34	16	0	3	174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동년배나 선배 등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 또는 미팅, 채팅으로 만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원치 않는 성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호감을 가지고 만났거나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비디오방에 간 경우, 동의된 성관계와의 애매한 경계로 인해 본인도 자책감을 많이 갖는다. 간혹 여성 청소년들이 편의점, 음식점, 커피숍, 단란주점, 사진관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고용주나 고객에게 성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법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폭력의 사용 여부, 저항 여부,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 행위로 취급되어 엄하게 처벌받는다. 반면에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강간치상, 특수강간을 제외한 성폭력은 거의 동의된 성관계로 의심받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요즘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강제적인 폭력의 행사를 증명하기 어려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 가해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거나, 피해가 2회 이상 지속된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고 무혐의 처리되면서 청소년 성매매로 의심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정서적인 충격으로 인한 불안, 공포, 민감, 집중력 저하, 악몽, 불면 등에 시달리며 절망감, 순결상실감, 자포자기로 섭식 장애(거식증,

폭식증), 자해, 자살기도, 우울증 등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특히 다른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힘들어하기도 하고, 남성을 기피하고 혐오하기도 하여 대인관계나 가족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 결과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되어 학습부진, 방황, 가출, 자퇴를 하게 되기도 한다.

피해자 중 일부는 간혹 자기감정을 억압하고 상처를 보상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학업에만 매달리거나 종교에 빠지기도 하는데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인해 자신을 과잉 희생하거나, 과잉 통제를 하기도 하며 다중 인격적인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많은 피해자가 무력감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성폭력에 계속 노출되어 반복 피해를 당하기도 하며 스스로 불량학생들과 어울리거나 파괴적으로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문란한 성생활에 빠지거나 성매매 행위에 뛰어들기도 한다.

가임기인 여성 청소년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피해 중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다. 많은 청소년들은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한 채 혹시 임신이 되거나 성병에 걸린 게 아닐까 불안해하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임신 중절이 어려운 6개월 이상까지 손을 못쓰고 있다가 무리하게 낙태를 하여 몸을 상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수 없이 출산하여 입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청소년 피해자들은 피해자 진술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며 억압적인 상황에서 진술을 해야 하고 대질심문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 행실, 성적, 옷차림 등에 대한 비난으로 고통을 받았고 증거가 미비할 때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도록 명령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례 3-2> 고2 여학생이 채팅으로 몇 번 만난 남자의 집에 놀러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임신을 했다. 가해자는 임신한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인정하였으나,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에 따라갔기 때문이라며 강간이 무형의 처리되었다.

<사례 3-3> 중학생 친구들과 놀다가 만취상태에서 강제추행 치상을 당하였다. 고소하였으나 형사가 피해자를 불량소녀 취급하면서 모멸감을 주었다.

<사례 3-4> 중3 여학생이 고등학생 2명에게 끌려가 윤간을 당했는데 가해자 측에서 합의하기를 줄라 이사비용을 받았다. 비친고죄라 재판이 진행되는데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법원 복도에서 가해자의 모가 자기 아들 빨간 줄 가게 했다며 피해자를 심하게 비난하고, 가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학교 성적, 가출 경력, 성격 경험 여부, 음주 여부 등을 집요하게 반복 질문하였다.

또한, 많은 청소년기 피해자는 아직 성인과 같은 인지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심판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은 어떤 연령층보다도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추구하거나, 지속적으로 상담받는 것을 회피한다.

피해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는 것을 두려워하여 적절한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소 능력을 인정한 경우 청소년의 고소도 일단 받아주지만 특수강간인 경우, 인지 수사한 수사기관에서 부모에게 연락이 가서 힘든 상황이 되기도 한다. 부모에게 나중에 알려진 후, 부모는 고소과정에서 자녀가 더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망설이기도 하고, 고소를 했다가도 합의를 조르는 가해자 측에 시달려 고소 취하를 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와는 반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의 의지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취하하거나 합의하는 경우도 많다.

(3) 성인 성폭력

성인은 판단 능력과 방어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폭력의 통념이 내면화되어 있어 피해를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기도 한다. 또한 저항을 불능케 할 강력한 폭행, 협박 등 증거를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강간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데이트 중이거나 같이 술을 마신 경우, 음주로 인사불성인 상태, 피해장소가 가해자 차량, 여관, 호텔, 피해자 집, 가해자 집인 경우 피해자가 방어하지 못한 책임을 비난받게 되고 법적 처리에 소극적이 된다. 이런 점 때문에 피해 이후에 가해자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 금품갈취, 폭력, 주변에 소문내기, 스토킹, 카메라 촬영 협박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2차 피해를 보면, 업무관계로 만났거나 데이트관계에서 식사나 술을 같이 했을 경우, 술이 만취된 심신상실의 경우에만 준강간으로 처리되기보다는 동의된 성관계로 몰려 무고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 후 혈액검사 등에서 알콜 농도, 약물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대 미혼의 성인 피해자는 직장인이거나 대학생으로서 가장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중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현황에서 성인 피해가 59.8%이고 직장 내 피해가 22%임을 감안한다면 성인 피해의 반 이상이 업무상 만난 사람, 직장관계자라고 보여진다.

기혼 여성인 경우 배우자가 성폭력 피해를 과소 평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회복을 인내심있게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부부간의 갈등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협박과 공갈에 시달려 피해가 지속 반복된 경우에도 동의된 성관계(화간)로 몰리어 가해자는 무혐의 처리되기 쉽다. 친고죄이고 본인은 원치 않는데도 남자친구, 애인, 남편, 아버지의 강권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해자는 2중, 3중의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경제적 합의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를 종용하는 것 역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수사·공판 관계자가 경제적 보상에 의한 합의를 권유하는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버젓이 나와서 돌아다닌다는 것을 용납하기 힘들어하고 무죄라서 풀려 나온 것으로 여겨 불구속수사나 불구속 구공판을 수용하기 힘들어한다. 피해자에게 불구속과 불기소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으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피해자가 심정적으로 분노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형량과 보상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소모적인 집착으로 고소에 임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대처하고 한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편, 인적이 드문 마을에서 혼자 사는 노인 여성이 동네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의 침입으로 피해를 입기도 하고, 새벽 기도하러 하는 길이나 산행 중의 노년기 여성의 성폭력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추행인 경우는 노인정이나 노인학교에서 만난 사람, 또는 사위 등 친족에 의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노년기 여성은 피해 상황에서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피해시 치명적인 상해를 입으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노년기 여성의 성폭력 피해는 스스로 드러내는 경우가 드물다. 피해 후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후유증이 나타나서 가족들이 인지하게 되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고소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고소를 해도 진술이 정확하지 못하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유죄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노년기 여성 피해자는 아동, 장애인처럼 취약한 위치에 있으므로, 주변사람이나 상담기관, 수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본 연구 대상의 2001년도와 2002년도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는 아래의 <표 14>와 같다. 관계별 2차 피해는 사적 관계, 공적 관계, 특수 관계에서의 비율이 비슷하게 분포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표 14>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사적 관계	65	27.4	65	23.8
공적 관계	58	24.5	71	26.0
특수 관계	84	35.4	96	35.2
기타	30	12.7	41	15.0
계	237	100	273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 이 표에서는 특수 관계에서 비롯되는 성폭력으로 분류된 장애인, 동성 2차 피해 2001년 5건, 2002년 7건이 사적, 공적 관계에도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유형이 중복 계산되어 <표 8>에서보다 합계가 그만큼 늘어나 집계되었다.

(1)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본 연구 대상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사례 분석에 의하면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2001년 27.4%, 2002년 23.8% 이다.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2차 피해 중에는 아래의 <표 15>에서 보듯이 이웃 등 아는 사람, 교제 관계, 가족·친족에 의한 순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표 15> 사적관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가족·친족	10	15.4	10	15.4
교제관계	25	38.5	29	44.6
이웃 등	30	46.2	26	40.0
계	65	100	65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1) 가족·친족에 의한 성폭력

친족 성폭력은 친족에 의해 일어나는 성추행에서 강간까지 포함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성폭력특별법에서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비친고죄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다. 친족 성폭력은 어린 시절 가까운 친인척에 의해서 행해지므로 이를 피해로 인식하고 문제 제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상담소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고소를 결심하거나 부모가 인지하여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싶어도 공소시효 7년이 넘어 공소권이 없는 사건들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친족 성폭력은 어린이 성폭력 피해의 약 30%를 차지하며 피해가 보통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또한 강간이 64.2%(일반어린이 38.8%)를 차지한다.

일반 성폭력 피해와 마찬가지로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어린 유아라 할지라도 그 피해 유형은 성인의 유형과 비슷하다. 대개 5, 6세 유아시기에 추행으로 시작되어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면 거의 모두 강간 피해에 노출이 된다. 손가락으로 질 삽

입 또는 항문삽입, 혀 넣고 키스하기, 성기 만지기, 가슴 만지기, 구강 성교 강요 등의 성추행에서 다양한 체위의 강간에 이르기까지 어린 피해자를 확대한다.

가해자로는 아버지 관계에 있는 친부(44.6%), 의·양부(12.8%)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가장 가까운 형제인 친오빠가 14.9%, 사촌오빠가 12.8%, 삼촌, 외삼촌이 10.9%를 차지하고 있다. 72.3%에 이르는, 친·의·양부, 친오빠, 사촌오빠에 의한 근친성폭력은 피해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피해 아동은 가족, 친인척 등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후유증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것은 임신과 낙태, 불임, 가출, 자살시도, 살인 등 극한상황까지 몰아가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친부, 친오빠 등 직계가족이 가해자일 때 가족 내 지원 체계가 없는 것이 역기능 가족의 특성이다. 모가 실제로 부재(사망, 이혼, 가출)하거나, 있어도 질환, 장애, 정서적 의존, 가정폭력과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모가 이혼을 불사하고라도 딸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친가 쪽 친척(조부, 고모부, 삼촌, 고종사촌)이 가해자인 경우와 외가 쪽 친족(외조부, 외삼촌, 이종사촌, 형부, 이모부)이 가해자인 경우, 부모와 친척들과의 권력관계에 따라 갈등이 증폭되며 이 와중에서 피해자는 이중 삼중의 심리적인 상처를 받곤 한다.

의부, 의붓오빠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 의해 친족에 2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됨에 따라 비친고죄로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모의 동거남 또는 모의 교제남이 가해자일 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친족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친족간의 위계에 의해 거부 저항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친족관계의 지속성으로 인해 피해가 지속되며, 아동학대나 폭행, 아내구타 등과 병행되는 것과 같은 특성이 있다. 이 경우 형사 사법 절차상에서 비롯되는 2차 피해는 친족 성폭력의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또한 친족간의 권력관계에 의해 빚어지는 피해이므로 피해자 조사시 상간이라는 용어나 서로 좋아했느냐, 즐겼는가 등의 질문은 상처를 준다. 조사 용어에 대한 이러한 주의가 없는 데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며 결국 대질심문이나 증인출석 요구 등으로 대면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친족 가해자를 대면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대질을 피하고 칸막이나 커튼, 일면경을 사용하여 직접 대면하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도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다. 아래의 사례와 같이 피고인 변호사에 의해 2차 피해가 유발되기도 한다.

<사례 3-5> 부모의 사망 후 큰집에 맡겨졌던 13세 여아가 큰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인 여아가 증인으로 출두하게 되었다. 비공개 신청을 하여 재판정에서는 보호를 받았으나, 끝나고 나오는 과정에서 큰집 친척들이 피해자를 붙잡고 탄원서를 강요하고 비난하였다. 피고인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습적인 도벽과 가출벽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에 양심을 품고 무고 하는 게 아니냐며 억압적인 목소리로 몰아치며 신문하였다. 배석한 상담원이 판사에게 제지해 줄 것을 요청하자 판사가 제지하였다.

부부 불화시 근친 성폭력을 고소한 것 자체가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에 이용하려는 어머니에 의해 사주 받은 행동으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사례 3-6> 이혼 후 고1 아들과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을 부가 키우는데 부가 평소에도 폭력적이었다. 부가 딸을 성폭행한다는 것을 피해자인 딸이 모에게 호소하여 모가 고소하였다. 검사는 모가 다그쳐 딸이 거짓진술을 했고, 딸의 일기장도 모가 시켜서 쓴 것이고, 의사의 진단서도 모가 억지부려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리하였다.

또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다른 형제들이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받고 대질하는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도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한다.<사례 4-56>

2) 교제관계에서의 성폭력

과거에는 낯선 사람에 의한 강간이 가장 흔한 성폭력의 형태로 여겨지고, 강간은 으스스한 곳에서 가학적 흉악범에 의해 물리적 폭력이 행사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통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실제 성폭력의 65~70%는 서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데이트 강간(date rape)은 일반적으로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동의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대부분 14세 이상의 남녀 쌍방간에 이성애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해자는 맞선 본 사람, 채팅으로 만난 사람, 부팅으로 만난 사람, 원조교제, 전 애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 연령층이 10대에서 20대에 집중되어 있지만 30대나 4, 50대에서도 일어난다. 피해 장소가 숙박업소나 가해자 집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피해자 여성은 동의하였다는 오해를 받게 되고 고소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 여성의 거부를 내숭이나 수동적인 자세라고 받아들이는 등 남녀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크게 작용하며 피해자 자신도 성폭력과 성관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순결상실감으로 다른 대상과 결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게 되며 임신, 낙태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기도 한다. 또한 데이트강간 이후에 가해자의 지속적인 집적거림, 스토킹, 협박, 폭행, 금품갈취 등이 행해지기도 한다.

배우자 성폭력(marital rape)은 주로 가정폭력의 논의와 함께 거론되고 있다. 미국 및 서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배우자 강간이 법적으로 강간임을 인정하고 있지

만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그러하지 못하다.

데이트 성폭력에서 2차 피해의 대부분은 데이트 상대자인 가해자가 성폭력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데서 대부분 비롯된다. 또한 비록 고소를 하여도 오히려 그러한 원인을 자초한데 대하여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데이트 강간을 고소까지 끌고 가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간혹 가서도 가해자가 화간을 주장할 경우 처벌에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명예훼손, 간통죄로 맞고소를 당하고, 검사에 의해 무고로 피소될 우려조차 있다.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고 미혼남녀인 경우는 적용시키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사법절차상의 2차 피해 호소가 가장 많은 피해 유형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사공판 담당자는 동의, 저항, 구조요청, 합의 여부 등에 대하여 동의된 성관계가 아님을 밝혀야 하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묻고 있다. 피해자들은 고소의 의도를 의심받고, 자세한 피해 상황의 성행위 묘사를 요구받고, 고소 취하를 종용받고, 무고로 넣겠다는 위압적인 태도에 심한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다는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고의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과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당한 피해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비난받고, 동의된 성관계로 인정되어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3-7> 고2 여학생이 채팅 남으로부터 강간당하여, 임신, 낙태하였다. 경찰에서는 가해자 집으로 피해자가 갔으므로 성관계를 생각하고 간 것 아니냐고 하였다. 경찰에서는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사례3-8> 채팅으로 만난 사람이 아는 형이랑 나왔다. 술 마신 상태에서 차가 견인되었다고 하더니 30분만 자면 깨니까 쉬었다가 바래다주겠다고 하였다. 여관에서 방을 두개 잡았으나 각각 들어가더니 그냥 좀 쉬라고 한 후 강간하였다. 소리 지르고 반항하였으나 힘으로 막을 수 없었다. 고소하자 경찰이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였다.

<사례3-9> 채팅으로 만난 남자 집에 놀러갔다가 술 취한 상태에서 강간당하였다. 고소하자 경찰이 “그 집에 간 것은 그런 생각하고 간 거지, 술은 강제로 먹이냐? 스스로 먹은 거지”라며 비아냥거렸다.

<사례3-10> 채팅으로 만난 남자가 강간 폭행하여 고소하였으나 가해자가 화간을 주장하였다. 경찰이 누구 말이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하며 합의를 종용하였다.

<사례 3-11>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두번째 만난 날, 식사를 한 후 노래방에 갔다. 손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애들 풀어서 ‘돌린다’고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결국 모텔로 끌려가 강간당하였다. 모텔 연락처를 받아놓고 경찰에 가서 의논하니 경찰에서는 고소하라는 말만 하였다. 병원에 가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 후배들이 합의하라고 계속 위협하고, 가해자는 대질심문 이후 도주했다가 다시 잡혀서는 화간을 주장하며 자신의 폭행만 인정하였다. 검사가 합의를 종용하며 1주일 여유를 주었다. 결국, 강간치상은 인정되지 않고 폭력에 대한 벌금형만 나왔다.

3) 이웃 등에 의한 성폭력

동네 사람 등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은 앞의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례 중 40% 이상을 차지한다. 유형은 동네 상급생 남아가 자기 동생 또래인 어린 유아나 저 학령 여아를 성폭행 하는 경우, 동네 노인이 여아나 장애인을 성폭행하는 경우, 동년배 동네 청소년을 성폭행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성폭력의 특징은 앞의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2차 피해와 뒤에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참고하면 된다.

평소에 안면이 있을 경우, 고소를 하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가해자를 옹호하

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가해자가 평소 신망이 있었다거나 지역 유지 등이라면,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로 부터 지지받을 여지는 거의 없다. 가해자를 비호하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연명해 돌리기도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런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백안시 당하게 될 여지가 크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가족적, 신변상의 일이 알려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입양아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사례4-93 참고)

(2) 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본 연구 대상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사례 분석에 의하면 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약 25%이다. 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중에는 아래의 <표 16>에서 보듯이 직장·학교 등 일터, 종교·의료 등에서의 관계에 의한 순으로 성폭력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표 16> 공적관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직장·학교 등의 일터	40	69.0	63	88.7
종교·의료 등	18	31.0	8	11.3
계	58	100	71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1) 직장 · 학교 등 일터에서의 성폭력

① 직장 내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현황에서는 성인 여성의 40% 이상이 직장 내에서 겪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직장내 성폭력이란 근무 중 혹은 채용과정에서 일어나는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혹은 거래처 직원들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강간, 불쾌한 성적 언어나 행위로써 여성(남성)에게 굴욕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근무 기간’이라 함은 단순히 근무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피고용인으로 되어있는 전체 기간을 말한다.

직장 내 관계에서의 강간, 강간치상, 강간미수, 폭행 등은 형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형법 303조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 성폭력특별법 제 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형사 처벌되고 있다. 그러나 직장내 성추행의 경우 입증이 어렵고, 문제제기 후 피해자에 대한 방어가 나타나 불이익과 심적 고통을 겪게 되어 노동 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등 직장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 결국 직장내 성폭력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생의 노동권을 위협하게 되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게다가 고용주나 상사의 지인, 거래처 사람, 고객 등에 의한 피해가 빈번하고 개인 영업, 서비스, 판매 사업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 직장내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 업무상 친절하게 대한 것이 가해자 행위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고 따라서 성폭력을 화간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많으며 강간이 입증되지 않아 가해자가 무혐의 처리되었을 때 남편에 의해 간통으로 고소되는 경우도 있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여성이 피해를 당한 후 회사를 계속 다녔을 때 피해가 지속되기 쉬우며, 오히려 폭로 위협과 금품 갈취 등의 시달림을 겪는다. 고소 후에는 이러한 지속적인 피해가 오히려 화간으로 의심받고 ‘왜 고소를 늦게 했느냐?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시달리게 된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심지어는 가해자의 부인에게 간통으로 고소를 당하기

도 한다.

한편 피해를 인지한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가해자를 찾아가 따지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인 손상은 물적 증거로 확실하지만 강간, 추행을 입증하기 어려워 가해자를 고소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곤 한다.

업소 여성,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당했을 때 수사과정에서 많은 수모를 당한다고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여성들은 과거의 성력과 차림새, 음주상태 등에 대하여 비난받고 있으며, 고객에 의한 폭행과 완력이 수반된 성행위 강요, 폭언과 추행 등은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치부되어 고소의 의도를 의심받고 꽃뱀으로 몰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직장 내 강간의 경우에, 수사 시 발생하는 2차 피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사례3-12> 입사한지 1주일만에 회사 사장으로 부터 강간 피해를 입어 경찰서에 고소하고 진단서도 제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조사계장이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엄마가 술집을 경영하는 것을 지적하며 피해자를 꽃뱀 취급하였다.

<사례3-13> 회사사장으로 부터 어린 여사원이 지속적인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검찰에서는 내연의 관계로 종결하였다.

<사례3-14> 직장 동료가 술 먹고 집에 찾아와 강간하였다. 고소했으나 경찰이 피해자가 불러들인 것 아니냐는 식으로 신문하였다.

<사례3-15> 회식 후 가해자 집으로 모이기로 했다고 하여 가해자와 가해자 친구들과 함께 가해자 집에 갔다가 강간치상 피해를 당하여 고소하였다. 검찰에서 합의를 종용하였다. 또한, 검찰에서 치상은 일주 진단이므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간으로만 기소하겠다고 하였다.

<사례3-16> 회식 후 직장상사가 여직원을 여관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하였다. 고소하자 가해자 측에서 증거 인멸을 위하여 증인 (여관, 밥집, 호프집 주인 등) 들을 돈으로 매수하였다. 피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계속 경찰 측 조사만 받고 있다.

<사례3-17> 직장상사가 회식 후 차로 끌고 가서 강간하였다. 신고하여 현장에서 연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를 하였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재수사 지시를 하였다. 현장 검증시 가해자 측 친구인 불량배들이 피해자 주변에서 위협적으로 맴돌았다.

<사례3-18> 세무사 사무장이 강간하고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린다고 협박하였다. 신고하였으나 경찰의 태도가 미온적이었다.

직장 내 추행의 경우 수사 시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사례3-19> 상사가 강제추행과 음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1개월 후 고소하자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고소의견을 송치하였다.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서로 좋아하는 것 아닌가,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추궁하여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하였다. 검사에게 두 번 불러 가 종일 진술하였다. '도망가지 못했다'를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써서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화를 냈다.

<사례3-20> 회사 야유회에서 상사가 추행하여 싸우는 도중에 졸도하여 119로 실려갔다. 상해 1주, 정신과 치료 6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에 신고하니 성추행은 증거가 없다고 하고 상해 쪽으로 몰고 갔다.

<사례3-21> 보험회사 대리점에 근무하는 피해자인데, 남자 직원이 시비를 걸어 다투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목을 잡고 앞뒤로 흔들고 가슴을 3번 정도 만졌다. 처음에는 폭행부분만 고소하여 벌금 300만원과 2일 구류가 내려졌다. 다시 성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

<사례3-22> 가해자가 직속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지방으로 내려 오라고하여 술을 먹인 뒤 숙소를 잡았다고 하며 호텔로 데리고 갔다. 방만 잡아주고 갔다가 다시 양주를 들고 방문하였다. 술을 먹은 후 “이제 가라”라고 하자 강제로 키스하고 온몸을 만졌다. 단란주점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고 강제로 키스하였다. 노조 사무실 전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오히려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사례 3-23> 사무실에서 3회 정도의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호텔에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다쳤다. 퇴사 후 고소장을 검찰청에 접수하였다. 다른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형의는 기소했으나 강제추행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법으로도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행위를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음란한 그림,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팩스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통신매체 이용음란으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2,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위반 시 가해자가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의 조치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성단체에 의해 성폭력특별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삽입시키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② 학교 성폭력

교육자에 의한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 2002년도 상담 중 교육자에 의한 제자 성폭력사례는 110건이다. 여기서 교사라 함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등 제도교육권 내의 교육자를 의미하고, 강사라 함은 사설학원, 과외, 체육관 등 비공식기관에서의 교육자를 의미한다.

군사부일체라는 유교적 관념이 아직도 강한 우리 사회에서 교직은 성직과 마찬가지로 윤리 도덕적인 신뢰와 기대를 받고 있다. 교육열이 높고 교육에 자녀들의 장래를 결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자는 막대한 영향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가르침과 영향력을 받는, 스스로 결정하거나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취약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권력관계에서 교사·교수에 의한 성폭력은 교육의 모습으로 위장되기 쉽다. 이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교사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인지 성적인 피해인지 혼란스럽게 한다. 또한 피해자는 교사와 제자의 위치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무력감으로 피해를 드러내기가 힘들다. 용기를 내어 드러내어 보아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기 쉬워서 다른 유형의 성폭력보다도 더 많이 은폐되고,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내고 있다.

교사는 학생의 인정받고 칭찬 받고자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성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피해 아동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가 지속된다. 대부분의 피해 아동들은 부모보다 교사를 더 막강하게 느끼기도 하고, 학교에 와서 항의하면 소란스러워지고,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을까봐 두려워한다.

부모들도 분하면서도 아이가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을까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 교사에게 여러 아이들이 피해를 당해온 경우에는 문제제기하자고 규합하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이 엇갈려 후속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문제를 인지한 많은 여교사(여교수)들이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학교

측은 관리상 문책을 모면하려 사건을 은폐, 무마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대학의 경우 교수에 의한 조교, 대학원생, 대학생 피해가 학내 문제로 대두되곤 한다. 특히 교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예·체능 계와 논문지도, 실험, 임용 문제 등으로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서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문제제기 이후 무고 공방,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지원자인 총여학생회와 대학 당국의 대치 등 파생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피해의 심적 고통을 호소한다.

동급생·선후배에 의한 피해

학교에서 동급생·선후배에게 당하는 피해는 다양하다. 아동의 경우 대부분 장난이나 호기심의 차원에서 무마되고 있으며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도 학교 교사의 중재로 사과나 문책, 전학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여러 명이 어울려서 취약한 환경의 아이를 골라 괴롭히는 양상이 자주 드러나고 있고, 그 피해 후유증도 심각하다.

<사례 3-24> 중2 동급생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해오다가 가방을 빼앗고 화장실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친구에게 의논하자 친구가 학교 선생님에게 알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나 보호 없이 여러 차례 진상조사를 했고,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부모에게 학교장이 아주 불쾌한 태도를 보였다. 1주일간 견디며 학교에 나가다가 너무 힘들어 쓰러진 후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자 측 부모는 사태를 가볍게 취급하고 치료비는 주겠다고 하였다.

한 학교 내에서 가해자·피해자를 교육하여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배려하고 보호해야 하는 동시에, 가해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기보다는 교정, 교육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과 자기 행동의 결과를 책

임지는 인간 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대학 내 사건으로는 학과, 동아리 술자리나 MT에서의 성폭력, 데이트 관계에서의 성폭력, 스토킹, 결별 후의 소문내기, 화장실, 도서관에서의 피해, 사진이나 컴퓨터 등을 통한 음란물 게시 등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대두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대자보로 사과하기, 성폭력 상담 기관에서 가해자 교육, 자퇴, 휴학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에 의한 피해

학교 관계자로는 학교 직원, 운전기사, 급식배달인, 수위, 학교주변에서 학생을 상대로 영업하는 문방구 주인, 학교에서 참여하는 수련장 레크레이션 강사나 교관, 교사를 사칭한 침입자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보여 지고 있다.

남녀차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각 학교에 성희롱예방교육과 성폭력상담 담당 부서 설치 등을 시달하고 있다.

피해자 수사·공판과정에서 종종 학교성적, 품행에 대한 지적을 받으며 좋아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냐, 사적 감정으로 무고하는 것이 아니냐 등의 의심을 받곤 한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 성인이기 때문에 교수가 동의된 성관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력의 행사와 적극적인 저항을 증명하기 어렵고 같이 술을 마셨다던가, 피해가 지속된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고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기도 한다. 사제관계는 강력한 권력관계이기도 하다. 또한 교사는 공무원 보호법에 의해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으면 파면이 안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소를 취하시키려 노력한다. 또한 학교당국은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킬까 우려하고 관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사건을 축소하고 무마하려고 한다. 따라서 취약한 위치의 학생 입장을 감안한 엄중한 수사 없이는 2차 피해자화를 예방하기 어렵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권유하거나, 합의금을 올리려고 하느냐는 등의 질문

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가해자와의 결탁을 의심하여 분노와 상처를 받는다.

<사례 3-25> 피해자가 이공계 대학원에서 밤새워 실험을 하던 중 같은 학교 교수인 피의자가 피곤하니 잠깐 쉬고 오자고 하여 교수의 차를 탔다. 모텔에서 식사와 약간의 술을 같이 한 후 강간을 당했다. 강한 억압과 저항이 없었고, 성기삽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이 무혐의 처리되었다.

<사례 3-26> 피아노 레슨 중에 교사가 추행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학교에서는 피해자가 평소 교사를 짝사랑하여 쫓아다녔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교사의 결백을 지지한 학생들의 탄원서가 제출되면서 피해 여학생이 수사를 받다가 너무 힘들어 자살 시도를 하였다.

<사례 3-27> 초등학교 6학년 여아가 담임교사로부터 지속적인 추행을 당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후유증이 심해졌다. 부모가 고소하자 변호사를 통하여 4,000만원에 합의하자고 졸랐으나 거부하자, 아동이 거짓 진술한다고 공박하며 육성희 등 학부모들의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였다. 법정 구속되어 실형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아동은 전학하고 이사를 해야 했다.

<사례 3-28> 상습적으로 아동을 성추행 하던 교사가 학부모의 거센 항의로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갔다. 그곳에서도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는데 1심 선고 전에 합의를 보려고 피해자 가족들을 귀찮게 쫓아다녔다.

<사례 3-29> 코치에게 성추행을 당하던 운동선수들이 반발하고 항의하자, 선수들을 대회에 출전시켜 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세 명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였다. 학교 측에서 고소취하를 강권하였고, 두 명은 취하였다. 끝까지 취하지 않은 한 학생에게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 추천을 해주지 않았다.

2) 종교 · 의료 등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폭력

① 성직자에 의한 성폭력

성직자에 의한 신도의 성폭력 피해는 폭력과 위협보다는 유인과 위계가 많이 작용한다. 교리를 인용하여 성적 접촉을 정당화하고, 병의 치유를 빙자한 안수행위, 악령을 쫓아준다는 구마행위, 개인 신상에 관한 상담과정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 당시에는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직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신도의 자발적인 추종과 순응으로 진행되고, 거의 현납적인 모습으로 당하기 때문에 피해의 입증에 어렵다. 다른 피해자들이 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여 문제를 제기할 때 성직자를 변호하는 교인들의 비난을 받으며 종교단체 내 세력간 다툼에 이용되기도 한다. 교단의 책임회피나 압력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지원하는 단체나 사건을 보도한 매스컴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협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성직자의 가해 행위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이 자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신도의 취약점과 정신적인 의존을 빌미로 자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를 심신미약의 상태로 보고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자는 논란도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성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거의 가해자의 구속,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척을 이루지 못했는데 특수한 집단의 내부 사정을 탐문해야 하는 어려움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수사진의 강력한 의지가 없고서는 성직자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② 의료진에 의한 성폭력

산부인과,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 한의원 진료시, 물리치료, 지압, 기타 불법의 료시술 등 의료행위 중에 일어난 피해가 보고 되고 있다. 의료전문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맡긴 상태에서의 피해는 환자에게 큰 당혹감과 분노를 갖게 한다. 그러나 의료전문가가 전문적 치료행위를 주장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의료진에 의한 성폭력 2차 피해는 바로 이 입증의 어려움에서 대부분 비롯된다.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할 때 가해자는 강력히 부인하고 치료 행위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전문성을 가지고 방어를 한다.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하는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하다. 따라서 의료사고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중의 피해는 의학적인 전문성과 법률적인 전문성이 겸비한 전담수사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투자와 양성이 필요하다.

<사례 3-30> 교통사고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40대 환자가 물리치료실에서 강간피해를 당하였다. 이후 가해자의 사실 시인과 배상 약속까지 받았으나, 경찰·검찰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기혼여성이며, 교통사고 환자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고소의 의도를 의심받았다. 밖에 다른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 후 즉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한참 지나서 고소했다는 점,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판결이 났다.

<사례 3-31> 가슴 성형수술을 받고 마취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후속치료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진료가 끝난 후 고소하자 돈을 뜯어내려 한다며 진료행위였음을 주장하였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며,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

<사례 3-32> 복통으로 진료 받으러 간 환자에게 성추행한 의사를 고소하였으나, 상식적으로 간호사와 환자가 밖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추행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며 무죄 판결이 났다.

<사례 3-33>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로부터 강간미수의 피해를 당하였다. 가해자와 병원에 항의하고, 바로 경찰서에 병원 원장과 가해자를 고소하였다. 담당형사가 병원 측은 고소대상에서 제외시키라고 하여, 병원 측은 빼고 고소장을 재작성하였다. 경찰에서 피해자를 피고소인 취급하고 정신병자로 몰고 갔고,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되었다.

<사례 3-34> 어깨가 아파서 아는 침술원에 갔는데, 내진을 한다고 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동일 침술원에서 치료받은 올케, 사촌에게 전화를 해보니 동일한 피해를 당했다고 하여, 침술원에 따지러 갔다. 침술원에서는 그런 일도 없는데 짜고 협박한다며 경찰에 고소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성추행으로 맞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인척관계가 아닌 제3의 다른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사실을 인정하겠다고 하여 다른 피해자를 수소문해서 찾았지만, 이 일에 끼고 싶지 않다며 합의서만 쓰고 갔다.

(3) 기타 특수 관계에서의 성폭력

본 연구 대상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사례 분석에 의하면 특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35% 이다. 특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2차 피해 중에는 아래의 <표 17>에서 보듯이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인 성폭력, 동성 성폭력 순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표 17> 특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장애인	3	3.6	4	4.2
동성	2	2.4	3	3.1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 외	79	94.0	89	92.7
계	84	100	96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1)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서울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2002년도 상담 현황에 의하면, 피해 여성 장애인의 직업은 무직이 51.7%로 제일 높으며, 이는 열악한 조건의 여성 장애인으로 직업을 갖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은 더욱 열악한 조건이며 상담을 해올 수도 없는 처지에 있을 수 있다. 피해자의 나이를 보면 성인이 62.1%로 나타나는데 미혼이 87.4%로 많은 것을 보면 여성장애인에 대한 결혼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장애유형을 보면 정신지체, 뇌병변, 정신장애, 정신지체, 청각언어, 중복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로 나누어진다.(<표 18>)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유형을 보면, 강간이 83.9%인데 이는 장애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실태를 보여준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이웃, 모르는 사람, 근친, 교사, 강사, 동급생 선후배, 기타, 자원봉사, 직장, 목사 성직자, 친인척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 유형에서 모르는 사람이 가장 높고,

청각 언어의 유형에서 동급생·선후배, 근친이 비교적 높고, 지체 장애 유형에서 자원 봉사자와 교사·강사, 직장,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

<단위 : 건>

상당소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발달	정신	중복 장애	계
서울	6	8	3	6	48	1	7	5	84
	7.1%	9.5%	3.6%	7.1%	57.1%	1.2%	8.3%	6.0%	100.0%

출처 : <2002년도 상당현황>, 서울장애인성폭력상담소

피해 발생장소는 피해자의 집, 여러 장소의 시설이나 학교, 야외, 가해자의 집, 숙박업소, 모르는 장소, 직장, 기타의 순이었다. 피해 발생 장소로 집이 일순위인 것은 정신지체 피해자가 혼자서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서 하는 성폭행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가해 방법을 보면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이 48.3%, 그리고 강제력 사용이 42.5%, 과자나 돈으로 유인한 것이 4.6%로 나타나는 데 이 세 가지 모두 여성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따른 취약성을 악용하여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성폭력 가해자 수는 1명이 81.5%, 2명이 1.2%, 3명 이상이 17.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 3명 이상의 비율이 높은 것은 지속 피해의 비율과 함께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속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가 55.2%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 이상도 13.8%나 차지한다. 지속회수 1회가 18.4%, 2회에서 10회가 12.6%를 차지했다. 미혼의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가 기혼인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가 그 지속성으로 인해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최초의 내담자는 관련 단체가 34.5%, 동료·이웃·교사가 27.6%, 보호자가 27.6%, 본인이 9.2%로 나타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해오는 사례는 9.2%에 불과하며 나머지 90%이상의 피해가 주변에 인지되어야 상담을 의뢰해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드러난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는 드러나지 않는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경우 결혼 전에 같은 동네의 가해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다가 이웃 동네 사람과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전의 가해자가 결혼 후까지 찾아가 성폭행을 한 예가 있는가 하면, 1급의 70대 정신지체 할머니가 같은 마을의 60대 가해자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등 특정한 장애 유형에 따라 나이와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정도가 다른 형식의 성폭력이 나타나기도 한다³⁶⁾.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보면, 피해자는 우선 정신적 후유증으로 심한 분노나 불면·불안·우울·무기력 등을 동반하며 대부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신체적으로는, 질의 심한 손상이나 폭력으로 인한 상해를 입고, 임신과 관련된 낙태 및 출산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한다. 성적 후유증으로 과잉 성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남성에 대한 부정적 성인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회적 후유증으로는 대인관계 회피, 불특정인에 대한 공격적 행동이 나타나고 직장에서는 피해자이면서도 해고를 당하며, 사회적 편견과 여성장애인의 조건(학력이나, 장애 유형의 정도)에 의하여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형사사법 절차상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2차 피해는 우선 피해자가 장애의 특성상 거부와 저항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것이 동의로 해석되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피해경위를 일목요연하게 진술하지 못하여 피해경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비친고죄인데도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가 무혐의

36) 장명숙, 「여성장애인전문성폭력상담소에서 바라본 성폭력특별법」, 한국여성단체연합 2003년 인권위원회 집담회 회의자료, 2003.

처리되곤 한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진단과 평가도 필수적이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청각장애, 정신지체 등 장애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방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사 표현이 힘든 장애인의 경우는 전문가가 진술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장애인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동석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장애인 피해자의 2차 피해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례 3-35> 이웃집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 주부가 청각, 언어장애를 갖고 있었다. 동생이 피해를 인지하고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수화통역자가 교섭되지 않아 수사진행이 지연되었다.

<사례 3-36> 정신질환을 가진 20대 여성이 동네사람에게 강간을 당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정신분열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의사가 간헐적으로 증세가 나타난다고 증언하여 무혐의로 불기소되었다.

<사례 3-37> 신체장애가 있는 14세 소녀를 4일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강간한 전과 4범을 고소하였으나, 경찰이 “열쇠를 주고 나갔는데 도망을 가지 않았고, 몇 년 전에도 성피해로 고소한 경력이 있다”고 하며 불리하다고 말하였다.

<사례 3-38> 정신지체 여성이 옆방 남자에게 강간당한 후, 칼로 협박당하며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된 뒤 바로 가해자의 친구 3명에게 또 윤간 피해를 당했다. 검찰 진술과정에서 피해자가 횡설수설한다고 검찰관계자들이 야단치며 압박질렀다.

또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이웃 사람이나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장애인 피해자를 보호할 쉼터나 보호소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성폭력 전담 수사반이 따로 설치되면 이상적이겠지만 우선은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찰 조사, 법정 재판의 진행과정에 필수적으로 관련 담당자들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각이 필요하다. 또한 상담·의료지원·경찰연계가 통합적으로 진행되는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2) 동성에 의한 성폭력³⁷⁾

대부분의 성폭력은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지만, 남성이 남성을 성폭력 하는 경우도 적은 비율이지만 나타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의하면 남성 피해 고소 건수는 전체 피해의 3~5.5%를 차지하고 있는데(<표 12> 참고), 이중 미성년자인 남아의 피해는 69건, 42건, 78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현황에서는 연간 100건 내지 120건 정도가 상담 의뢰되고 있는데 이중 80% 이상이 미성년자이다. 13세 미만의 남아 피해는 형법,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비 친고죄로 처벌되며, 남자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은 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로 처벌된다(1년 이상 유기징역,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공개).

전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대(對)여성범죄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강간의 개념 규정이 ‘가해자는 남자, 피해자는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의 피해에서 만지기, 빨기, 항문 성교, 2인 이상의 유사 성교 등의 심각한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규정된다. 아직도 남성 피해는 그 심각성이 공론화되지 않아서 묻혀지는 경우가 많다. 남성도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가해자를 적극 처벌해야 한다는 예방교육이 부족하고,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하고 보호해 주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고 있는

37) 동성에 의한 성폭력은 남성에 의한 남성 성폭력, 여성에 의한 여성 성폭력을 포함하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 의한 여성 성폭력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여성간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의 사례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해둔다.

실정이다.

남성들은 비교적 성에 개방되어 있어 경미한 접촉은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어려서부터 남성다움을 강조받으며 성장하기 때문에 강요나 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남성성에 타격을 준다. 피해자는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고 내면화시켜 성격 형성이나 대인관계, 이성관계, 결혼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다. 성병 감염, 에이즈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심하며 이에 대처할 비뇨기과 항문외과, 감염내과 등 활용할 의료진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다.

성폭력이 약자에 대한 폭력 범죄임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남성 피해의 경우 연령, 완력, 지위의 차이에 따른 위계가 폭행과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군대나 감옥 등 엄격한 상명하복의 구조는 성폭력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다(사례 3-39, 40). 군대나 감옥에서는 피해를 드러낼 창구가 부족하고 보복,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사후 처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

<사례 3-39> 군대 상사에게 항문성교 당한 27세 청년이 5년 전의 피해 후유증으로 몸에서 계속 썩는 냄새가 난다고 병원을 전전하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사례 3-40> 군대에 설법을 하러 오는 승려가 신도인 군인을 추행하여 군부대에 고소하였으나 종교 행사 주재자만 교체되고 무마되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폭력과 병행하여 구타, 금품갈취, 성적인 수치감과 모욕을 당하는 추행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사례 3-41~43).

<사례 3-41> 동성애에 대한 선망을 가진 동년배가 완력과 위협으로 동성애를 강요하였고, 그것을 거절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사례 3-42> 학교에 침입한 청년으로부터 학교 외진 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아버지가 인지하고 바로 학교에 조치하도록 경고했으나 학교에서는 신고를 만류하였다.

<사례 3-43> 가출하여 술집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술집 주인이나 폭력배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였다.

남자 아동의 경우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유인이나 장난으로 위장한, 또는 끌려가서 고령의 어른이나 선배의 술수에 의해서 산 속, 공중화장실, 극장, 빈 집, 가해자 집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사례 3-44, 45, 51). 다수의 동년배에 의해서 힘이 약하고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추행을 당하는 사례(사례 3-46), 사회적 위계 관계를 이용한 사례 (사례 3-47, 48)등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친분관계를 이용한 성폭행 사례도 관찰된다(사례 3-49, 50).

남아 피해에 대해 무지한 부모는 피해를 인지했을 경우, 별것 아닌 것으로 무시하거나 엄청난 충격과 경악으로 적절한 대처를 해주지 못한다. 그 결과 피해 남아들은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성적 자극에 노출되어 과도한 성적 호기심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한 성적 방종, 가해 행위, 성적 도착 등의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피해 남아와 보호자는 성병과 에이즈 감염,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 등 후유증을 보이기도 한다.

남성 성폭력은 수사·공판 과정에서 남성 피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여성 피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난받는 피해자가 된다. 이와 같이 고소해도 가해자에게 온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비난받게 되는 남성 피해자의 경험은 2차 피해로 인식된다.

<사례 3-44> 학교 앞 문방구 할아버지가 남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여 양호

교사가 인지하여 부모들에게 알려 고소하였다. 1심에서 가해자가 고령이고 초범이고, 피해자가 남아라는 이유로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벌금형만이 선고되었다.

<사례 3-45> 중학교 2학년인 남아가 모르는 아버지로부터 빈집으로 끌려가 항문 성교를 당하고,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만난 공원, 빈집 등을 찾아다녔지만 가해자를 잡지 못했다.

<사례 3-46> 초등학교 1학년인 남아가 동네 청소년에게 성추행을 당하여 항문 출혈이 되었다. 비뇨기와 치료 후 고소했으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초범이고 학생이라고 훈방되었다.

<사례 3-47> 출장 중 평소에 아끼던 후배로부터 숙소에서 성추행 접근을 받아 화를 내고 밀쳤으나 재차 음란한 말을 하며 접근하여 한 대 쳤다. 후배의 눈 밑의 뼈에 금이 가 6주 진단이 나오고 수술을 하게 되었다. 성추행을 방어한 피해자를 후배가 오히려 폭행으로 고소하고 이천만원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구속되었다. 천만원으로 합의하고 풀려났으나 약식기소로 벌금형 이백만 원이 나왔다. 알고 보니 다른 동료들에게도 상습적으로 접근했다고 한 사실이 밝혀졌다. 재범 발생을 방지하고자 고소하려고 했지만 추행의 증거가 미비하다고 하였다.

<사례 3-48> 외국 국적을 가진 사장이 출장 올 때마다 동성 성교를 강요하였다. 참다못해 고소했으나 경찰에서는 “성인남성이 싫으면 거부하면 되지 않느냐”며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여 성기를 뺀 정액을 모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후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사직하였다.

<사례 3-49> 고시준비를 하러 절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을 주지가 밤에 들어와 성추행하였다. 고소하자 호법부와 관할 경찰이 합의를 강요하여 취하했으나 이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례 3-50> 형, 동생으로 부르며 지내는 사람이 항문 성교를 하여 고소하였으

나 “성인 남성이 강력히 저항할 힘이 있는데 당했느냐”며 강제로 당한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전의 돈 거래로 인한 앙심으로 몰아갔다.

<사례 3-51> 수영장에서 놀던 12세 남아를 60대 남자가 성추행하는 것을 수영장 코치가 발견하여 신고하였다. 가해자 직업이 학교 교사라 합의를 즐겼어도 아동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어서 처벌을 원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 1심 재판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사재판과정에서 경찰이나 가해자 변호인이 계속 합의금을 올리려고 한다는 비난을 하여 울분을 토했다.

<사례 3-52> 중학교 1학년 남아가 동네 광패 2명으로부터 산으로 끌려가 항문성교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가해자들은 강제 추행으로 처벌되었다.

남아피해도 어린이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주므로 범죄임을 확실히 하고 마땅한 징계와 사후조치를 해주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5세의 차이를 권력관계로 보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남성피해를 유사 성교행위로 간주,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다. 남성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남성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3)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 외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인 가해자는 가해자의 특성상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거의 어렵다. 신원 미상의 가해자는 검거의 어려움으로 처벌이 역시 어렵다.

미성년자는 형사책임능력자인 14세 이상인 자와 형사미성년자인 13세 이하인 자(소년법의 보호처분만의 대상인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 그 이하의 미성년)로 구분된다. 12~13세의 가해자는 소년법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처리되며 소년원에 수감되거나 선도보호를 받고 처벌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12

세 미만의 가해자는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는다. 정신 지체자나 정신 질환자 역시 판단 능력과 통제력이 없어 법적 처벌 대상자가 안 된다. 노인 가해자인 경우는 고령이고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거의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며 가해자 가족의 합의 중용으로 많은 경우 합의에 이른다.

처벌의 불가능이나 어려움이 이들에 의한 성폭력이 가볍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심각함과 반(反) 사회적 영향은 형사처벌 가능자의 성폭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미성년 청소년 가해자의 성폭력은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남아에 대한 성추행, 항문 성교, 금품갈취나 집단 폭행과 같은 학교 폭력을 병행한 형태의 성폭력, 본드와 같은 약물 중독 상태에서의 윤간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년기나 초등생 가해자의 성폭행 역시 아래의 사례와 같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때로는 장기간 지속되거나 여러 명의 가해자가 한 명의 피해자를 집중 가해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것임을 보여준다.

<사례 3-53> 10세 남아가 8세 여아를 추행하여 처녀막이 손상되었다. 가해자 부모가 애들이 어려서 한 장난인데 그러냐고 비난하여 경찰에 고소했으나 가해자가 어린이라고 고소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다.

<사례 3-54> 미술학원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2-3개월 정도 추행을 당하였다. 주로 만진 애가 2, 3명이었다. 상처가 크게 나서 아이를 달래서 보니 귀두가 찢어져 있었다. 상처가 난 날 아파서 소리를 지르며 선생님에게 구조요청을 했으나 모른 척 했다고 하여 교사들에게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각한 심리적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사례 3-55> 만 4세인 유아가 중1, 초6, 초5, 초2 아이들로부터 성추행피해를 당하였다.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중1 아이는 보호관찰처분만 받고, 나머지 아이들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례 3-56> 유치원에서 7살 짜리 남자아이 3명이 6세 여아에게 키스하라고 시키고 속옷을 벗겨 성기를 보았다. 울면서 저항하자 가슴을 누르고, 입을 막고, 발로 얼굴을 밟았다. 그리고 장난감 집에 아이를 가두어놓고 때리고 꼬집었다.

장애인, 노인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 역시 청소년 성폭력 못지않게 심각한 양상을 드러낸다. 노인은 유아, 어린이, 장애인, 여자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자로 주목된다. 노인 가해자는 폭행, 위협보다는 용돈, 금품제공, 회유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폭행하는 경향이 있다.

<사례 3-57> 피해자가 자취하고 있는 집에 옆집 남자가 침입하여 강간미수의 피해를 당하였다. 가해자를 구속했으나 경찰이 가해자가 정신이상자라고 하며 합의를 권유하였다.

<사례 3-58> 82세 동네 노인이 저능아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하여 고소하였다. 2심에서 실형 10개월이 선고되었음에도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다.

<사례 3-59> 67세 집주인이 상습적으로 세 들어 사는 5세 여아를 추행하였다. 1심에서 2년이 선고되었으나 지병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하였다.

<사례 3-60> 63세 문방구 주인이 남아를 상습적으로 추행하여 고소하였는데,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기를 조르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동네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이사를 하였다. 1심 재판에서 가해자가 고령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8개월 실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문제는 이와 같이 심각한 양상의 성폭력이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이유

로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처벌을 할 수 없더라도 이러한 양상의 성폭력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고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동일 피해자나 다른 피해자에게로 성폭행이 확대 재생산되거나(사례 3-61, 62), 정신과 진료를 받고 가해자를 피해 전학을 가야 하는(사례 3-60)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례 3-61> 동네 30대 남자가 성추행하여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가 가해자가 정신병자라고 하며 풀어주었다. 가해자는 풀려 나온 뒤에 돌아다니며 다시 성폭행을 하고 다녔다.

<사례 3-62> 정신지체 장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임신이 되었다. 가해자가 동네 63세 남자로 밝혀져 구속이 되었고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집행 유예 중 동일 피해자를 또다시 강간하여 재수사중이다.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에서는 아래의 사례와 같이 피해자 가족이 2차 피해의 대상이 된다는 특징이 보인다.

<사례 3-63> 5살 여아가 동네 정신질환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 가해자가 아이들을 자꾸 쫓아다녔으나 경찰은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 가해자 부모가 누가 고소했냐고 오히려 길길이 날뛰어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자 아이에게 해가 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노인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 노인의 가족, 자녀 등이 합의를 졸라 합의를 해주고 나면, 가해자의 가족들이 '죄가 없으니 풀려 나왔지'하며 돈을 노리고 고소한 것이라는 비방을 피해자 가족에게 해대어 심적인 고통을 받음은 물론 이를 피해 이사가기도 한다.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의 경우, 대체로 아직 자기 의사 표현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부모들은 피해자를 대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심적 고통을 감수하게 된다. 피해자 부모들은 형사 처벌은 안 되더라도 일단 고소하면 수사에 착수하여 조사과정을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는 처벌이 아니더라도 사회교육 등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장애인 성폭력의 경우는 가해자에 대한 가족들의 관리를 확실히 약속받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있기를 피해자 가족들은 바란다. 또한 피해자는 가정형편이 열악한 장애인으로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파출소, 경찰서장 재량으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보호시설에 입소 격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바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체계적으로 취해지지 않는 현실 상황에서 가해자 가족의 회피와 무관심, 사과는 커녕 역으로 피해자에게 퍼부어지는 비난, 경제적 보상을 꺼리는 태도, 예전처럼 활보하고 다니는 가해자 등은 피해자를 대신해 성폭력 문제 해결의 뒤처리를 감당해야 하는 가족(대체로 부모)에게는 2차 피해로 경험된다. 즉 피해자 가족들은 억울함과 공포와 같은 심적 고통을 수반하며 때로는 가해자나 그 가족을 피해 이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정신장애인의 가해는 법적 처벌이 주어지지 않으며 이 때문에 통제가 안 되고 강화되기도 한다. 가족들은 장애인을 돌보는데 지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가해자 가족을 강제로 이사시킬 수가 없으므로 피해자 측에서 이사를 하고 마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편 신원 미상의 가해자 성폭행으로 인한 2차 피해는 다음과 같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사례 3-64> 여대생이 강도강간 피해를 당하고 병원에서 정액을 채취하여 신고하였다. 경찰서에서 오라, 파출소에서 오라, 형사가 만나자라고 하며 수시로 피해자에게 출두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더 힘들어하였다. 용의자를 잡았다고 오라고하

여 남자 친구와 함께 가니 바로 그 용의자와 대면하게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을 모른다고 하니 즉석에서 그 용의자를 풀어 주었는데, 그 용의자는 옆집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 후 피해자는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사람과 마주칠까봐 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강도강간의 경우 피해자 신고가 없이 인지 수사하게 될 때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 또는 신고인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용의자와의 직접 대면은 피하게 하는 등 비밀유지와 신변안전을 보장해 줌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3. 수사 · 공판 단계별 2차 피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수사 · 공판 단계별 2차 피해 사례 분석에 의하면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2차 피해는 수사과정 2001년 80.6%, 2002년 52.2%, 수사 · 공판 과정 외 2001년 11.6%, 2002년 21.1%, 공판과정 2001년 7.8%, 2002년 11.7%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표 19>). 약 80~90%의 2차 피해가 수사 · 공판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 · 공판 단계의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사례들을 고소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분류하여 각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 및 2차 피해의 특성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이 모두 2차 피해는 아니다. 거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위해 형사사법 과정을 선택한 이상, 피치 못하게 감당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나 이에 기초하는 지원 시스템의 부재에 의해 더욱 가중되기도 하며, 이런 점에서 2차 피해와의 경계가 모호한 점도 있다. 즉 배려와 지원 시스템의 부재가 2차 피해로밖에 볼 수 없는 막중한 고통을 피해자에게 안기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피해자의 어려움과 2차 피해를 구분하되 양자의 모호한 경계, 상호중첩이나

전이성(轉移性) 또한 충분히 감안하면서 피해자의 어려움과 2차 피해 문제를 살펴 보고자 한다.

<표 19>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수사과정	187	80.3	179	67.0
공판과정	18	7.7	31	11.6
수사·공판과정 외	28	12.0	57	21.3
계	233	100	267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1) 경찰수사 과정

여기서는 경찰 수사단계를 고소과정과 고소인 조사과정으로 나누어 그 과정의 어려움 및 2차 피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의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 사례분석(<표 20>)에 의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2001년 79.1%, 2002년 77.7%이다. 경찰수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경찰수사중, 신고, 고소 단계의 순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 기법이나 조사 환경 등의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0>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경찰 수사 단계	신고	45	24.1	45	25.1
	고소	30	16.0	28	15.6
	경찰수사중	73	39.0	66	36.9
검찰 수사 단계	검찰수사중	39	20.9	40	22.3
계		187	100	179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고소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2차 피해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당하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으로 적절하게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피해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성폭력으로 고소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가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준다든가, 가해자에게 사실을 인정받고 사과를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상처를 받는다든가하는 경우 고소를 결심하게 되기도 한다. 피해자 스스로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가해자 처벌, 피해에 대한 보상 등 무엇을 요구하려 하는지 분명하지 못한 애매한 상태에서 고소를 하기도 한다.

문제는 친고죄의 고소 기간이 6개월 내지 1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모르고 뒤늦게 고소를 결심했을 경우 고소를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가해자에 대한 온당한 응징이 좌절됨으로써 피해자는 성폭력의 고통을 훌훌 털어버리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해 성폭력의 고통에서 장기간 헤어날 수 없게

될 때 이것은 중증의 2차 피해라고 볼 수 있다.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는 법적 정보 및 형사 사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신의 요구가 현실성 있는지 검토하기보다는 원하는 지원 방법을 찾아 상담소를 순례하다가 여기저기서 취합한 다양한 정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시도를 한다. 많은 경우 고소장 대서, 공증, 녹취록 작성, 진단서 발급, 치료 및 증거 채취의 비용에 대한 우려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사건 처리 절차를 스스로 이끌어 가야한다는 부담감과 여러 관련 기관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원 체계의 부재로 고소 의지가 좌절되는 것 역시 2차 피해라 할 수 있다.

2차 피해로 볼 수는 없으나 지원 체계를 필요로 한다고 보이는 고소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 본인의 112 신고 시 적절한 조치를 못 받음.
- 고소절차를 모를 때나 가해자 신원 미상일 때 신고에서의 어려움.
- 피해유형에 따라 친고죄, 비친고죄의 여부를 달리하는데 여성상담실, 조사계, 여성청소년계, 강력계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여 고소방법과 절차에 미숙함.
- 가해자 영향력 때문에 관할 경찰서로 고소하고 싶지 않음.
- 관할의 문제(피해지역 관할, 가해자 거주지 관할, 피해자 거주지 관할, 검찰청에 직접 고소)로 사안이 오감.
- 고소장 작성의 어려움, 증거 확보의 어려움

그 밖에 고소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목격자가 112 신고를 하여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정도가 있다.

고소인 (피해자) 조사과정에서의 어려움과 2차 피해

피해자는 형사사법 절차를 선택한 이상 목격자 증언이나 진술서와 같은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증인들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물리적, 심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부인이나 화간 또는 무고 주장에 맞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또한 가해자 측의 변호사의 수사 열람 기록으로 피해자의 개인적인 인적 사항이 노출되는 부담 또한 져야 한다. 합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형사사법 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물리적, 심적 부담만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러한 어려움 외에도 조사관의 고정 관념적 태도나 가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사법처리 과정과 제도 등으로 인해 부당한 2차 피해를 입는다.

상당에서 드러난 조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내용을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조사공간의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데서 오는 심적 부담
- 조사관의 성별,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 이해 및 배려가 부족함
- 조사시간의 배려, 장시간 신문, 반복질문, 유도성 질문, 피해자 유책성 질문, 위압적·위협적 질문, 주변 조사관의 참견 및 분위기 조성이 고통스러움
-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불허, 부모 입회 거부, 조서작성 후 확인 날인과정의 실랑이
- 대질신문에서 위협을 느낌, 야유와 공갈, 수사관의 편파적 비호
- 48시간 이후 불구속수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의 피해자 참여 제외
- 군인이 가해자일 때 헌병대 이송, 군사재판 회부 후의 피해자 측 접근 불편, 부대 관련자의 사건축소, 은폐, 감형으로 인한 피해자의 좌절.
- 정신장애, 정신질환자가 가해자일 때 방면됨으로써 받게 되는 불안, 공포.

- 형사 미성년자가 가해자일 때 고소를 안 받아주거나 불구속 수사
- 경찰의 미온적 태도, 수사 지연과 합의 중용, 수사 지연에 대한 설명의 부재.
- 어린이, 청소년 피해에서 사주했다는 의심을 받는, 피해자 부모의 심적 고통
- 꽃뱀, 합의금 노리는 자로 오해받음.
-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시 좌절감
- 검찰송치 결과통지서 내용파악의 어려움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형사 절차에서 보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권리, 성폭력 사건의 효과적인 처리 절차나 실무상의 관행 등을 잘 모르고 있다. 이로 인해 선부르게 합의를 보아 이후에 더 이상의 권리 주장이나 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기도 하며 역으로 가해자에게 현실적이지 않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후의 사법 과정에서 도리어 피해자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을 만들기도 한다. 또한 설사 피해자의 권리를 알고 있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없어서 곤란을 겪기도 한다.

(2) 검찰수사 과정

앞의 <표 20>에 의하면 검찰수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2001년 16.7%, 2002년 15.0%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결과와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검찰 송치 이후 고소사건의 진행과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 담당 검사가 피해자 비난과 가해자 옹호 논리로 일관할 경우, 검사를 기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십상이며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검사 기피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한다. 가해자 불기소의 이유도 애를 써서 확인해야 하며 항고, 재항고 시 항고 이유서 작성과 증거 보완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어

려움은 적지 않으나 여기에 더해 피해자는 조사관이나 검사의 성폭력 통념에 기반한 수사 태도로 인해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사건 축소 조작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2차 피해를 경험한다.

- 수사 검사와 검찰청 조사관의 태도(피해자 비난, 고압적, 무시, 합의 종용, 무고의 위협)
- 위압적인 조사실 환경
- 반복 출두, 장시간 조사, 가해자 대면, 거짓말탐지기 강요
- 무고, 명예훼손, 폭행, 간통, 공갈협박 등으로 피 고소 또는 피소 위협
- 수사의 지연
- 기소 후의 출입기자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 등의 법적 고통
- 피해자와의 의논이나 어떤 통보도 없이 검사가 피의자를 훈방하고 피해자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의 심적 좌절.

성범죄 사건의 사법처리 내용도 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렵게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구속되고, 기소되어 재판 과정을 통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국가가 피해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되며 사회적으로는 성범죄 예방의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아래의 분석에서 보여주듯이 강간 범죄는 가벼운 처벌로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7년도와 2002년도의 성 범죄자 기소율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성 범죄자 처분 결과 (1997 / 2002)

<단위 : 건, %>

		1997		2002		
기소	구공판	구속	2,807	43.0%	3,211	35.8%
		불구속	345	5.3%	668	7.4%
	구약식		144	2.2%	728	8.1%
	소계		3,296	50.5%	4,607	51.4%
소년부 송치		86	1.3%	281	3.1%	
불기소	기소유예		122	1.9%	288	3.2%
	기소중지		411	6.3%	341	3.8%
	참고인 중지		108	1.7%	96	1.1%
	혐의 없음		501	7.7%	683	7.6%
	죄가 안됨		6	0.1%	20	0.2%
	공소권 없음		2,002	30.6%	2,651	29.6%
	소계		3,150	48.2%	4,079	45.5%
총계		6,532	100.0%	8,969	100.0%	

출처 : 범죄분석

* 2002년 가정보호 송치 2건

1997년 고소된 성폭력범죄의 검찰 기소율이 50.5%이고 구속 구공판이 43%(기소 중 85.2%)인 점은 성폭력 범죄가 흉악 강력 범죄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사건의 30.6%가 공소권 없음으로 나타난 것은 피해자가 법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소했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점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1997년도에 비하여 2002년도의 기소율은 51.4%로 약간 상향되었으나 구속 구공판은 35.8%(기소 중 65.7%)로 줄어든 점이 특기할 만하다. 전체 범죄 기소율이 2000년 50.6%, 2001년 56.3%, 2002년도 58.1%로 상승되고 있는 점, 이중 구속 구공

판 비율이 2000년 4.1%, 2001년 4.0%, 2002년 3.9%로 줄어드는 점으로 보아 구속 적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는 전체적인 추세와 맞물린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반면에 구약식 기소율이 현격히 증가하고 있어 강간 범죄가 가벼운 처벌로 그치고 만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소년부 송치가 86건(1.3%)에서 281건(8.1%)으로 증가함은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간사건의 경우, 강간을 범죄로 인식하면서도 일반 성관계와 동일시하는 이중적 태도는 형사사법 실무자들에서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³⁸⁾. 특히 친밀도가 높은 면식범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의 범죄와는 달리, 가히 일상의 영역에서 감수되어질 만한 것으로까지 여길 만큼 경시하게 된다. 또한 침해된 성적 자유의사라는 것도 사인 간에 문제로 여김에 따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간섭하기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사에 의해 강간죄가 일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낫다는 법적 사고에 이르게 되는 듯 하다. 이러한 이유로 기소에 이르는 비율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기소에 이르러 공판이 진행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유도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 및 항고·재항고, 헌법소원 등이 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은 불가능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없이는 이를 실행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3) 공판 과정

본 연구 대상의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 사례분석에 의하면 공판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2001년 7.8%, 2002년 11.7%이다. 공판과정을 1심, 2심, 3심으로 구분해 보면 1심에서 가장 많은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2심, 3심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38) 박선미, 앞의 논문, 1989, 295면; 정현미 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109-110면.

<표 22> 공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심	16	88.9	25	80.6
2심	2	11.1	4	12.9
3심	.	.	2	6.5
계	18	100	31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1) 공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개괄

피해자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공개 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피고인측과의 대면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재판에 임하게 된다. 가해자의 합의 종용에 시달리기도 하며, 진정서, 탄원서, 의견서 작성 요령 및 제출 시기를 몰라, 피해자 자신을 위한 조치를 효율적으로 구사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안감을 안고 재판에 임하는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2차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 주소와 생년월일을 큰소리로 말하기 등 증인 신변보호가 소홀함, 가해자 퇴정 요구하여도 증인석에 나온 후 의향을 묻고 퇴정시킴,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요청했으나 모가 흥분상태라고 퇴정시킴
- 재판 기록의 열람권이 없어 재판의 진행과정을 파악할 수 없음.
- 재판정 외 대기 장소 부족
-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의 적대적인 질문, 비슷한 내용으로 혼돈시키는 반복

질문,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

- 1심 선고 전의 합의시도로 괴롭힘. 합의 시도로 재판 연기 지연
-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달라서 사건파악이 미흡하고, 피고인 변호사의 공격을 막아주지 않음, 공판검사가 공판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음
- 공판 검사의 성향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 배려가 다르고 판사의 성향에 따라 법 적용에 차이가 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미약한 형량이나 공소기각·무죄가 가해자에게 선고되어 이로 인해 봉착하는 당혹감과 절망감
- 법정출석·증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업무 중단으로 수입 감소·경제적 손실
- 불구속 재판 중인 가해자와 법정에서 마주침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여러 2차 피해 유형 중에서 특히 피해자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공판업무 전담검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 부적절한 증인신문 및 공판 전담검사의 문제점

성폭력 범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서 그 양상이 사회성을 띠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상의 실제에서는 고도로 개인적인 법익에 관한 것으로 다루어지며 그에 따라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공격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폭력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어를 한다. ① '내가 안 했다'(오인), ② '성폭력은 없었다'(거짓말), ③ '내가 했지만 그녀도 동의했다'(동의), ④ '이 증인은 신뢰도가 낮다'(신용성 없음).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품행, 평판, 이전 직업, 생활방식, 옷차림, 성관계 이력 등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신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두려움 때문에 이에 답을 하면서 2차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하여 성폭력 범죄의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는 위로받고 지지받거나 진술기회를 보장받기보다는 허위고소, 허위진술의 의심을 받거나 범죄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추궁을 받는다. 박선미³⁹⁾는 강간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 신문의 초점을 ① 피해자의 유발, ② 피해자의 반항, ③ 피해자의 고소제기과정, ④ 피해자의 평판, ⑤ 피해자의 성력, ⑥ 피고인의 성기삽입 시 피해자의 경험 등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강간 범죄가 있었는지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2차적인 가해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2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소 등 법적 대응을 꺼리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 1999년에 검찰총장이 내린 지침 등에 의하면 검사의 적극적 의제거나 재판장의 제지 등으로 부적절한 증인신문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나, 현장에서 지침이나 법규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소송당사자와 지원자들을 통해 많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의 의사가 명백하게 침해되었음을 드러내야 하는 성폭력 범죄에서는 그 의사 침해를 증명해 줄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필요로 한다. 이 정황증거들(육체적 상처나 찢어진 의복, 반항흔적, 목격자 진술)이 증명력을 확보하도록 제시(형사소송법 제294조)하는 소송상 행위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피고인과의 공방을 통해 형사소송을 형성해 가는 소송상 당사자로서 검사의 역할에 포함된다.

또한 검사는 심리의 대상에 관한 논의가 흐트러질 때,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법 제296조), 불필요한 변론제한 등의 재판장 소송지휘권에 관하여 그 미비에

39) 박선미, 앞의 논문, 1989.

대한 이의(법 제304조)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공소사실에 관한 명확한 심리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공소유지에 관해 수사검사가 피해자와 협력하여 직접 해당사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공판절차 진행시 원고 측의 소송진행은 이른바 ‘공판업무 전담 검사’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⁴⁰⁾. 공판검사는 사건을 수사담당 검사로부터 인계를 받은 후, 공소사실 입증 및 공소유지, 그밖에 공판진행시에 필요한 역할만을 맡게 되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 공판관여를 위하여 공판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 앞서 준비하는 일은 수사검사가 작성한 공소장 및 공판카드, 증거목록에 의거하여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자백여부 등을 검토하는 정도인데, 그것마저도 검토하지 못하고 입정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한다⁴¹⁾.

그 이후에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간의 공판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기인하여, 특히 양형 정황의 입증을 위한 활동으로서 필요한 수사과정상의 정황 증거 자료 수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반대로 피고인측의 정황자료로서 피해자의 책임으로 주장되는 바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못하는 실태가 김종구 글에서 적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간 공방이 중요한 성폭력 사건 소송에서,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은 검사의 법정 활동은 소극적으로 되기 쉽다.

전반적인 검찰개혁 차원에서 수사 및 공판업무수행 인력의 확충이 성폭력 사건 소송의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예상되는 일이다. 검사의 업무량을 줄임으로써 수사과정 상 피해자와의 협력이 시도될 수 있고, 공소유지에 관해 수사검사가 직접 해당사건 공판을 진행할 여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 및 항고·재항고, 헌법소원 등이 있다. 그러나 정작 검사의 공판업무가 미진한 경우에는 특별한 대응 방법이 없고, 무죄가 선고된 경우나 고소의 취하를 종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검사에 의한

40) 김종구, “형사사건처리절차의 현실과 개선방안: 검찰운용을 중심으로”, 동국대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00, 122면.

41) 조한욱, “공판관여 준비실태와 개선방안”, 「검찰세미나자료집 8권」, 법무연수원, 25면.

항소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단순한 민원으로서 진정을 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시정의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3) 상소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피해자에게 상소심에서 가장 큰 2차 피해는 피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1심(또는 2심) 선고 형량의 감형 및 무죄 선고로 인한 충격이다. 이외에 무죄인 선고가 내려진 경우만 검사가 상소하는 것,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소를 사정해야 하는 힘겨움, 상소심 절차에의 소외감 등을 겪게 된다. 또한 증인으로 재소환시 피고인 변호사와 재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앞서 지적한 문제점이 다시 드러나게 되며, 주소 변경이나 연락 미비 또는 검사의 임의 판단으로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 피해자 변호의 기회를 상실하고 재판부 성향에 따라 재판이 지연되는 불편함과 2차 피해를 겪게 되기도 한다.

3심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정서 제출 방법이나 유죄 원심 파기 후의 고등법원 재판 대처 방법을 몰라서 애를 먹으며, 또한 진행에 대한 정보 부족과 서류심사에서 고소인 참여 기회 부족으로 자기 자신의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으로부터 소외를 경험한다. 2심 공판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원심 확정 후 어찌할 수 없음, 허탈과 무력감을 겪는다.

제 4 장 형사사법 절차상 2차 피해 발생의 맥락

국가의 공적 절차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있는 그대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범죄자가 공정한 처벌을 받는 것은, 기존의 사법적 정의구현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피해자 치유라는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의미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해자는 피해를 부정하고 애써 은폐함에 따라 그것을 계속하여 반추하게 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가 고소라는 절차를 성폭력으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의 하나로 선택했을 때,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의 가해자 처벌은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근대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피해자 입장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미하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한낱 주변적인 지위에 서서, 증거의 대상이 될 뿐이며 재판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왔다.⁴²⁾ 그리고 피해자의 이러한 주변적 위치는 바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한다. 피해자가 이와 같이 주변적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첫번째로는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과 태도에서 비롯되며, 두번째로는 법·제도상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두 개의 주요한 맥락과 이에 따른 2차 피해의 양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객관성에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탈근대적 사회과학과 여성주의에서 객관성은 이제까지는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없었고 그 체험이 은폐되어 왔던 주변인, 억압받은 사람

42)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 보호: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 연구』 제3호, 1994, 4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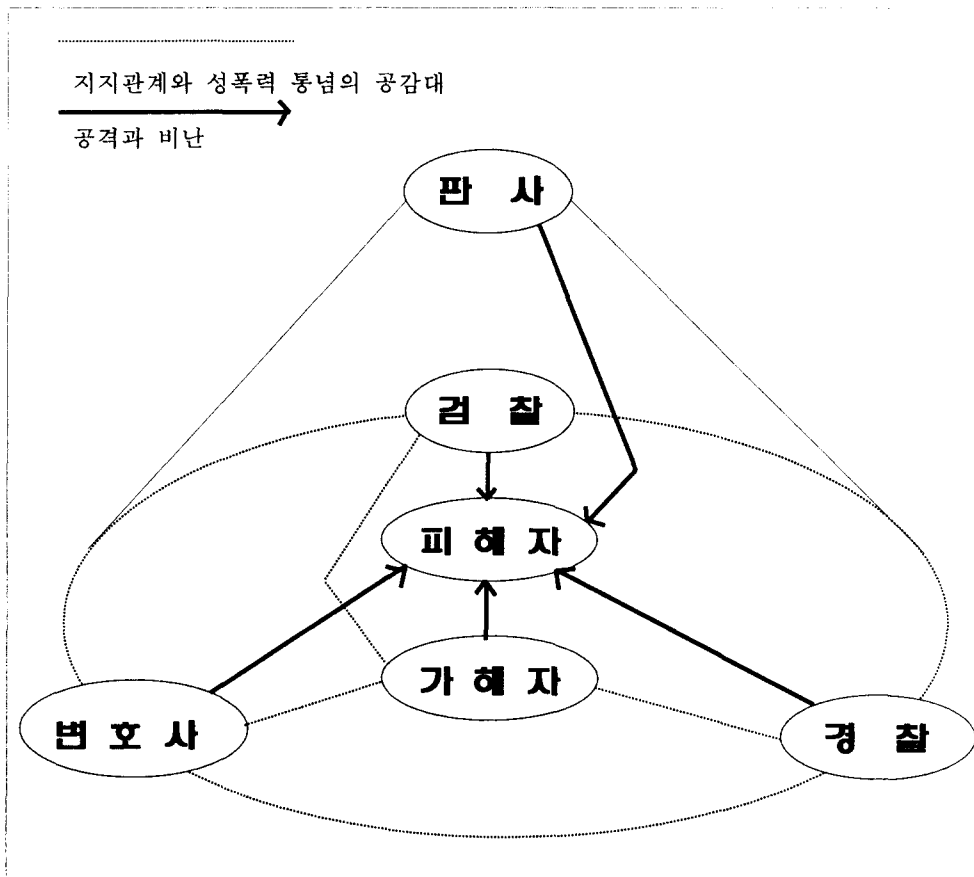
들의 소리를 들리게 하고 그들의 체험을 드러내는 데서 담보된다고 해석된다.⁴³⁾ 따라서 2차 피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 2차 피해의 당사자들의 체험과 진술은 일차적인 자료가 된다. 즉 피해자들이 실제 고소과정에서 겪는 문제와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대안을 마련할 때 비로소 2차 피해의 실질적인 축소와 근절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상담에 나타난 사례에 대한 충실한 분석을 통해 2차 피해의 발생 맥락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다음 장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초 작업이 된다.

1.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과 태도에 기인한 2차 피해

성폭력에 대한 수사담당자의 통념은 성폭력 사건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로, 가해자가 보호받는 자로 역전되는 양상을 보여줄 만큼 완고하고 강한 수사담당자의 성차별적 태도로 작용한다. 성폭력에 대한 수사담당자의 통념은 현실의 형사사법처리 과정에서 성폭력 유무와 정도를 판단하는 거의 절대적 잣대가 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2차 피해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시급하다. 아래의 그림은 경찰, 검찰, 가해자, 피의자 변호사의 공격에 둘러싸여 있는 피해자와 이와 반대로 이들의 두터운 지지 속에 둘러싸여 있는 가해자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피해자 공격과 피의자 지지의 환경 속에서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가 보호받는 피해자가 되는 현실 전도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도가 가능해지는 것은 다름 아닌,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에 의해서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통념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이러한 통념들이 어떻게 2차 피해를 낳게 되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43) M.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역), 나남 출판, 1994; S. 하딩, 『페미니즘과 과학』, 이재경/박혜경(공)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그림 1>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 속에서 전도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1) 성폭력의 사적 문제화

성폭력에 대한 수사·공판 담당자들에게 뿌리깊게 깔려 있는 성폭력에 대한 기본 통념은 성폭력은 당사자들의 사적 문제라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2000년 경찰청에서 성범죄의 수사점수를 1점에서 3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력 범

죄인 강간의 경우도 2002년도 기소율이 51.4%, 구속 구공판은 35.8%, 1심 판결 집행유예율이 63.5%로 나타났다⁴⁴⁾. 이것은 수사담당자들이 성폭력을 사적 문제로 보는 통념을 여전히 일반적으로 내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여성계는 피해자 인권 보호의 입장에서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며 폭력의 문제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여성계의 이러한 주장은 일선 경찰·검찰계에까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여전히 성폭력은 개인적 영역의 문제이고 수사담당자들로서는 신경쓰고 싶지 않은 사건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폭력을 사적 문제로 보는 것은 성폭력을 법적 사건화하는 것을 방해한다. 즉 수사담당자들은 성추행, 강간미수는 물론이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상해가 수반된 성폭력에 대해서도 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당사자들의 문제로 치부한다. 당사자들의 사적 문제라는 측면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아예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하지 않거나(사례 4-1, 2, 3, 5), 고소를 하더라도 미온적 수사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결국은 수사를 중단시킨다(사례 4-6, 7). 특히 추행이나 가해자 미상인 경우 수사 담당자들은 거의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사례 4-8, 9). 심지어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조차 가해자가 성폭력을 인정했으면 되었지 굳이 고소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태도를 보인다(사례 4-4).

정조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우세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의지를 필요로 한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기대하며 법에 호소를 하나, 아예 고소가 접수되지 않거나 수사관의 비협조로 수사가 제대로 진전되지도 않고 무혐의 처리되거나 중단될 때 피해자는

44)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3, 301면 참조

계	기소						불기소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소계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종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공소보류
		구속	불구속											
8,969	4,607	3,211	668	728	281	2	4,079	288	341	96	683	20	2,651	-

수사 담당자들에게 성폭력 피해로 인한 2차 피해를 당하는 셈이 된다.

<사례 4-1> 초등학교 교사가 수영장에서 남아를 성추행하여 수영장 관리자가 신고한 사례이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몇 차례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시도했으나 받아주지 않아,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1심 재판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 병원에 찾아가 진단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가해자 측에서 공갈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경찰이 “끈질기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있느냐”, “합의금을 더 올려 받기 위해 진행하는 게 아니냐” 는 식의 얘기를 하여 의지가 꺾인다고 억울하고 분함을 호소했다.

<사례 4-2> 경찰서에 고소장 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고, 가해자가 출장 가서 없다 하며,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았다.

<사례 4-3> 동네사람이 어린이를 여러 번 성폭행했다. 이웃 사람들이 가해자의 뒤를 밟아 관리실에서 성추행하는 장면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 정도론 구속할 수 없다” 며 풀어주었다.

<사례 4-4> 강간 피해여성이 무료법률상담 받는데 상담변호사가 “뭘 위해 고소하느냐, 바라는 게 무엇이나” 등 돈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사례이다.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자 “가해자가 그 정도 했으면 되었지 그런 것 가지고 고소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가 드러나면 수치스럽지 않겠냐?” 고 말했다.

<사례 4-5> 여아의 강간피해사실을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 수사 못하겠다, 우리는 살인사건 하나 더 해결하는 게 좋다. 이런 문제로 신경 쓰게 하지 말라, 거짓 진술한 거 아니냐? 무고죄로 잡아넣겠다” 고 협박하여 피해 사실을 부인하도록 했다.

<사례 4-6> 피부 관리 여직원이 남자고객으로부터 성추행 당해 남자친구도 사실을 알고 함께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면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라” 며 회피하였다.

<사례 4-7> 25세 여성이 같은 직장 영업사원으로부터 음란전화 피해로 고소했으나, 경찰서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합의를 중용하였다.

<사례 4-8>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신고했는데 4명의 경찰이 바로 왔으나, “미친개에게 물렸다고 생각하라” 고 하며, “남자 친구도 있는데 크게 생각하면 사이만 나빠진다” 고 하였다.

<사례 4-9> 15세 여학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가해자를 잡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이틀만에 가해자는 아무 설명없이 풀려났다. 이에 항의 전화를 하자 경미한 사건이고, 가해자의 신원이 분명하고, 가해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돌려보냈다고 하였다.

(2) 피해자 유발론

수사담당자에게서 나타나는 두번째 통념은 ‘성폭력 유발의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 는 것이다. 이 통념에 따라 이들은 가해자의 범죄를 확정하는 수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어떤 행태가 성폭력을 유발시켰는가를 찾는데 수사를 집중한다. 바로 여기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전도(顛倒)가 이루어진다. 즉 이러한 통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저항 여부(사례 4-12, 14), 구조요청 여부, 옷차림과 음주 여부(사례 4-11, 14, 17, 18), 피해자 여성의 부도덕한 행실과 자신을 방어하지 못함에 대한 비난(사례 4-15, 16,

22), 이전의 성력, 직업(사례 4-14), 피해당시의 행위를 폭력적으로 묘사할 것을 강요하는(사례 4-16) 식으로 공격적인 질문을한다. 그리고 조사를 빙자한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공격과 비난조의 질문은 다른 수사관과 범죄자들이 드나드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의한 1차 피해 못지 않은 성적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이와 같이 성폭력을 피해자가 유발했다는 통념에 따른 수사관의 피해자 수사의 지는 아래의 사례들(사례 4-10~25)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임신, 낙태를 겪는 등(사례 4-10, 21)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목격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공고하다. 심지어 칼로 위협받으면서 당한 특수강간의 경우와 같이 심각한 성폭력조차도 수사관은 비아냥거리 정도의 사소한 일로 취급하기도 한다(사례 4-25). 또한 피해자 유발론은 성폭력 피해자를 그 부모가 가정교육을 잘못 시킨 결과라는 논리로 이어지면서 피해자 부모에 대한 조롱과 비난, 자식을 잘못 키운 책임 전가로 이어진다. 부모가 술집을 하는 것이 성폭력피해를 유발했음을 지지하는 간접증거로도 채택된다(사례 4-13). 이와 같은 방식으로 2차 피해는 피해자 가족에게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범죄로 인한 고통 이외의 또 다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성범죄수사및공판시피해자보호에관한지침’ (1999년)에서는 수사 및 재판담당자의 기본자세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진지하면서도 정중한 태도로 수사 및 공판에 임함으로써 피해자가 모욕이나 조롱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엄정 중립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당사자들로부터 수사 및 공소유지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사상 유의 사항 중 조사방법에서도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

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해당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격이나 성범죄를 당할 당시의 기분, 가해자의 사정여부 등 피해자가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하지 않는 질문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삼갈 것
-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노골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을 하지 말 것
- 수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범행동기를 유발했다는 추궁을 자제할 것

이러한 지침이 1999년도에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2002년도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수사 관행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장 수사담당자의 통념은 상부에서 문서로 시달되는 지침 정도로는 변화할 수 없는 뿌리깊고 완고한 의식임을 말해준다.

최근에는 수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이 특별인권교육을 받는 조치가 내려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사관들의 통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 개인의 또 다른 번거로움과 의지를 요하는 사후 약방문식의 이러한 조치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수사현장의 실태를 점검하여 반영하는 분석 평가를 토대로 인식의 변화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사례 4-10> 17세 여고 2학년생이 채팅으로 알게 된 고교생을 만나러 나가보니 27세의 청년이 친구와 같이 나왔다. 끌려가 한 명에게 강간을 당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15분 후쯤 그 친구가 들어와 강간하였다. 이후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끌고 가 4차례 강간했다. 딸이 낫을 잃고 정신이 나간 듯이 거리를 헤매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고소를 한 뒤 학교를 휴학시키고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게 하였다. 수사관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변호사에게도 피해자의 학교성적, 용모를 지적하며 불량학생으로 표현하고 무혐의 소견으로 검찰에 송치하

겠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되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완력과 위협에 의한 강간임을 주장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다.

<사례 4-11> 경찰서 강력반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는 중 성행위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물어보아 사건과 상관없는 것 같다고 하면 “답하기나 하라”고 했다. 성폭행과 폭행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이 없는 피해자에게 “술 먹었어? 술 취했나? 약 먹었나? 동공이 풀렸네”라고 하고, 가해자를 불러 “약 먹었어? 술 먹었어?”라고 물으니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자 “근데 왜 이리 횡설수설해?”라고 했다. 가해자가 번복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별 제재가 없이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피해자에게는 “옷을 벗었어? 벗겼어? 어떻게 벗겼어? 똑바로 말해. 무고죄로 넣겠다”고 소리치르며 가해자에게는 “무슨 성폭행이야!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해 무고죄로 넣으면 돼, 억울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돼, 또 회사에 간 거 본 사람 있지? 그러면 업무방해죄로 넣으면 돼”라고 말했다. 다음날 진술 시 성폭력 피해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고 힘이 없어서 어머니와 동석을 요구했는데 동석하면 진술 못하게 한다고 거절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진술했는데 바로 옆에 어떤 남자가 앉아서 진술하고 있어서 성폭력부분을 구체적으로 물어봐 수치심을 느꼈다. 조서에 날짜와 시간이 진술한 것과 다르게 써있어 다르다고 하니 이 정도 차이나는 것은 괜찮다고 하였다. 또 전에 진술하러 왔었는데 안 해주고서는 진술거부라고 쓰여 있었다. 전에 진술한 것과 너무 달라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하자 진술서를 다 뽑았는데 수정하라는 거라며 화를 내며 빨리 도장이나 찍고 다음에 또 진술하라고 하며 진술서를 집어던지며 일어서 나가버렸다.

<사례 4-12> 대학 입학 예정인 19세 피해자가 인터넷 동호인 모임에 나갔다가 그 날 알게된 사람(사기 절도죄로 집행유예중임)에게 강간을 당했다. 병원에서 증거채취하고 처녀막 파열, 질 파열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소했다. 가해자가 중간에 합의하자는 전화가 여러 차례 와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면 합의하고 종결하겠다 하였더니 돈을 노리고 고소한 거라고 주장했다. 처음 조사 받으러 갔을 때는 검사와 계장이 고소장 내용을 보고 이해도 하고 친구를 동석하게도 하는 등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두번째 조사할 때부터는 완전히 냉랭해져서는 선배가 동석하려니까 나가라고 하더니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였다. “차 문 잠겨있으면 열면 되지 바보냐 왜 때리지도 못했냐. 소리치지 못했냐? 네가 원하여 스스로 옷을 벗지 않았냐”고 다그치며 피해자 잘못으로 몰아갔다. 거짓말탐지기를 해보라고 하여 하겠다고 하니 “거짓말탐지기해서 너 거짓말로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나”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도 하였다. 가족들이랑 스키장에 가다가 갑자기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들이랑 어떻게 스키장에 가냐?” 고도 했다. “합의금 그 큰돈을 미성년자가 뭐할 거냐” 고 하면서 집에서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계속 부모님에게 알리라고 하더니 결국 집에 전화하였다.

<사례 4-13> 대학 졸업 후 입사한지 1주일 만에 회사 사장에게 강간 피해를 입고 경찰서에 고소하고 진단서도 제출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계장이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며 엄마가 술집 경영하는 것을 들추어내며 꽃병 취급을 했다.

<사례 4-14> 20대 여성이 아는 사람에게 강간치상을 당하여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 검찰수사 중 “왜 소리 지르지 않았느냐, 술집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고?” 라는 식으로 다그쳐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꼈다.

<사례 4-15> 20대 여성이 친구와 밤늦게 길을 가다 남자 2명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 경찰에 고소했는데 가해자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경찰은 “늦은 시간에 왜 거기에 있었느냐” 고 오히려 피해자를 추궁하였다.

<사례 4-16> 강간당하고 협박으로 금품갈취까지 당한 30대 여성이 고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대학까지 나온 여자가 자기 방어도 못하고 판단도 못했냐” 고 호통을 치며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

<사례 4-17> 20대 여성이 채팅으로 만난 남자 집에 놀러갔다가 술 취한 상태에서 강간당했다. 고소하자 경찰이 “그 집에 간 것은 그런 생각하고 간 거지, 술은 강제로 먹이냐 스스로 먹은 거지”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다.

<사례 4-18> 30대 중반 여성이 헬스클럽에서 만난 사람에게 술이 취해 강간당했다.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경찰이 “강하게 저항을 하지 않았으니 강간이 아니다”라고 했다.

<사례 4-19> 20대 여성이 직장동료가 강간 후 가족에게 알린다며 금품을 갈취하고 구타를 하여 이에 고소를 하자, 경찰 조사시 피해 당시의 행위에 대해 적나라하게 묻고, “답하거나 해라,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르겠다”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

<사례 4-20> 20대 여성이 채팅으로 만난 사람이랑 술을 마셨다. 30분만 자면 깨니까 쉬었다가 바래다주겠다고 하였다. 그냥 좀 쉬자 하더니 덤벼들어 소리 지르고 반항하였으나 강간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고소하자 경찰이 피해자 행실을 비난하였다.

<사례 4-21> 18세 여고생이 강간피해로 임신하여 낙태 후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고 검찰에서 화간이라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하였다. 고소를 취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무고를 검토한다며 부에게, “자기 딸을 책망해야지, 어디 와서 그러느냐” 고 하였다.

<사례 4-22> 20대 여성이 직장동료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은 상대방이 폭력을 행하지 않았으며 별일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피해자가 불러들였다” 고 하여 상처받았다.

<사례 4-23> 20대 여성이 강간미수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생각이 있었으니 따라간 거 아니었냐, 그 시간대에 남자들과 술 먹은 것 보면 그런 여자다” 라고 피해자를 비난하였다.

<사례 4-24> 20대 여성이 채팅으로 만난 남자 2인에게 강간과 강간 미수를 당하여 고소하였다. 담당 검사 및 수사관이 “누구랑 몇 번했냐, 성경험이 많다면서, 아무에게나 다리 벌리냐, 돈 노리는 것 아닌가” 등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관계를 물어보아 수치심을 주었다.

<사례 4-25> 고3 여학생이 특수강간(칼로 위협) 피해를 당하여 정액을 채취하

고 112로 신고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경찰이 “성폭력 이래” 라고 말하며 주위사람과 희희덕거려 심한 모욕감과 함께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다.

(3) 가해자 옹호론

‘대부분의 성폭력은 동의된 성관계’ 라는 통념은 바로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고소당했다’ 라는 통념으로 이어진다. ‘화간이다’, ‘애인 사이다’ 라는 식으로 피해자와의 친분을 드러내는 피의자의 말 한마디면 수사담당자의 ‘억울한 피의자’ 라는 통념은 진실로 둔갑된다. 심지어 수사담당자는 강간은 젊은 건강한 남자의 애정 표현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강간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설득까지 한다(사례 4-35).

형사소송법은 대부분 피고소인이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입장에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의 이러한 특성과 수사담당자의 ‘억울한 피의자’ 라는 통념이 결합되면서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에 따르는 편파적이고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된다.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은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일방적인 수사 태도를 견지하고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장시간 반복 질문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지치게 하고, 피해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가해자와 대면시켜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며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한다(사례4-30, 31, 34, 36~38). 피의자가 입원 등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는 경우, 수사담당자가 피해자를 찾아와 조사하는 과정 없이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조사가 완결되기도 한다.

한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에 따르는 수사담당자들의 편파적 수사는 피해자에 대한 강압적 수사 태도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과정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강압은 앞의 사례들과 뒤의 사례들에서 일관되게 보여지듯이 무고죄 협박이다.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수사관은 합의에 대한 안내는 해줄 수 있지

만 직접 관여하는 것은 가해자 측과 결탁하거나 그 입장을 변호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수사관에 대하여 불신감을 갖게 하고 있다. 이외에 수사담당자들이 피해자를 간통자, 상습적 성매매자나 꽃뱅, 정신병자로 모는 태도도 법률적,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온다(사례 4-28, 29). 이러한 강압적 수사과정은 피해자 스스로 고소를 포기하게 하거나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지고 편파적 수사는 매우 노골적으로 가해자를 변호하는 행태로까지 발전한다. 피해자의 고소가 아예 접수조차 되지 않기도 하며, 가해자가 경찰계 종사자이거나 아는 경찰계 인사가 있는 경우, 피의자 부모가 사회 유력 인사인 경우 고소취하가 종용된다. 편파적 수사는 피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진술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진술서 조작이라는 범법적 행태로까지 진전된다. 또한 피해자가 확보한 증거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 폐기 처분시킨 뒤에 합의를 종용하는 식으로 매우 적극적인 고의성을 갖고 사건을 축소·조작하는 심각한 행태도 관찰된다(사례 4-30, 32~35).

이러한 수사 과정 자체와 강제된 합의 또는 가해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감내해야 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2차 피해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 변호의 의혹과 피해의식을 가중시키고 해당 조사관 뿐 아니라 법체계까지 불신하게 된다.

1999년도 대검찰청 ‘성범죄수사 및 공판관여 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지침’은 수사상 유의사항 중 조사방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원조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하고 평온한 태도를 유지할 것’, ‘특별한 이유 없이 합의 또는 고소취소를 종용함으로써 특정당사자를 변호한다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할 것’, ‘모든 조사와 신문은 분리하여 하고 가해자의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상황은 위의 분석과 이하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 사실을 청취하는 조사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강압적인 수사를 받고 가해자는 변호받는 듯한 수사·공판 환경이 되고 있을 뿐이다.

<사례 4-26> 고1 여학생이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지하철 입구에 앉아 있다가 모르는 남자에게 여관으로 끌려갔는데 강간을 시도하여 반항하다 뛰쳐나와 112에 신고해서 체포했다. 강간미수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검사가 피해자를 억박지르고 네가 돈 때문에 그랬다는 식으로 진술을 강요하여 겁이 많은 피해자가 도장을 찍고 나와 억울해서 소리를 지르고 울었다. 어머니가 들어가 보니 진술내용이 피해사실과 달리 적혀있어 항의하니 검사가 “무고죄가 뭔 줄 아냐”라며 자식 잘 기르라고 모욕을 주었다. 가해자가 중간에 합의하자며 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와전되어 검사는 이를 가해자 편에서 주장한대로 돈 뜯어내려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오히려 모욕을 주었다.

<사례 4-27> 상사의 반복적인 성희롱에 대해 피해자 3명이 진정하자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다시 피해자들이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을 각 7~8시간 동안 신문한 후 상당부분 조작된 내용을 서명날인 요구했다.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강도상해범을 같은 공간에서 취조하면서 마구 구타하고 욕설을 퍼부었고 “내가 저런 새끼들 잡는 사람ियो, 내 저런 놈 많이 잡았오” 라고 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이게 무슨 성희롱이냐? 성희롱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빼 줄께, 계속 버티면 다른 피해자 1과 같이 처벌하겠다. 피해자 1이 하자고 하니까 그냥 휩쓸려 간 게 아닌가?” 라고 하며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가해자를 옆에 앉혀 놓고는 아니라는 쪽으로 집요하게 이끌어갔다. 조사 말미에는 웃음을 지으며 “강도한테는 피해자가 겁먹으라고 일부러 그랬다” 고 하면서 “나중에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진술했다고 하면 안 된다” 고 몇 번이고 다짐을 받았다. 이러한 편파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로 피해자는 악몽과 불안감으로 장기간 시달렸다. 피해자 2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형사들이 주위를 오가면서 조서를 들여다 보고는 “그건 피해자 2가 잘못했네, 이 사건은 올라가도 진다” 는 등등 한 마디씩하며 비웃었고, 피해자 2에게 성희롱의 정의를 묻는 방식으로 수치심이 들게 만들었다. 또한 “500만원씩 배상 받아 여행 가려고 한 것이 아니냐 성희롱이 아니라고 해도 불이익 당하지 않는다, 성희롱이라고 계속 우기면 명예훼손 피진정인에 추가하겠다” 고 하며 다른 피해자들과 사이를 이간질하는 언행을 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였다.

<사례 4-28> 20대 여성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 화장실에서 강간미수 피해를 당해 그 자리에서 일행을 붙잡아 신고하였다. 붙잡는 과정에서 잠시 몸싸움이 있었고 피해자와 피해자친구는 폭력으로 맞고소되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들이 모욕감

을 주었고 형사가 피해자를 꽃뱀이라 몰아세우고, 피해자가 그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괜찮다”고 하며 지장을 찍으라고 권했다.

<사례 4-29> 중학교를 중퇴한 17세 피해자가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어떤 아저씨가 차를 태워준다고 하여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한 후 2만원을 주면서 집에 가라고 하였다. 아이의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알고는 다시 전화가 와서 만났다가 또 강간당했다. 임신 5개월이 되어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고소하였다. 검사가 조사 중 “그전에 성관계 경험 있냐? 성병에 걸린 적이 있냐”는 질문을 하여 심한 수치감을 주었다. 가해자는 태아가 자기애인 줄 어떻게 아느냐고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2만원을 주었고 다시 만난 것으로 화간을 주장하며 상습적 청소년 성매매자로 몰아갔다. 산부인과 의사에게 태아의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자 의사가 검사의 의뢰서를 받아오라고 하였으나 검사는 아직 강간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니 써줄 수 없다고 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낙태의 기회를 놓쳐 출산을 하고 아이를 입양시켰다. 이일로 피해자는 정신과 입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게 되었다.

<사례 4-30> 고시 공부하러 절에 묵은 남자 대학생을 70대 주지가 밤에 성추행하여 고소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관할 경찰서장에게로 데리고 갔다. 가해자와 친분관계가 있었던 경찰서장이 피해자에게 강압으로 고소를 취하게 하였다.

<사례 4-31> 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일주일 후 고소하였다. 월급도 주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다. 사장은 회사를 퇴사한 것은 업무 미숙이라고 하며 공공유용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하면서, 둘이서 만나 해결하자고 계속 전화를 하였다. 사장은 2달만에 출두하여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담당형사가 같은 자리에 둘을 앉혀 놓고 성추행을 어떻게 당했는지 설명을 하면 “그런 자세로 그게 가능한가”라며 사장 편을 계속 들어주며 형사는 “뭐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고소를 계속 지속하고 있냐”며 “더 계속하면 고소인만 더 불리해진다”고 협박하며 자기가 이런 일을 맡게 되면 피곤해지니 합의를 하라고 자꾸 짜증을 내었다.

<사례 4-32> 강간으로 ** 남부경찰서에 신고해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다. **

지방경찰청으로부터 oo지청으로 사건이 이관된다는 업서를 받았다. 가해자는 **거주로 oo지청과는 연관 없었으나 가해자와 절친한 경찰관이 oo에 있어 가해자가 oo으로 거주 주소를 옮기고 그쪽으로 사건을 이관시켜 편파수사로 사건을 몰고 갔다.

<사례 4-33>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와 병원에 항의하고, 이어 경찰서 조사과에 병원 원장과 가해자를 고소하였다. 담당형사가 병원 측은 고소대상에서 제외시키라고 하여 병원 측은 빼고 고소장을 재작성하였다. 경찰에서 피해자를 피고소인 취급하고 정신병자로 몰아 무혐의 처리되었다.

<사례 4-34> 성추행으로 경찰서로 가 신고하여 진술 중 담당 경찰이 시의원인 가해자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는 가해자에게 그냥 나가라고 하였다.

<사례 4-35> 영업전무로 채용한 사람이 40대 여사장을 강간, 폭행했는데 알고 보니 전과 9범이었다. 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경찰고위층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큰소리하자 경찰이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각서를 받아줄 테니 취하하라고 피해자에게 종용하였다.

<사례 4-36> 20대 여성이 강간피해로 고소하였다. 이후에도 계속 스토킹을 당했으나, 가해자 아버지가 고위장성이라는 이유로 경찰과 검찰 조사관이 가해자를 비호했다. 특히 검찰 조사관은 노골적으로 가해자 편을 들고 대질심문 끝난 후인데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해자 전화 번호를 성폭력 이후에도 가지고 있었고 가해자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며 “돈보고 고소한 거 아니냐. 가해자는 당신 좋아한다. 건강한 남자가 그러는 거 가능하다” 고 하며 합의를 종용했다.

<사례 4-37> 30대 강간 피해여성이 진술시 검찰이 “여자가 헤퍼서 그랬다” 고 하면서 대답을 못하게 억박지르는 바람에 주눅 든 피해자는 잘못했다고 하고 나왔다.

<사례 4-38> 여고를 갓 졸업한 여성이 통신으로 만난 사람으로부터 강간 피해로 고소했다. 가해자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가 처음과 달리 태도를 바꾸고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 인줄 아느냐, 난 어려서 잘 모른다” 라고 하며 합의 종용하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라고 협박하였다.

<사례 4-39> 32세 나레이터 모델인데 연예계로 진출하도록 매니저를 해준 사람이 강간 뿐 아니라 포르노 영화도 찍게 하였다. 거부하면 폭행하여 고소했는데 12시간을 조사를 받고 지쳐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 경찰 수사 진술 내용이 차이가 난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4) 동의된 성관계론

피해자들이 수사공판과정에서 부딪치는 세번째 통념은 성폭력이 아니라 동의된 성관계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수사공판과정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것이 바로 화간으로 몰린다는 점이다. 강간은 현저히 저항을 불가능케 할 만한 폭력이 있었는가, 어떻게 저항하였는가를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평소에 알던 사람이라든가(사례 4-42, 45, 47, 48), 데이트 관계(사례 4-44, 46, 49), 채팅으로 만난 사람인 경우(사례 4-50) 그리고 폭력과 저항의 표시인 치상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된 성관계와의 뚜렷한 구별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인관계였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 성폭력 이전의 이러한 정황이 성폭력을 무조건 동의된 성관계로 보증해주는 것은 아닌데도, 수사담당관들의 통념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저항이 있었어도 아는 사람에 의한 성관계는 수사관들에 의해 동의된 성관계로 해석된다. 이러한 성폭력의 문제를 동의된 성관계라고 해석하는 통념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피해자화시키지 못하도록 더욱 더 친밀한 관계임을 표명하여 가해자가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뿐 아니라, 성폭력의 문제를 폭력의 문제로 문제화하지 못하고

또 다시 당사자간에 해결해야하는 사적인 문제로 환원시켜버린다(사례 4-43). 심지어 장기간 감금된 상태에서의 성폭력에 대해서도 상대가 유부남이면 간통으로 해석된다(사례 4-40, 41, 45).

강간 후 도망쳐 나오지 못했거나 구조 요청을 하지 못했거나 가해자가 자기 차로 피해자를 피해자 집에 내려놓아도 동의한 성관계로 해석된다. 지속적 성폭력은 그 피해가 아무리 막중하더라도 지속성 자체가 동의된 성관계의 증거로 해석된다. 피해자가 스스로 혼란스럽거나 공포감이나 비난받을 걱정으로 고민하느라, 성폭력 사건 시일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신고해도 이 신고의 지연성은 동의된 성관계의 근거로 해석된다.

성폭력은 대체로, 사실상 성폭력이기보다는 화간이라는 수사 담당자들의 통념은 피고소인이 강력히 화간을 주장하는 경우 수사관들이 피해자의 고소 의도를 의심하는 쪽으로 작용하여 합의를 종용하고, 피해자를 무고의 가능성으로 위협을 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는 화간을 강간으로 거짓 고소한 자로 몰려,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2차 피해를 당한다.

성폭력 여부를 피해자의 반항정도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거의 물리적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수사관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피해자들은 너무 놀라거나 당혹스러워서, 또는 저항을 함으로써 강간범을 화나게 만들거나 실질적인 상해나 죽음의 위협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두려워 저항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힘이나 위협이 없는 경우에도 큰 체구의 남자 몸짓에 압도되어 저항하지 못하기도 하고 공포 상태에서는 흥기가 아닌 것을 흥기로 속이는 가해자의 거짓말에 속아넘어가기도 한다. 또한 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할 수도 있다.⁴⁵⁾

구조 요청 여부를 성폭력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역시 저항을 기준으로

45) 법무연수원, 「아동 및 취약하거나 위협받고 있는 증인을 위한 지침」, 2003.

삼는 것과의 마찬가지로의 문제점을 갖는다. 피해자들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혹은 너무 놀라거나 창피해서 구조 요청을 못하기 십상이다. 설사 구조 요청을 해도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며 도와준 경우에도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거부한다. 이러한 성폭력 피해의 정황은 구조 요청 여부가 성폭력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의 문제점을 분명히 드러내준다.

여성계에서는 성폭력 판단의 기준이 저항이 아니라 여성의 의사가 되어야 함을 주장해 오고 있다. 여성의 의사가 판단 기준이 되면, 성폭력 여부는 폭행, 협박의 수단으로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 성폭력 판단의 기준을 저항으로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강간 시도에 강하게 저항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자기 방어에 소홀한 점에 책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는 피해자의 대응은 피해자의 성격에 따라 성폭력에 극단적으로 저항하거나 무기력하게 당하는 폭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사안들은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신화라고 지적되는데,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성폭행 피해자와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진짜 강간(real rape)’의 고정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⁴⁶⁾.

그러므로 최근에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협박을 통하여 간음 행위를 하면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더라도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견해⁴⁷⁾가 학계와 여성계에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저항이 반드시 가해자의 성폭력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강하게 저항했을 때, 이것은 성폭력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폭행의 원인을 피해자 여성이 제공한 것으로 해석되거나 쌍방 폭행죄가 될 뿐 상대 남자의 성폭력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46) 법무연수원, 앞의 글, 2003.

47) 박상기, 「형법각론」, 162면.

<사례 4-40> 기혼여성이 형부를 강간으로 고소하자 경찰이 간통으로 취급하고 피해자에게 무안을 주었다.

<사례 4-41>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했는데 증거가 없어 고소가 안 된다고 하며 합의를 종용하고 유부남이라 간통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겁을 주었다.

<사례 4-42> 20대 여성이 사장으로부터 강간당한 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했음을 고소하자 경찰이 내연관계로 몰아갔다.

<사례 4-43> 아는 사람에게 강간당하여 경찰에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애인 사이라고 하여 무혐의 처리되었다.

<사례 4-44> 데이트하던 상대가 헤어지려하자 칼을 목에 대고 끌고 가 강간하여 피해자가 고소했는데 전에 가졌던 성관계를 문제삼아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다.

<사례 4-45> 감금되어 끌려 다니면서 강간, 협박, 폭행당했다. 피해자가 고소했으나 경찰은 반년 정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감금, 강간은 인정이 안 된다며 폭행만 인정하고, 부인이 간통으로 고소할지도 모른다고 위협하였다.

<사례 4-46> 남자 친구에게 여관에 가서 강간당하여 경찰에 고소하여 검찰에 송치되었다. 남자친구가 화간을 주장하자 검찰 조사관이 합의를 권유하였다.

<사례 4-47> 남자친구 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어 아침에 보니 남자친구의 친구가 옆에 누워있었다.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화간을 주장하자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불리하니 고소를 취하 안 하면 무고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사례 4-48> 30대 여성이 고객의 강간 피해로 고소했는데 검사가 화간이라고 하였다. 검찰청 계장은 “재미는 당신이 보고 왜 여기 와서 그러느냐” 고 하였다.

<사례 4-49> 20대 여성이 헤어진 전 애인이 찾아와 강간미수로 파출소에 신고하였는데 파출소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여 조사 받으면서 피해자가 상기되어 쓰러졌다. 그럼에도 경찰은 피해자가 신경이 날카로운 것이라고 피해자를 탓하고, 검사는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고 하였다.

<사례 4-50> 채팅으로 만난 15세 시골여학생 2명을 서울로 올라오게 하여 한 명은 강간, 한 명은 강간미수하여 고소하였다. 가해자도 시인하고 대질신문도 하고 진단서까지 첨부했는데도 경찰에서는 가해자를 잡아 둘 근거가 없다고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고 피해자에게 저항 못했다고 “좋아서 한 것 아니냐” 고 하였다.

2. 법·제도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2차 피해

(1)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변보호제도의 미흡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사법 체계를 통해 사건 해결을 하려고 할 때,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 자유, 사생활의 비밀, 신변 보호의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즉 피해자에 대한 수사·공판 과정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신변상의 위협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볼 때, 피해자의 인격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신변 또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변 안전에 대한 침해는 주로 수사 과정에서 신상 정보 유출과 가해자와의 대질 조사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신상 정보 유출은 아래에서 상담사례들이 보여주듯이, 거의 모든 상담 사례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건 기록

을 열람할 수 있는 피고소인의 변호인에 의해 고소인의 주소 및 인적 사항이 유출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제 3자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은 성폭력 피해가 가족, 이웃, 친척, 학원 친구들, 심지어 남편 직장에까지 알려지는 사생활의 침해 받고 있고 검찰 출입 기자가 사건을 기사화함으로써 신문에 학교, 동네 이름까지 나가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사례 4-51~64). 이 과정에서 가족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는 묵살되고 있다. 특히 피해 내용의 선정적인 보도는 피해자를 매우 광범위하게 사회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주소, 전화 번호 등이 알려짐으로써 합의를 종용받는 부담을 지게도 된다(사례 4-54, 55, 59). 또한 동네 소녀가장의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된 신고인의 신상이 가해자에게 알려짐으로써 신고인이 가해자의 신고 철회의 압력에 시달리게 된다(사례 4-51). 이와 같이 신고인의 신상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제3자의 신고율은 높아질 수 없고 이는 그만큼 취약 계층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피해자가 현저하게 위협을 느끼는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피의자와의 대질 심문 등은 피해자가 신변 위협을 느끼게 되는 또 하나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사례 4-52, 63, 64).

대검찰청은 1999년도에 '수사 및 공판 관여 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여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피해자 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막고 신변 보호를 피하고자 했으나, 그 실효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법조문⁴⁸⁾도 있으나 성폭력특별법 조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피해자 신상 공개만을 제한하고 있고, 피고인과 그 주변인에 의해 피해자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을 방안이 없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8조의 경우 성폭력특별법 상의 일부범죄만이 이의 적용을 받으므로 단순강간 등의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강력 범죄의 경우

48) 성폭력특별법 제 21조 1항,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8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8조.

가해자의 보복조치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가 피의자의 보석 또는 구속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거나 검사나 관할경찰서장이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부범죄만이 적용 대상이라는 문제가 있으며, 단순 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의 경우도 사례에서 보듯이 신변위협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사례 4-51> 소녀 가장 여아를 동네 사람이 강간한 것을 동네 아주머니가 알게 되어 학교에 알리고 고소했는데 경찰서에서 고발한 사람을 자꾸 불러 너무 괴롭다고 호소하였다.

<사례 4-52> 여학생이 남자 2명에게 윤간을 당하였다. 현장에서 6명이 잡혔는데 3명만 조사받았다. 특수강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는데 분리심문도 안하고 같은 책상에서 하는 바람에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사례 4-53> 22세의 여대생은 채팅으로 알게 된 남자와 만나러 나갔다가 차안에서 강간을 당하고 곧바로 가해자의 친구가 들어와 강간하려 하여 반항하자 때리고 근처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 모텔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여 도망쳐 경찰서로 가서 고소하였다. 부모가 알게 될까봐 두려워 학교 주소와 핸드폰을 기재하였다. 경찰에 신분을 보장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가해자측 가족이 학교로 수차례 찾아와 합의해 줄 것을 강요하고, “합의 안 해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 고 협박하였다. 수사한 형사에게 항의하자 가해자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보고 알아낸 것이라며 도리어 화를 냈다.

<사례 4-54> 등교 길에 동네남자가 성기를 내놓고 자위하곤 하여 동네사람들이 버르다가 잡았다. 경찰서에 넘겨주고 조서도 꾸렸는데 어른 3명, 아이 2명이 대질신문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물었다. 경찰에서는 “길어야 5일정도 구류감인데 이런걸 신고했느냐” 고 도리어 죄인취급하고는 3시간 만에 풀어주었다.

<사례 4-55> 27세 남자가 22세 여성을 여관에서 강간미수한 사례이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다음날 경찰이 불러 경찰서에 가보니 가해자의 부모와 가해자가 함께 계속 합의를 요청하고 애걸하여 힘들게 했다.

<사례 4-56> 14세 여중생을 친부가 지속적으로 강간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고소하였다.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가 진술을 하는데 공개된 수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옆자리에 있는 형사들이 “어떻게 친아버지가 친딸에게 그러겠냐, 이혼 소송에 유리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하면서 수근거리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친부가 범죄를 강력히 부인하여 대질신문을 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갔는데 그때까지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오빠와 여동생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었다.

<사례 4-57> 몸이 안 좋아 낮에 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집에 침입한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다. 경찰에 신고한 후 형사가 2일간 잠복했다가 범인을 잡았다. 용서해달라는 사과의 편지가 와서 경찰에게 왜 주소를 가르쳐 주었냐고 따지니 가해자가 조사할 때 주소를 외운 것이라고 하였다. 신고 당시 경찰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정자가 검출되었다. 절도강간 하루전날 남편과 성관계를 했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찰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혈액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였다. 피해자 본인에게 상의하여 남편의 동의를 구하게 하는 것이 순서인데 곧장 남편에게 전화한 것이 화가 나 정신적 고통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을 했더니 담당경찰관계자와 검찰 측을 징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례 4-58> 부인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강간피해 입어 고소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어 법원에 주소지변경을 하였으나 우편물이 전에 살던 집으로 왔다. 더구나 봉투도 없어 제 3자가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였으며, 이 일로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다.

<사례 4-59> 학원에 강도가 침입하여 강간미수하고 도주하여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학원생들이 다 있는데 현장 검증을 와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

<사례 4-60> 구속 구공판 통지서를 현주소지가 아닌 본적지로 보내 온 친척들이 다 알게 되었다. 검찰청에 항의하니 여직원이 실수로 본적지에 보냈다고 항의하자 한번 사과하다가 “이왕 그렇게 된 걸,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나” 고 도리어 화를 냈다.

<사례 4-61>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경찰 20명이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와 소동을 부려 온 동네가 다 알게 되었다.

<사례 4-62> 비밀 보장을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검찰 송치 중 출입기자가 사건을 취재하여 신문에 학교이름과 동네 이름까지 밝힌 기사가 나갔다.

<사례 4-63> 17세 여학생이 1심에서 피해자 증인 소환 시 비공개신청과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부모와 상담원을 나가라고 하였다.

<사례 4-64> 강간치상 사건의 피해자(외국유학생)가 증언을 하는데 증인석이 피고인석 바로 앞에 있고 통역인이 피고인 옆에 앉게 되었다. 피해자가 증언을 하는 동안 피고인인 가해자가 뒤에서 피해자를 노려보거나 비웃는 소리 등을 내었고, 통역인과 말을 할 때마다 가해자와 눈을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가 매우 큰 심적 부담을 느꼈다.

(2) 증거확보 지원제도의 미흡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이 증거인 경우가 많다. 강간의 경우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쉽고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 힘들다. 치상이 없는 강간의 경우 정자 채취, DNA, 효소 검사, 임신, 출산 후 친자확인 등의 방법이 동원되지만 가해자가 화간을 주장하는 경우 그 또한 성행위의 증거로밖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재판주의가 사법체계의 골격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일단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확보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조속히 의료적 조치를 통하여 신체적 상해를 치료하고 임신, 성병 예방을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증거 확보를 위한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피해자가 증거 확보를 하기란, 아래의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쉬운 일이 아니다.

성폭력피해자 진료에는 다른 환자보다 상황 경청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법정에 출두하게 될 때 환자 진료를 못하게 되므로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또한 의료진이 성폭력 피해자의 진료에 혼란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사례 4-67, 69, 71, 72). 피해자는 진단서 발급이나 법정 증언이 요구되는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의료진들의 기피로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다가 증거확보의 기회를 놓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다(사례 4-65, 66, 68, 70). 현실적으로 다양한 질환과 상처로 복직이 어려운 종합병원이나 응급실 상황에서 큰 상해가 없는 성폭력피해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려 장시간 대기하기 쉬우며, 비전공자의 처치와 진단서 발급은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한편, 현 의료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진료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찰 병원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경찰을 동행하지 않는 한,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 피해자로서는 당장은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고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도 증거는 확보해두고 싶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 경찰 병원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원활한 진료와 진단서 발급을 여성부가 지정한 156개의 산부인과 병원과 여성폭력피해지원 긴급의료센터가 7개가 운영 중이지만, 앞에 지적한 이유들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이상적인 의료 체계에서는 피해자는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하게 접수처리가 되어 응급실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장소나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으로 인도된다. 그리고 모든 의료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피해자가 동의하면, 성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의료 조치 및 후속조치에 관하여 훈련

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가 치료와 (당장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는) 증거 채취, 진단서 발급 등을 담당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 체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이 강구됨으로써 이와 관련한 2차 피해는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사례 4-65> 10세 남아가 8세 여아를 추행한 사례이다. 산부인과에서 처녀막 손상이라고 하여 고소하려고 진단서를 떼어달라니까 시간이 지났으므로 성폭력을 증명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사례 4-66> 탁아방 집 아들이 유아를 추행하여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발급해달라고 하니 의사가 못해준다고 하였다.

<사례 4-67> 4세 유아가 성추행 피해로 출혈이 있는데 동네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거부하여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다.

<사례 4-68> 진료내역서는 써주겠지만 진단서 발급은 안 된다고 하였다. 경찰은 진료내역서는 소용없다고 하였다.

<사례 4-69> 개인병원에서 신고를 안 한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진료를 해주었다. 고소를 원하면 대학병원에 가서 재진료를 받으라고 하였다.

<사례 4-70> 3살짜리 여아가 놀이방에 다녀온 후 아래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 4군데나 돌아다녔지만 진단서를 써줄 수 없다고 하였다. 아이는 가운 입은 사람만 보면 자지러지고 사지가 경직되었다.

<사례 4-71> 개인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임을 알리자 검사도구가 없고, 법적인 것은 취급을 안 한다고 대학병원으로 가라며 진료를 기피했다.

<사례 4-72> 검사기계가 없다고 소변검사만 하고 정자채취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세정제와 약만 주었다.

(3) 정보권 보장의 미흡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건의 형사 절차 전 과정에 대하여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의 부당한 공격 내지 책임 전가식 변호에 대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방어하고 형사절차에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한다.⁴⁹⁾ 그리고 이것은 피해자의 정보권이라 명명할 수 있다.⁵⁰⁾ 그러나 아래의 상담 사례들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정보권은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정보권에 대한 제약은 고소 출발 시점부터 발견된다. 피해자는 고소 후 경찰의 추후 통보를 기다려야만 하는데, 이 경우 수 주에서 수개월 심지어 10개월까지 아무 통보를 받고 있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사건이 접수조차 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기도 한다(사례 4-76). 그리고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수사단계의 전 과정에 걸쳐 진행 사항을 몰라 피해자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검사는 고소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 공소취소 및 타관송치 등의 처분취지를 고지함으로써(형사소송법 제258조 1항), 또한 피해자는 공소불기소제기처분에 대한 이유를 고지받음으로써(형사소송법 제259조)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알 권리가 충족 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판절차진행단계에 있어 잊혀진 존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이후 공판 기일, 공판 절차의 진행, 공소 취하나 공소장 변경 여부, 재판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피해자는 증인신문에 대한 준비 및 배상명령신청 등 피해자의 현실적인 이익실현을 극복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

49) 한입섭, 앞의 글, 45면

50)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66면

다(사례 4-75, 78~81, 84, 85). 검찰은 때로는 고소인이 어리다는 것을 이유로 진행 상황을 알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고소인의 정보권을 무시하기도 한다(사례 4-82).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정보권 제약은 피해자가 수궁하기 어려운 사건 처리 결과를 낳기도 하며 이 결과에 대해 피해자가 속수무책인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사례 4-77, 85). 예를 들면, 가해자의 기소 사실만 알고 있다가, 가해자가 피해자가 수궁하기 어려운 단기간의 실형을 살고 교도소에서 나온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다(사례 4-74). 또는 증인 출석을 통보 받지 못해 피해자가 불참한 가운데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공판이 이루어져 성폭력 사건이 화간으로 둔갑되고 가해자의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다(사례 4-72, 73).

현행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고지 제도는 검사의 수사종결처분(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사절차의 진행과정, 공판기일, 공판 절차의 진행, 공소취하나 공소장 변경 여부, 재판 결과 등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⁵¹⁾.

<사례 4-72> 음식점을 경영하는 40대 여성을 야간에 침입하여 목을 조르고 강간을 하였는데 잡고 보니 자주 드나들던 손님이었다. 상담소에서 토요법률상담을 받고 법정 동행을 하는 등 지원을 하여 1심 재판에서 4년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그 동네가 무서워 이사를 하였다. 2심 재판 중 증인 출석을 받아보지 않아 불참했는데 한참 후에 가해자가 무죄로 풀려 나와 가해자가 무고로 고소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례 4-73> 계부는 심 수 차례 교도소에 들락거린 사람으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목욕을 시키면서 성추행을 하다가 중2때부터 강간을 시작했다. 피해자의 모는 척추장애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해

51)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 보고서」, 2003, 61-62면.

계부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오히려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았다. 참다못해 중3때 가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회목사와 복지관에서 피해사실을 알게 되고, 상담소에 의뢰된 후 가해자와의 분리가 시급하다고 보아 필리핀 유학을 보냈다. 필리핀에 있는 동안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잘 적응하였으나 친모가 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해주지 않아 4개월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피해자가 처벌을 위하여 성폭력상담소장이 여성기동대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시작되어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을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는 피해아동이 필리핀에 있다고 판단하여 통보를 하지 않아 피해아동과 관련자 아무도 증인출석 요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행당한 날짜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친모가 일관되게 계부 편을 들고 있고, 가해자가 당뇨가 있어 발기불능이라며 성폭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례 4-74> 가해자가 징역 8월을 살고 나왔다. 피해자 측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소여부 통지만 받았고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실형사실 및 출소사실 등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

<사례 4-75> 아파트 골목길에서 모르는 남자 2명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고 남편이 바로 신고하여 가해자들이 파출소로 잡혀갔다. 경찰로 넘어간 지 3개월이 되었으나 검사에게 물어볼 때마다 “진척이 없다” 하며 “조사 중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였다.

<사례 4-76> 작년 6월에 전화로 성폭력피해를 신고했으나 올 4월까지 접수도 되어 있지 않았다. 진정서를 써서 냈더니 경찰이 미안하다고 하며 다시 진술하라고 했다.

<사례 4-77> 4, 5세 여아 여러 명이 아파트 공사장 인부들로부터 성추행당해 신고했으나 두 달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연락 없었다.

<사례 4-78> 강제추행으로 파출소에 신고한 후 가해자가 조사받았다. 피해자가 가해자 진술 내용에 대하여 해당 경찰서에 물었으나 “가해자진술은 알려 줄 수

었다” 며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다.

<사례 4-79>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상태에서 자신이 진술한 것을 복사 청했지만 경찰에서 이를 거절했다.

<사례 4-80> 검사에게 재판에 관해 물어 보아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걸 알아서 뭐하겠느냐” 라고 하였다.

<사례 4-81> 공익요원에 의한 강간치상을 고소했는데 군사재판이라고 하며 진행내용을 알려주지 않아서 답답하였다.

<사례 4-82> 검사가 자주 피해자를 출두할 것을 요구하고 “출두하지 않을 시 부모에게 알리겠다” 고 협박하였다. 대질신문도 한다고 해서 너무 힘들며,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어리다며 사건 진행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사례 4-83> 주택가 골목에서 강제 추행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잡아 경찰에 고소하고 가해자도 가해 사실도 시인했지만 형사가 자꾸 합의하라고 하고, 가해자를 풀어주어서 왜 풀어주었는지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고 화를 냈다.

<사례 4-84> 자취하는 학생인데 새벽에 집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와 강간 시도하여 고소하였으나 가해자가 도주하여 진행이 안 되었다. 경찰서에 문의하면 짜증을 내며 설명해 주지 않았다.

<사례 4-85> 피해자 2명이 가해자 3명을 고소하였는데 그 중 1명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었다. 피해자들이 진술하고 집으로 온 다음 날 경찰서로 전화하니 가해자를 풀어 주었다고 하며 검사가 석방 명령했다고 한다. 나중에 보니 관할경찰서가 아닌 곳에서 진행되고 있어 이유를 물으니 상부에서 그렇게 처리하라고 하였다며 잘 설명해주지 않았다.

(4) 부적절한 증인신문

수사·공판 과정에서 성폭력의 잘못된 인식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사생활을 침해한다. 이러한 피해의 유형으로는 수사관의 범죄 사실의 증명과는 무관한 “누구랑 몇 번 했나, 성경험이 많다면, 아무에게나 다리 벌리나, 돈 노리는 것 아닌가” 등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듯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2차 피해를 낳는다. 또한 피해 당시의 자세한 내용까지 질문하는 유형으로 사정 여부라든가 성기 삽입 여부, 강간 피해 당시 쾌감을 느꼈는가의 여부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행위 과정을 적나라하게 진술하여야 하는 질문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고소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신문과정을 통한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에 대한 침해로부터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참고인 조사시 수사기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공판과정에서의 증인신문시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5) 아동·장애인 피해자에 적합한 수사·공판 체계의 미흡

범죄분석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 중 10대 여성 청소년 피해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아 성폭력도 가일층 증가 추세에 있다(<표12>참고). 유아와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은 정신발달상의 심리적 특징이 성인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특히 성인 피해자에게도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이 되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그 충격이 유아와 청소년에게는 성인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음을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유아와 청소년의 일상상은 성인의 보호와 배려 속에서 이루어지며 극심한 스트레스적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에 비해, 성폭력은 이들의 이러한 일상 체험과는 극단적으로 배치되며 때로는 적응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수준의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체험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성년이 형사사법 절차 속에 들어 오게 될 때, 미성년에 대한 수사 담당자들의 태도와 수사 환경은 성인 피해자 때보다 훨씬 더 섬세할 필요가 있다. 상담 사례에서 미성년 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2차 사례의 실태들을 살펴볼 때, 무엇보다도 수사담당자들의 미성년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이해에 기초한 수사 체계가 시급히 요청된다.

그러나 현실의 수사 체계는 성인 피해자와 범죄자를 다루는 것을 중심으로 구축된 매우 성인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체계이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는 여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담 사례를 통해서 미성년의 정신적,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수사 담당자들의 태도와 그 체계가 어떻게 미성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낳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성년에 적합한 조사·증언 방식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며 여기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 미성년의 신체적, 정신적 감당 능력을 벗어나는 반복 진술과 증언, 피의자와의 대질 조사나 증언, 보호자의 동석 없이 이루어지는 조사와 증언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첫째로, 경찰·검찰의 조사과정과 재판과정에 걸쳐 수없이 사건에 대한 반복 진술이 이루어진다. 아이를 몇 시간씩 쉬지도 않고 10여 차례가 넘게 진술하게 하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⁵²⁾(사례 4-86, 87, 98). 공판 검사의 교체도 반복 증언의 요인이 되고 있다. 아동은 기억력이 쉽게 감퇴되며 부정적인 기억에 대한 심리적인 방어기체에 의해 반복될수록 앞뒤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반복 진술은 아동에게는 적합한 조사·증언 방식이 못 된다. 더군다나 반복 진술이 강요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은 자폐증, 건물공포증, 대인공포증 등과 같은 정신과적 증상을 나타

52) 수사·재판 기록서에 나타난 검찰과 경찰의 피해자진술조서는 합하여 대체로 2~4회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9-02」, 1999, 100면 참조), 심한 경우 10회정도의 조사와 증언신문을 받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내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기도 한다. 피해아동이 이 지경에 이르는 것은 처음의 성폭력에 버금가는 형사사법 체계의 또 다른 폭력으로 2차 피해가 된다. 이 2차 피해는 단순히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2차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온 가족이 겪는 2차 피해로 확대된다, 이러한 2차 피해과정의 고통에 시달린 가족은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기까지 한다.

둘째로, 피의자와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로 미성년 피해자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미성년 피해자 부모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이다. 특히 재판 단계에 이르러 이미 미성년 피해자는 이전의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몇 차례씩 반복된 조사로 심신이 지쳐 있거나 정신과 치료 중이다(사례 4-87, 93, 94). 보호자는 이런 아동 또는 청소년을 피의자와 대면하는 법정에서 다시 세우는 것이 당사자와 부모 모두에게 참기 어려운 고문으로 경험한다.(사례 4-94) 정신과 치료 중인 피해자는 피의자와 대질하자마자 기절해버리기조차 한다(사례 4-97). 이러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으로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분리신문제도⁵³⁾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1조⁵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모두 법정증언에만 한정되어 있어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지는 못한다. 또한 법정증언시에도 실무상 분리신문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조항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53) 형사소송법 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

- ①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도 같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서기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54)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특례)

- ⑤ 증인으로 소환받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재판장 또는 판사는 직권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 등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적합한 조사·증언 방식의 예로 보호자의 동석 없이 조사와 증언이 이루어지는 것, 성인 중심적인 조사와 증언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이 역시 미성년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고 2차 피해를 초래한다.

미성년 피해자는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조차도 위압적인 형사 절차를 견뎌낼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1999년도 대검찰청은 미성년자의 수사·공판시 보호자 동반을 허용하는 피해자 보호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는 증인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퇴정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관찰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사주할 가능성을 이유로 부모를 배제한 채 9세 아동에게 진술을 받거나(사례 4-95), 피고인의 변호인이 8세 피해자의 어머니를 포함한 모두를 퇴정케 하는 요청을 하자 판사는 이를 수용하고 있다(사례 4-96).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성인 중심적 현장 검증이나 어른을 조사하는 식의 어법이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조사, 심신이 극도로 미약한 상태의 청소년 피해자 조사를 가해자가 군인이라고 헌병대에서 수사하는 조사 방식 등(사례 4-90)으로 미성년 피해자는 조사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 없음은 심한 경우 또 한 번의 상처를 입는다.

모욕적인 반복 진술을 감내하는 2차 피해를 겪으면서 성폭력과 관련한 것만을 기억하지 못하는 더 심각한 2차 피해에 빠지는 피해자의 모습, 그리고 부분 기억상실증에 빠진 이 피해자가 성폭력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피의자를 무혐의처리하는 검찰의 모습(사례 4-5)은 경찰·사법계의 2차 피해에 대하여 위험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법계의 증거주의가 극도로 형해화된 증거주의에 빠져 본래의 제 기능을 잃은 모습이기도 하다. 상담 현장 실무자들 그리고 일반인의 상식적인 눈으로는 피해자의 기억상실증만큼 더 이상 분명한 성폭력의 증거는 있을 수가 없다. 피해자는 온 몸으로 성폭력의 증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에 적합한 조사·증언 방식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부재 외에도, 미성년의

정신적·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수사 담당자들의 태도로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미성년자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사례 4-87, 88, 90).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검사는 불필요한 보강 수사를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를 지연시킨다(사례 4-89, 91). 또 한 명도 아닌 초등학교 4, 6학년의 두 명의 가해자의 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동의 증언은 인정되지 않는다(사례 4-88). 피해 아동이 지목한 피해 날짜에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대면, 그 알리바이의 정확성을 수사하고 반복 조사나 기억력 한계로 인한 아동의 특성을 감안한 보강 수사를 진전시켜야 하나, 가해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아동은 자폐 증세로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다(사례 4-87). 아동에게는 임질균이 발견되나 아동이 가해자로 지목한 별거하는 친부에게 임질균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심한 질타를 한다. 이 경우도 친부가 성병 치료를 완료해서 균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며 아동이 친부와 또 다른 제3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 친부에 대한 무혐의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사례 4-86> 내연관계에 있는 30대 여성이 10세 여아를 데리고 사는 중 아이의 친부가 부정기적으로 들렀는데, 아이가 아버지의 성추행을 호소하여 고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10세 여아가 경찰에 의해 수 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추행으로만 알고 산부인과 검사를 받았으나 강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나중 경찰병원 진료에서 임질균이 발견되어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는데 친부에게서는 임질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사가 다른 사람에 의한 피해를 친부에게 무고하였다며 무고로 넣겠다며 심한 질타를 하였다.

<사례 4-87> 이혼 후 초등학교 2학년 9세 여아와 살고 있는 여성이 공무원시험을 보려고 학원에 다니다가 강사와 사귀게 되고 집에 수시로 드나들게 되었다. 딸에게 성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여성은 증거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백을 받아 녹음하려고 하던 중 뿌리치고 도망가는 것에 격분하여 문구용 커터 칼로 가해자의 안면에 상처를 내었다. 폭행 치상으로 고소되어 6개월 복역하고 나온 피해자 어머니는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고소하였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여 9세

여아는 경찰수사, 대질수사, 검찰수사를 되풀이했고,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피해 날짜를 지목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일 학원 강의를 있었다고 하며 피해자 어머니가 결혼을 요구하다 잘 안 되자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아이의 친부까지 증인으로 소환하여 이혼사유와 피해자 어머니의 성격이상을 진술하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났다. 여아는 여러 차례의 진술과정에서 심적 타격을 받고 자폐증 증세를 보이면서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사례 4-88> 아이들이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술래잡기를 하느라 6학년 언니와 4학년 오빠가 숨어 있다가 나가보니 6세 여아인 피해자에게 어떤 아저씨가 추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쫓아가 보니 피해자가 울고 있어 왜 그러냐니까 아저씨가 성기를 보이고 아이의 성기도 만졌다고 하였다. 소리 질러 구조를 요청하자 부모들이 쫓아 나왔다. 4학년 오빠와 6학년 언니가 증인으로 나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말을 잘한다, 너무 일치하게 증언한다, 직접 본 게 아니라 전해들은 것 같다”며 “일을 시간인데 먼데서 어떻게 그렇게 또렷이 볼 수 있겠냐, 사주 받은 게 아니냐, 증거로 부족하다”고 하면서 선고를 계속 유예하다가 해가 바뀐 후에 “피해는 인정하나 가해자를 잘못 지목한 것 같다, 가해자로 추정할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 아이들의 판단이 증거로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아 이민을 갔다.

<사례 4-89> 5세 여아 피해자가 “똥꼬가 아프다”며 “괴물이 잠지를 만졌다”고 호소하여 상담소에 상담을 청하여 아동을 면접하는 중 괴물이 유치원 신부를 지칭하는 것을 알게 되어 부모가 고소를 고려하게 되었다. 인형놀이를 통해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재현시키는 전 과정을 상담소가 연계한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여형사가 캠코더로 촬영하였다. 이후 피해사실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다른 피해 아동이 3명이나 더 드러나서 정식 고소를 하고 수사를 의뢰하였다. 처음에는 강한 의지를 보이던 여형사가 태도가 돌변하며 사건 말기를 꺼리며 가해자 거주지 관할서로 넘기라고 하였다. 그럼 왜 거기서 고소하라고 했냐 따지니 “조직에 있어봐라, 죄송하다, 종교단체 힘이 얼마나 큰데, 할말이 없다”고 하였다. 캠코더 촬영한 테이프를 서류 속에 함께 보내줄 것을 요구했더니 “바쁘는데 어떻게 그 일만 챙길 수 있겠냐”고 화를 내서 “그럼 직접 가지러 가겠다”고 하자 당황하더니 3시간 후에 전화하여 “테잎이 삭제되고 없다”고 하였다.

<사례 4-90> 피해자는(당시 18세)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가해자와 몇 번 정도 전화 통화하는 사이였는데 가해자가 군대에 입대하여 심심하다고 책을 보내달라고 하여 자신이 보던 책을 보내주었다. 휴가를 나와 책을 돌려 받는 과정에서 책이 집에 있다고 유인하여 강간하였다. 가해자가 현역 군인인 관계로 군대 헌병대에서 최초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군대의 특성상 통제되고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군인 수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강간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수사를 받았고, 당시 수사를 담당하던 헌병대 수사관은 “처녀막이 있나? 이전에 성경험은 있나? 성행위 자세는? 둘이 좋아서 한 게 아니냐?” 등 감당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였다. 피해자는 강간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에다 수사과정에서 받은 모멸감으로 인한 충격이 더하여 집에서 실신하여 쓰러진 이후 성폭행 사건에 관해 부분적인 기억장애가 발생했다. 이후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정상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가 없어 질문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었고, 가해자는 당시 주고받은 편지를 제출하고 화간을 주장하였다.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이후 피해자는 수영을 하다 코로 물을 들이마시어 실신하는 사고 후에 잃었던 기억을 되찾게 되었고,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된 상태이고 현재 대검찰청에 재항고 중이다.

<사례 4-91> 피해자는(당시 18세) 학원 수강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중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는 학원 선생의 말에 별 생각 없이 그의 승합차에 올랐다. 갑자기 주변의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10만원 줄 테니까 깔끔하게 끝내자. 자꾸 소리 지르면 밖에 내 친구들이 와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 불러서 너를 돌려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후 강간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회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이를 보다 못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경찰은 가해자를 긴급 체포하였으나 가해자는 새벽 1시경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자가 피해 당시 가해자가 핸드폰을 받은 것을 기억하여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가해자가 지목한 친구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고 같이 술을 마셨다면 휴대폰 통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검사는 피의자를 불구속수사로 석방하였다. 경찰이 보완 수사하여 보고하였으나 검사는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를 상대로 “성폭력 피해자를 검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라” 고 했으며, 술집 계산서 내역 등을 조사하는 등 불필요한 조사들로 사건을 지연시켰다. 이후 수사 지휘 검사와는 다른 검사에게 배당되어 송치받은 검사가 철저한 수사 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이번에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불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사지휘 등으로 수사과정에 지나치게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7개월 이후

에야 기소되어 현재 불구속 재판 진행 중이다.

<사례 4-92> 부모를 따라 영국에 살고 있던 12세 소녀가 방학을 맞아 일시 귀국하여 고모 집에 머물고 있던 중에 고모부에 의하여 강간 및 강제 추행을 당했다. 영국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고모부가 자신에 대해 한 행위를 말했다. 영국 의사에게 진찰 받고 영국 어린이 보호팀의 조사를 받았다. 그 사이 이모가 상담소에 상담을 청하여 외국 거주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소과정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일시 귀국하여 서울 지방경찰청에 고소하여 조사받고 가해자를 구속수사, 검찰에 송치하였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고, 강간치상은 영국에서 조사 자료를 올 때까지 기소 중지인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피해자가 영국으로 되돌아갔음에도 판사는 처음부터 피해 어린이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영국에서는 이미 귀국하여 경찰, 검찰의 조사를 마쳤고 모두 임의성이 인정되는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바 있으며 출국하여 영국에 거주하면서 정신과 전문의와 가족치료 전문가의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다시 법정에 출두시켜 현재 치료되어 가고 있는 6개월 전의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억을 재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어린이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이므로 출두할 수 없다는 사유를 설명하고 그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판사는 자신이 직접 이메일로 영국에 출석요구를 해보겠다고 하여 피해자 측 변호사는 증인출석 요구 철회요청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 피해 어린이의 출석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밝혔다. 판사는 4회 공판에서 사법공조를 통해 정식으로 소환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에는 6개월이나 걸린다며 6개월 후로 속행 기일을 지정하였다. 이미 가해자측 가족들이 영국까지 찾아와 합의를 강요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판사는 근친성폭력 사건에 대해 가족 내부의 일이므로 가족 간에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해자가 직접 영국으로 찾아가 피해자측을 설득해 보라하며 구속기간이 4개월이나 남아 있는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였다.

<사례 4-93> 불화로 별거상태에 있던 어머니가 시댁에 맡긴 5세 여아가 친부에게서 성추행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5세 여아가 경찰수사, 대질수사, 검찰수사 등 여러 번 출두하게 되어 그 후유증으로 대형 건물 공포증, 대인공포증을 보이게 되었다. 병원 검사에서 임질균이 발견되어 기소되었는데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5세 여아를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하였다.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별도의 안전한 공간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탄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압적인 분위기의 중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비공개재판으로 진행되었으나 친부를 퇴정시키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었다. 결국 마약복용 등이 병합되어 2년 실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재산을 다 빼돌려놓아 이혼 위자료도, 아이 양육비도 받을 수가 없었고 아이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아 이를 치료하는 데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소아정신과 치료비가 나왔다.

<사례 4-94> 9세 어린이의 피해자진술시 사주할 수 있다고 부모를 동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례 4-95> 동네 아저씨에 의한 8세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1심에서 3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피해 어린이를 증인으로 소환되어 가해자가 입석한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 가해자 변호사가 피해자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퇴정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자, 판사가 아이만 남겨 놓고 모두 퇴정케 하였다. 상담자가 어머니라도 배석케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모두 나가라고 하였다.

<사례 4-96> 차로 끌려가 강간당한 여성 청소년이 정신과 치료 중인데 직접 가해자와 대질시켜 기절했고, 이후에 병세가 악화되었다.

<사례 4-97> 어린이에게 돈을 주면서 성폭행한 것을 피해자 어머니가 알고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이런 걸 다 고소한다”고 비난하면서 아이에게 10번도 넘게 진술하도록 하였다.

(6)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시 보호제도 미흡

요즘 성폭력 피해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무고나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다. 물론 성폭력 고소인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은 지금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⁵⁵⁾.

상담 현황에 나타난 사례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측근(남편, 남자친구, 형부, 동생) 또는 피해자를 돕는 지원자가 성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폭행, 공갈, 협박, 기물 파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성폭력 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되면서 피고소인이나 검사로부터 무고로 고소당하였다. 대자보 부착, 인터넷 실명 게재 등으로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의 경우 그 행위가 사실이어도 공연히 적시했을 때 피고소인의 입장이 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공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사례 4-98, 99).

역고소 시 성폭력 피해사실 여부가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데, 성폭력 피해자는 실제 성폭력 사건으로 조사받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관련법에 의거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전혀 받을 수 없으며, 피해자 혹은 고소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대부분 강압적인 조사를 받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매우 큰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역고소가 남발되지 않고 피해자가 부당한 역고소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⁵⁶⁾.

<사례 4-98> 피해자는 같은 과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만취하자 편입생인 가해자가 집에 데려다준다고 택시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강간하였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했다. 이후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실은 관계에 있는 여성과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음을 알게 되어 준강간,

55) 최근에만 해도 도지사의 성추행 사실을 공개한 피해자와 그를 도왔던 시민단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방송사 노조간부의 성폭력 사실을 공개했던 피해자와 사회단체 및 그 사실을 보도했던 언론사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부녀회장에 대한 이장의 성추행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당했고, 대학교수가 조교를 강간한 사건과 또 다른 대학교수의 제자 성희롱 사건에서도 사회단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으며, 대학생이 동료 학생을 강간한 사건에서 그 사실을 대자보로 공개한 선배와 여학생회를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건 등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박선영, “성폭력사건의 공론화와 명예훼손”, 『법조』, 2003, 7, 48-49면.

56) 박선영 서울대 교수는 “가해자가 그러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나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행위는 피해자와 시민단체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수단으로 법을 악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피의자가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정황증거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마이뉴스, 2003. 9. 2자 참조.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면서 총여학생회와 여성단체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로 맞고소해왔으며 가해자의 친구들 명의로 인터넷에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글이 쏟아져 들어왔다. 또한 실명으로 가해사실을 공표한 여성단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사례 4-99> 여고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42세 상사가 폭행하며 강간하였다. 이후 가족에게 알린다고 협박·폭행하며 수십 차례 강간하였다. 언니에게 호소하여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가해자가 사랑한다는 주장이 경찰에 받아들여져 불기소되었다. 다시 가해자가 찾아와 언니와 형부가 가해자를 붙잡다가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눌렀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간이 손상되어 전치 6주의 수술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형부뿐 아니라 언니까지 폭행으로 고소당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소송까지 당했다.

<사례 4-100> 학원교사의 부가 원생을 화장실에 따라와 성추행하여 고소했으나,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례 4-101> 피해자는 2급 장애인으로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취직시켜 준다면 어떤 남자를 소개하였다. 소개받은 남자를 찾아갔더니, 그 남자가 피해자를 강간해 이를 후 고소했으나, 가해자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였다.

<사례 4-102> 대학 내 성추행 사건을 지원하던 총여학생회장이 대자보 붙인 것으로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50만원 벌금 처분통지서를 받았다.

<사례 4-103> 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강간당한 사례로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해 입에 재갈이 물리운 채 지방으로 끌려 다니다가 탈출하여 신고했다. 강간으로 충격을 받아 기억이 혼돈스러워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자 무고죄의 피의자로 심문을 받게 되었다.

<사례 4-104> 미술학원 원장이 5세 여아(만3세)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되고 항고하여 고검에서 진행 중인데 학원은 아이 부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사례 4-105>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세 여학생이 주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자의 오빠가 가해자에게 사건의 진의 여부를 따지자 가해자가 자해를 했다. 성추행을 고소했으나, 경찰에서는 도리어 피해자 오빠를 폭력으로 기소했다.

<사례 4-106> 25세 다방종업원이 배달 나갔다가 강간피해를 입어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자, 남자친구와 가해자 사이에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가해자의 고발로 피해자와 남자친구는 윤락, 폭행으로 구속되었으며,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강간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례 4-107> 강간으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되고 피해자는 무고죄로 상대방으로부터 맞고소당하고, 경찰은 가해자의 편에서 피해자를 밀어주지 않았다.

<사례 4-108> 고시원생이 고시원장으로부터 강간당해 고소했으나, 담당검사가 고시원장과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검사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며 큰소리쳤다. 고시원장이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피해자가 긴급체포되었다.

<사례 4-109> 피해자가 강간, 폭행을 당해 고소하자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맞고소를 했다.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질 심문시키면서 “가해자가 무혐의이며,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라고 말해 강간 피해자를 압박했다.

(7) 처벌조항 없음 외

(사례 4-110~119)의 경우는 피해자 측이 피해를 주장하다가 오히려 가해자 측에

의해 폭행과 모욕을 당하는 사례이다. 성기노출, 엿보기 등 피해에 대하여 처벌조항이 없어 처리하지 못한다는 경찰의 태도에 실망하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성폭력 사건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 피해자 보호조치가 없어 2차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이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에 수반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혼소송, 친권박탈과 호적 분리, 개명소송 등에 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례 4-110> 피해자는 집안이 어려워 12살 때 남의 집 양녀로 들어가 학교도 보내준다고 하고서는 일만 시키고 양아버지의 수발을 들게 했다. 양아버지와 양오빠의 지속적인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15살 때 그 집을 나와 고생하면서 살다가 결혼하였으나 후유증으로 성관계 기피로 남편과 이혼했다. 너무나 억울해 고소를 하고 싶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고 고소가 안 된다고 하였다.

<사례 4-111> 친부가 17세 딸을 상습적으로 강간한 것을 알게 된 모가 남편을 고소하여 2심에서 7년형이 선고되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이혼수속을 하고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친권 박탈을 했다. 그 동안 남편과 용자를 얻어 형 명의로 사놓은 집을 시댁의 양해를 얻어 팔아 용자 값고 4자녀를 가르쳤다. 친부가 출소하여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려 아들이 화가 나서 대드는 과정에서 112에 신고하였는데 출동한 경찰이 쌍방폭행이라도 자식이 존속을 폭행하면 중죄라고 하는 이야기에 가해자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집에 찾아와 부인을 목 조르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접근금지명령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나 막무가내로 찾아와 온 가족이 탈진되곤 한다.

<사례 4-112> 20대 중반의 여직원에게 직장상사가 칼을 들고 위협하여 강간을 했고, 사건 이후 바로 고소하여 1심에서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항소심 재판중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집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 끝 쪽에 페이지마다 피해자 가족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둔다든지, 이름 위에 '사형'과 같은 글자를 써서 글을 보내왔다. 나중에 퇴소 후 식구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닌지 너무나 불안했다. 편지를 못 보내게 제한한다든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나 알아보아도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사례 4-113> 24세의 회사원 피해자는 밀린 업무를 하러 일요일에 출근하였다가 건물 경비업체 직원에게 흉기로 위협당하고 강간치상의 피해를 입었다.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한 후 고소하여 구속하였는데 경비업체 소속 변호사로부터 합의 요청에 시달리게 되었다. 가족에게 알리기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모에게 찾아가 합의하겠다고 하다가는 막상 합의를 하려고 하니 가해자가 지불 능력이 없다느니, 재판 결과를 보자고 하며 미루는 등 심적으로 괴로움을 주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에서 2년 실형이 선고되고, 상담소에서 토요법률상담 후 경비업체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다.

<사례 4-114> 모르는 남자가 지하철 여자화장실을 몰래 엿보다가 발각되어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에서는 경범죄 외에 정확한 죄명을 모르겠다며 처벌을 외면했다.

<사례 4-115> 옆집 남자가 옷을 벌거벗은 채로 베란다에서 자위를 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고 조치만 하고 끝냈다.

<사례 4-116>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차를 뺐는데 자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이상한 방향으로 데리고 갔다. 도망쳐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범으로 잡혔으나, 경찰에서는 감금만 취급하고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추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례 4-117> 철학관에서 액땀 해준다며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해 바로 그 곳을 나와서 경찰에 연락했으나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였다.

<사례 4-118> 가해자가 복역 중, 출소 후에 연락을 해와 접근을 막아달라고 하자 경찰에 요청했으나 처벌 조항이 없다고만 했다.

<사례 4-119> 스토킹을 당해왔으나, 스토킹은 방지법 안이 제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⁵⁷⁾.

57) 막상 스토킹을 인식하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감이 먼저 생기고 일상의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수가 많다. 그럴 때일수록 주변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떻게 행동하고 다녔기에...”, “한참 서로 좋아하더니만...”, 하면서 편견과 꾸중 비난은 절대 금물이며, 스토킹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사이버범죄수사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 관련사실을 설명하고 전화 또는 웹사이트로 상담·신고 할 수 있다. 김연수, 『사이버 포르노그래피』, 진한도서, 2003, 349~350면 참조.

제 5 장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성폭력은 운 나쁜 몇몇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풀어가야 할 사회적인 과제이다. 앞 장에서 성폭력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형사사법 절차상의 2차 피해 분석결과는 기존의 법·제도와 사회적 통념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수사·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상담사례들은 이제 우리사회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넘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준다.

본 장에서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1) 피해자의 보호 확대와 권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2) 성폭력 범죄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의 인식 전환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피해자의 권리 강화와 보호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1) 성폭력의 개념 및 범위 확대

1994년 1월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우리나라 성추방 정책의 기본 틀이다. 이 법이 마련된 계기는 그 동안 보이지 않던 ‘성폭력’을 사회문제로 드러내어 ‘이름(naming)’을 주고, 피해자 상담과 지원, 일반인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등 성폭력 추방 운동을 주도해 온 여성단체들의 끈질긴 법 제정 촉구에 의해서였다⁵⁸⁾. 이와 함께 여성폭력을 여성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의

침해로 인식하고 이를 추방해야 한다는 UN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영향과 압력을 받기도 하였다. 이 법은 다양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게 했다. 그동안 전국 117개의 성폭력상담소와 12개의 피해자 보호시설이 개소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을 적용하면서 성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 장에서는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성폭력의 개념 및 범위 확대, 피해자의 권리 보호 강화, 피해자 지원 제도 강화, 형사 절차에 피해자의 적극적 참여 권리 인정을 제안한다.

1)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성폭력 개념의 명시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에서 공식적으로 성폭력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성폭력 특별법이 처음이다. 이 법안에서는 성폭력을 따로 개념정의하지는 않은 채, 기존의 각 법안에서 해당하는 죄를 열거하며 이를 성폭력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다⁵⁹⁾. 이처럼 구체적인 범죄 행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성폭력의 개념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58) 이미경,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권리 존중”,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학술회의 토론자료」, 2002. 12 참조.

59) 성범죄의 정의에 관해서는 일정하지 않으나 협의로는 형법상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죄(형법 제297조~제305조)와 성풍속을 해하는 죄(형법 제241조~245조)를 의미하며, 이 범죄 중 유행력을 행사하여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범죄(에 강간, 강제추행)를 최협의의 성범죄라 할 수 있다. 이밖에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도강간(제399조), 해상강도강간(제340조 제3항)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등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가 있고, 이들의 성에 관련된 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광의의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범죄의 동기가 성적 욕구에 기인해 있는 절도, 주거침입(외설목적), 상해, 살인(성적충동) 등을 포함한 성범죄를 최광의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박종선,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2001, 각주 94) 재인용.

대한 침해라는 좀 더 폭넓은 차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형법 제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1995년 형법 개정 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칭이 되는 변화는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정조를 대신하는 어떠한 보호 법익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세부 항목의 편의적 조합으로 장의 제목을 삼는 식의 법 개정만 그치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피해 여성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얼마나 저항을 했는지를 입증해야 하고⁶⁰⁾ 이전의 성경험 유무, 피해 상황의 구체적인 묘사 등을 반복 진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검찰청(1999)과 경찰청(2003)에서 마련한 수사지침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은 피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파악된 바에 의하면,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전의 성관계 유무나 피해 시의 느낌까지를 질문을 받고 있고, 그 곤혹스러움이 두 번 세 번 강간당하는 듯 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의 법과 사회적 인식이 성폭력을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보기보다는 순결 상실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의 개념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2)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은 그 행위가 폭행과 협박에 의한 것이었음을 증명해내야만 강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더욱이 상대가 데이트 상대였거나, 함께 잔 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스포츠가 아니거나 나아가 성매매 여성이라면 훨씬 불리한 상황

60)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24 판결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된다⁶¹⁾. 또한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아니오’는 ‘아니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묵의 경우에는 젠더화된 섹슈얼리티의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무언의 동의’로 가정케 한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성 이중규범, 즉 남성과 여성에게 달리 적용되는 성규범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의 혼전 순결이 문제시되고, 때로는 이로 인해 가정의 존립이 위협받는 사회인 현실에서 여성은 자신의 성적 행동에서 주체성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관계를 강하게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을 염려하거나, 혹은 자신의 거부로 인해 애인이 떠나갈 것을 두려워하여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이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성 행동의 바람직하지 못한 특징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폭력의 판단기준은 누구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성폭력의 판단기준에 피해자의 반항과 거부 여부가 요구되는 것은 결국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증명을 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가해자가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보통 둘만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은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이 피해자의 관점인 것은 다른 성폭력 사건 해결에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딜레마가 있다. 과연 피해자가 처해 있는 젠더의 권력 관계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으로 거부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가 최근 KBS 노조 간부 성폭력 사건의 경우가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⁶²⁾.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운동권 내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피해 여성의 입장이 아니라, 조직 보위와 운동적 대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은폐하면서 오히려 가해자들을 두둔하거나 문제를 축소하고 있다.

61) 매किन, 엄용희 역, “강간 : 강요와 동의에 대하여”,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2001, 71면

62) 전희경, “KBS노조 간부 성폭력 사건의 여성인권 쟁점들”, 『성폭력을 다시 쓴다 :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한국여성의전화위음, 2003.

최근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주장하는 측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다⁶³⁾. 만약 성폭력의 개념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새롭게 정의된다면 비동의 간음죄는 굳이 신설할 필요는 없다. 성폭력으로 인정되는 거부의 수위는 어디까지인지도 논쟁적이다. 최근 데이트 성폭력의 경우처럼 폭행과 협박이라는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도되고 있는 점은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⁶⁴⁾. 한편 수사 담당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피해자의 관점이 갖는 역효과 문제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미명아래 수많은 진짜 피해자를 ‘꽃뱀’으로 의심하는 방법이 아닌, 보다 명확한 수사 방법으로 구별해내야 할 문제라고 본다.

3) 부부강간의 처벌

현재 부부강간은 처벌이 되지 않고 있지만 가정폭력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부부강간 피해의 실태는 너무나 심각하다. 이에 대해 이백수 변호사는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내가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⁶⁵⁾”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부인에 대한 강간죄는 인정이 된다. 다만, 대법원이 부부간에는 동거의 의무가 있고 특수한 신분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상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다”고 지적하면서 부부강간의 강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간접적으로 대법원의 해석을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의하고 있다. 조국 교수는 아내강간의 부정성을 아내의 몸과 성을 남편의 소유물로 보는 전근대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고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면서⁶⁶⁾ 아내강간을 가정폭력특별법 상의 ‘가

63) 조국, 앞의 책, 2003, 65-72면

64)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2001:155 ; 이박혜경, 2001 ; 황정미, 2001:194

65) 아내강간에 형법이 개입하게 되면 부부간의 또는 가족내의 대립이 격화되고 결국 혼인관계의 회복을 어렵게 만들어 화해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조국,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2001. 16면 참조.

66) 물론 부부관계는 특수하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남편이 처를 폭행·협박해서 강제로 간음해

정보보호사건'의 범위에 포괄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⁶⁷⁾. 즉, 피해를 당한 아내는 각종의 임시조치로 보호를 하고, 남편에게는 형법 적용 이전에 (1) 아내에 대한 접근제한,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감명령, (3) 보호관찰, (4) 가정폭력특별법이 정하는 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5)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6)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부과하자는 안이다.

이제는 더 이상 폭력과 협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내강간의 문제를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고 국가형벌권 개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4) 강간죄의 객체 확대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강간의 개념도 문제이다. 성폭력 범죄 중 강간죄, 즉 형법 제297조의 구성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한 자”로 들고 있어 남성은 강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 법적으로는 남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똑같은 강간 피해를 당했어도 성추행 피해자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거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임신이란 무거운 짐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남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는 범행 결과의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제외한 생물학적 영향만을 고려한 것으로 비합리적이다. 이와 함께 강간의 성립요건을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삽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성기에 이물질의 삽입 등의 행위는 강간으로 규정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도 된다고 할 정도로 특수한 관계라면, 처는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도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들이 부인을 강간함으로써 자신의 폭력적 우월감을 만끽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부인을 강간죄의 행위객체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2000. 221면 참조.

67) 조국, 앞의 논문, 29면 참조.

(2) 피해자의 권리보호 강화

1)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변보호제도의 강화

대부분 성폭력피해자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 차례의 진술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고소나 신고를 기피하여 암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강화를 위하여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증인 신문의 금지, 반복 신문 등을 회피할 것이 요구되며,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그 변호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부터 피해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어 정신적·신체적으로 2차 피해를 입게 할 염려가 위에서 살펴본 사례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21조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성폭력 범죄의 조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 들이닥치는 보도진들에게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의 공개는 물론 피해 내용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와 초상권의 침해 등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겪는 부당함의 문제만큼이나 보도에서의 문제점에 관한 대응 마련도 매우 시급하다⁶⁸⁾.

68)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성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는 경찰서의 수사 서류나 법정 서류에 그의 신원이 드러나게 된다. 문제는 미디어의 사건보도에 있어서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신원이나 인적사항의 공개 여부이다. 언론에 의해 외부에 신원이 공개된 피해자는 불결한 여자로 낙인이 찍히고 성적 수취심과 보복 등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주위의 비난은 성폭력 행위 그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우며 분노를 야기하여 성폭력 피해를 더 지속화하게 된다. 표창원, “형사절차와 피해자”,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 교육』, 2003.

2) 아동·장애인 등 특수상황에 대한 배려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여성의전화가 연대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계몽 차원에서 개발한 ‘피해자 유형과 심리상태에 따른 수사상 유의점’에는 아동 피해자 진술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즉 어린이가 피해 정황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하거나, 여러 번 반복되는 질문에 다르게 표현할 경우 어린이의 특성을 감안하여 줄 것과, 장시간 진술로 인한 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녹음이나 녹화의 방법으로 검찰과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⁶⁹⁾.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제도는 공판정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또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수사절차에서도 법원의 힘을 빌려 증거를 보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아동이나 장애인과 같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과거의 기억이 잊혀질 수도 있는 피해자의 경우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비디오로 녹화하도록 하여 증거로 보전하여야 한다.

아동과 장애인의 비디오 증언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하나, 아동보호의 측면에서 증인과 피고인 간의 직접적인 대면은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⁷⁰⁾⁷¹⁾, 비디오로 녹화·녹음에 대한 증거에 대한 적극

69)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과 진료, 2000.

70) 독일 형사소송법 제58조a 【증인신문의 녹음·녹화】

(1) 증인신문은 비디오나 녹음기에 녹화·녹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화·녹음하여야 한다.

1. 16세 미만의 범죄피해자이거나,
2. 증인이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증인신문의 녹음·녹화가 실제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인 때이다.

(2) 비디오-녹음기의 사용은 형사소추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하며 실제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이 허용된다.

71) 독일 형사소송법 제255 a조 2항 【비디오-녹음테이프의 녹음의 사용】

(2)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범죄(형법 제174조부터 184c조)와 생명에 대한 범죄(형법 제211조부터 222조)에 대한 소송에서 16세 미만의 증인에 대한 신문은 공판기일전의 증인신문을 녹

적인 활용이 제기되던 바 최근(2003.11.19)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신체 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의 영상물로 촬영·보존토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수사 절차 시 영상물 촬영에 의한 증거 제도의 적극적 활용으로 피해자의 증인 신문에 대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3) 수사·공판 과정의 환경 개선

또한 최근(2003. 11.19) 개정된 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 4에 의하면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그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인 때에는 비디오 등 기타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고 하여 대질 신문에 따른 공포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형사 절차상 피해자 보호의 문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법적 또는 사실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해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의 표현으로서 피고인에게 증거를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증인 진술의 증거인정은 적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에 반하게 되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증인 신문의 조치로서, 특수 유리장치인 일방통행식 거울(one-way mirror)로 차단 조치를 하여 피해자가 대질 신문으로 인한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⁷²⁾.

화한 비디오-녹음테이프의 녹음의 사용에 의해 대체되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공판기일전의 신문과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과 함께 참여했음을 요건으로 한다. 증인에 대한 보충신문은 허용된다.

72) 이에 대해 미국의 Line-up제도는 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가 자기와 모습이 비슷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범죄를 범한 자와 동일한 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자 앞에서 모습을 보이는

4) 명예훼손, 무고 등 역고소시 성폭력 피해자 권리존중

최근 성폭력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이 가해자에 의해 명예 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역고소의 특성은 첫째, 성폭력 고소 이전에 역고소하는 경우, 가해 혐의를 부인하는 강한 수단이자 피해자들의 사건 해결 노력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행위로 악용된다. 둘째, 성폭력 고소 이후 유죄 판결 이전에 역고소하는 경우, 가해자는 수사 기관, 재판 기관에 자신의 무죄와 ‘피해’를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을 압박하여 합의 또는 협상의 카드로 악용한다. 셋째, 성폭력 유죄 판결 이후에 역고소하는 경우, 가해자는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가 ‘2중 처벌’ 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 인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제기하며 가해자에게 너그러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려 한다⁷³⁾.

역고소시 성폭력 피해 사실 여부가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데, 성폭력 피해자는 실제 성폭력 사건으로 조사받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관련법에 의거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전혀 받을 수 없으며, 피해자 혹은 고소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대부분 강압적인 조사를 받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매우 큰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명예 훼손이나 무고로 역고소 된 상황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수사, 재판을 받을 때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장치, 예를 들어 비공개 재판,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3) 피해자 지원제도 강화

1) 신뢰 관계인의 동석 제도 확대

수사상 동일성확인절차로 범인인지절차제도가 있다. 박종선, 앞의 논문, 69-70면) 참조.

73) 장임다혜,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사례발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대책회의,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2002, 7-9면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의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신뢰 관계인의 동석은 일부 범죄만이 아니라, 그 대상을 성폭력 범죄 전체로 넓혀가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리고 법 조항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다”가 아니라 “동석해야 한다”로 의무규정이 되어야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실제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면서 경찰서나 검찰청에 동행하는 경우 담당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잘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2003년 11월에 있었던 성폭력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다소 강제성을 띤 조항을 신설하고, 신청권자를 법정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신청권자의 확대 및 일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재량을 축소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라는 부분은 피해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진행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피해 대상도 여전히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정(의무화 및 적용 범위 확대)이 필요하다.

2) 증거확보 지원제도 보완

성폭력 사건은 앞서 보았듯이 물적인 증거가 남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나마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자의 정자나 체모, 상처 등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진술 증거 외에 이러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의료지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평균 2~3곳의 개인 산부인과나 종합 병원을 전전해야만 제대로 된 의료적 처치와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01년에는 <여성폭력 긴급 의료지원센터>가 전국 7개의 병원으로 지정되어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성폭력피해자전담의료기관이 264개소가 있지만, 진단서 발급이나 인공유산의 시술 등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성폭력 피해를 당한 4살 어린이가 진료 거부로 인해 35시간 동안이나 헤맨 사건이 보도된 이후, 관련 부처에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서 효율적인 의료 지원은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 및 이를 통한 증거 확보가 미비한 이유는 성폭력특별법 제33조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관계자 교육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벌칙 등이 전혀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정 병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치와 함께 인센티브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담당 의사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법정 증언을 하는 경우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면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치료를 거절하는 경우 벌칙 조항을 규정해야 한다. 의료관계자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 및 처리 방법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필요하다.⁷⁴⁾

의료지원 체계를 현실화하는 외에도 증거가 많지 않은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 기관의 노력 또한 요구된다. 최소한 피해자측이 제공하는 증거를 폐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74) 의사들이 성폭력 사건을 꺼리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담당 의사에게 법정 증언을 요구하는 점도 있다. 의사와 같은 전문가의 경우 법정 출석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성폭력 사건 전담제 실시

수사기관 내에 성폭력 피해자를 전담하는 팀(경찰, 검찰)의 도입이 필요하다. 전담 기관을 통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 특별한 시설과 장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의식과 노하우가 요구된다. 또한 전문 경찰 및 전담 검사제도가 현실화된다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외국에서는 경찰, 검찰, 시민 단체, 의료진의 각 지원 체계가 일원화되어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찰, 검찰의 전담팀과 전국 117개소의 성폭력상담소 및 12개 보호시설, 대한법률구조공단,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등의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하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과정에서도 성폭력사건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전담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피고인측 변호인에 의한 무차별적 반대 신문이 행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요구되는 사항이다. 전담 재판부가 운영되는 경우 재판 지침에 대한 개발 및 시행이 용이해질 것이다.

4) 피해자 변호인 제도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적 생활 영역에 대한 부당한 질문이라든가, 피해와는 무관하게 수취심과 당혹감을 유발하여 인격권의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의 기본 이념은 실체적진실발견과 적법 절차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 무지한 성폭력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권이 인정되어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신문받는 경우 뿐 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4)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적극적 참여권리 인정

1) 피해자의 정보권 신설

성폭력피해자는 현행 형사소송구조 하에서는 소송 당사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으나, 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 관계인으로서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사과 공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함은 당연하다. 수사과 공판에 대한 정보는 사건의 진행 과정을 숙지하게 하여 피해자 본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사건 대응을 통해 실제적진실발견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이 아닌 '알권리' 또는 '정보권'이라는 권리의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제기 혹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며,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사에게 불기소의 이유를 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공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 절차의 진행 과정, 공소 취하나 공소장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정보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 방법은 고지가 될 수도 있고, 경찰·검찰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권리의 인정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피의자·피고인의 신병과 관련된 사항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체포·구속 여부나 구속 취소, 보석 허가, 가석방, 만기 출소 등은 피해자에게 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차 진행에 대한 권리 외에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으로서 공판조서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2003년 8월 27일에 이경재 의원 외 51인이 이를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증언 내용을 조작할 우려가 있어 보충적 권리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⁷⁵⁾. 그러나 피해자는 범죄의 가장 확실한 증인이며, 범죄의 당사자이다.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에 대응하는 당사자적 위치에 있다고 볼 때 공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기록 열람권은 필수적이며, 더 이상 피해자를 증거의 대상, 소극적 증인의 위치로 파악해서는 안된다.

2) 공판절차 참여권 보장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을 통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실체적진실발견 및 사법적 정의 구현의 의미도 있지만,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라는 관점에서 피해자 치유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소추주의에 의해 검사가 피해자를 대변하는 구도이긴 하나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가 구분되고 막중한 업무량에 의해 공판검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실무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공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배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헌법은 제27조 제5항에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며 실무상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구속취소, 보석허가, 가석방, 양형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 진술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의견 진술권으로서 결정은 여전히 법원의 재량에 의하며 재량 행사에 필요한

75)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72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제공의 의미를 가지므로 재판권의 침해나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피해자의 정보권, 공판기록열람권 인정과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여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공판 절차참여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특별한 규정 없이 공개재판원칙에 의해 방청인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비공개시나 증거보전절차,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 등에는 참여의 기회가 박탈되게 되므로 명문의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단지 참여만을 인정할 뿐 진행되는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형사소송 구조와 충돌되는 부분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검사가 피해자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검사에 대한 요구권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 다만 국가소추주의의 이상이 피해자만을 대변하는 검사가 아니라 독립된 위치에서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를 대신하는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해자가 공판진행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거나 상소 여부의 결정시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등의 검사의 지위와 충돌하지 않는 권리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기타 제도의 보완

1) 친고죄 조항의 폐지 및 보완

성폭력 범죄는 여성의 정조나 순결에 흠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이다. 현재 강도, 강간, 살인, 방화 등 4개 강력범죄 중 친고죄 규정으로 남아있는 것은 성폭력 범죄 뿐이다. 이는 피해자 개인의 명예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낮은 신고율로 인해 가해자의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를 양산하는 결과에 일조하고 있다.

여성연합은 친고죄 폐지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⁷⁶⁾. ① 성폭력은 심신에 가해지는 심각한 폭력으로서 강도, 살인, 방화 등과 같은 사회적 인권 침해 행위이므로 누구라도 피해 사실을 알았을 경우 고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감추어져 왔던 성폭력 사건이 드러남으로 인해 증거 확보가 용이해지고 신속한 수사과 재판이 가능해진다. ③ 친권자(대리고소인)가 목인, 방치할 경우 고소나 법적 대응이 어려웠던 보호시설(고아원, 보육원, 장애인 보호시설)에서의 성폭력과 어린이 성폭행, 근친강간의 경우에도 믿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한 고소나 법적 대응이 쉬워진다. ④ 친고죄 폐지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허위신고에 대한 우려는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방지할 수 있다. 경찰에서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범죄자를 확인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가해자를 석방해야 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 ⑤ 친고죄가 폐지되면 당연히 고소시효기간이 없어지므로, 언제라도 용기를 내어 고소할 수 있게 된다. ⑥ 단, 친고죄 폐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폐단이 없도록 여성경찰 조사관제도 도입, 피해자 대리인 제도, 피해자 대리인의 참여 필요, 비공개수사, 재판 등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 친고죄 폐지는 남성중심적인 성문화 안에서 살아가는데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임은 분명한 현실이다. 따라서 친고죄 폐지이후 요구되는 각종 보완조치 등을 좀더 심도있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도입

현재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한 교정 프로그램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실행이 선고된 가해자들이 출소 후 피해자를 다시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 등으로 고소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강간범의 경우 초

76) <http://www.women21.or.kr/news/articleview.asp?no=258&>.

범율은 27.9%에 불과하고, 전과1범이 16%, 2범이 11.6%, 3범이 8.3%, 전과 4범 이상인 경우가 27.9%나 되고 있음을 볼 때⁷⁷⁾, 이들에 대한 교육과 교정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행히 최근에는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수강 명령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서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행위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마련되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교정교육의 대상을 전 성폭력범으로 늘리는 것에 관한 법규정과 함께 교육팀의 훈련과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성폭력특별법 개정에 성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직장내 성희롱 처벌규정의 신설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1999년에 발의되었으나 제15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되었다가 2003년 다시 국회에 발의된 <스토킹처벌에 관한특별법안>도 대부분 피해자가 여성이고 그 피해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대여성폭력 범죄행위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토킹을 규제하는 법을 성폭력특별법 개정에 포함할 것인지, 독립적으로 제정활동을 할 것인지도 같이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3) 배상명령제도의 범위확대

1981년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배상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형사절차에 민사소송을 결합시켜 피고인의 유죄여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손해배상도 같은 판결에서 판단하게 하는 것으로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법적 청구권을 형사절차에서 함께 판단함으로써 신속한 원상회복을 가능하게 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⁷⁸⁾. 그러나 배상명령제도는 실무상으로도 피해자에게 절차의 진행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신청건수가 많지 않고, 법관의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적극적

77)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2, 64면.

78) 이재상/이호중, 앞의 글, 1993, 198면 참조.

인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배상명령제도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적용법규가 없다⁷⁹⁾.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형벌법규의 법정형이 가벼움은 물론 범죄예방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공판 단계에서의 합의 중용보다는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성폭력특별법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구체화시켜야 한다⁸⁰⁾.

4)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2003년도 대검찰청에서 분석한 강간범죄의 불기소처분은 45.48%에 이르고 있다. 현행법상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이 가능한 범죄는 형법 제123조의 공무원직권남용범죄, 제124조의 불법채포·불법감금,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에 대하여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60조 제1항).

재정신청제도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형사절차법상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9)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이 폭력에 의한 상처의 치료 및 이후의 심리적 치유를 위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권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주장하면, 돈을 노리고 고소를 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통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80) 오선주/권오명, “범죄피해자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16권, 1999, 167면 참조.

2. 수사 · 공판 담당자의 인식전환

많은 여성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성폭력은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의 실질적 기반이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폭력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안드레아 드워킨, 1993; S. Griffin, 1986). 즉 성폭력은 수천년간 이어져 내려온 가부장제 문화의 기반이다. 문화란 넓게 이해하면 개인 사회성원의 사유와 행동의 기반이 되며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로부터 습득하고 전달받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일체의 것을 포괄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닌다.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도 사실은 상당 부분 형사사법절차 담당자의 성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법적·제도적 차원의 문제인 것 이상으로 문화의 문제이다. 따라서 문화로서의 성폭력이 점차 축소되고 근절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 못지않게 성 인식과 성 감수성의 변화가 중요하고 이 점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형사사법절차 담당자들의 교육문제를 살피고, 실무상 활용될 수 있는 지침의 마련 및 징계절차의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성인지적 교육의 의무화

1) 교육기관에서 법여성학의 제도화

1993년에 개최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국제 사회는 국제 인권 체제가 여성들의 삶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왔음을 시인하고, 여성의 인권이 '양도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하며 불가분한 인권의 일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UN은 성 특정한(gender-specific) 인권 침해들 역시 인권 의제의 일부임을 인정하였다. 1993년 12월 UN총회는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광범위하게 정의

하고 그것을 하나의 국제적 이슈로, 특히 하나의 성차별 이슈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995년 9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 선언 및 북경 행동강령은 여성의 인권을 핵심적 관심 영역들 중 하나로 확인하였다⁸¹⁾.

1995년 북경행동 강령은 제 201조에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기구는 정부내의 정책조정 중심부서이며 주된 과제는 모든 정책분야에 양성평등 관점을 범 정부적으로 주류화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임을 확실히 하고 있고 1995년 북경행동강령 이후 많은 국가가 양성 평등을 주류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⁸²⁾.

이와 같은 양성평등 주류화 사업은 국가의 모든 부서와 영역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따라서 법무부 및 법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의 법적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주류화 사업과 관련해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는 사회 변화의 한 흐름인 양성평등 주류화에 대해 정서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충분한 이해를 하는, 형사법 절차상의 담당자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즉 성인지적 감수성과 지식을 지니는 형사법 절차상의 담당자 양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관련 교육기관에서의 법여성학 개론의 필수화와 다양한 법여성학 과목의 전공화, 법여성학과 기존 법학 과목간의 내용적 통합 등의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이 요구되는 데는 몇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로 한국은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성폭력 발생률이 전 세계에서 2위로 높고 이는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이 양성 평등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임을 말해준다. 특히 성폭력 신고율은 2~6% 정도이므로 보고되지 않는 실제 성폭력 발생 건수를 고려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성폭력 발생 국가일 개연성이 적지 않아 성폭력 발생 축소와 근절은 한국 사회의 인권 향상에서 1차적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1) 힐러리 찰스워스, “인권개념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새로운 지구질서와 여성주의 인권』 (제3회 김옥길 기념강좌 자료집, 2003. 10. 1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3, 86-87면.

82) 김선옥, “한국 여성정책의 변화 방향”, 『지구화와 여성시민권』, 한국여성연구원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218면

둘째로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과 형사법 절차상의 담당자들이 성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소가 수행한 ‘법조인의 성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태 및 대안모색’(2003)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조사 대상 351명의 법조인들은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타당하게 이해하고 있고 성폭력 통념에 대한 수용도도 보통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통념 조사에서 ‘성폭력은 남자들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다’와 같은 몇 문항에서는 법조인들은 사회의 성폭력 통념을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판검사는 평균적 통념 수준보다 더 강한 통념을 보여주고 있다⁸³⁾. 성폭력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결정적 권한을 쥐고 있는 판검사들이 일반인의 잘못된 평균적 혹은 그 수준을 상회하는 성 통념을 보인다는 것은 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조사와 판결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바로 이러한 낮은 성인지적 인식이 성폭력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느슨하게 만들거나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책임을 돌림으로써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한 원인이 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형사법 절차상 담당자들의 성의식 변화가 없이는 소수자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법치주의 국가 기반 확충이라는 법무부의 목표는 현실화되기 요원하다고 보인다.

셋째로 여성문제는 다른 소수자 문제와 달리 남녀관계의 문제라는 점에서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매우 포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범여성학이 필수화될 필요가 있다. 즉 여성은 다른 소수자들과는 달리 전체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숫적으로는 다수인 소수자이며, 여성문제는 인구의 다른 반인 남성 자신의 변화나 남성 중심적 사회제도의 변화 없이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전(全) 사회적인 소수자 문제이다.

83) 평균적 통념을 3이라고 할 때 검사는 ‘성폭력은 남자들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는 문항에서 3.37점, 검사는 2.93점, 변호사는 2.78점을 보이고 있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다’라는 문항에서는 판사는 2.93점, 검사는 2.94점, 변호사는 2.64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조인의 성별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2003, 26면.

① 법과 대학에서 법여성학의 필수화

법조계 종사자들의 성인식의 변화를 위해 성인지적 교육이 요구되는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학부 과정의 경우, 이화여자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가 법여성학 담당 교수를 두고 법여성학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을 뿐, 다른 대학의 법대와 사법연수원, 경찰대학 등에서 법여성학은 개설되고 있지 않다. 앞에서 인용한 본 상담소 조사에 의하면 판사의 81%, 검사의 59%, 변호사의 67%가 양성평등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 중 약 80%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를 교육을 받지 못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조인들은 양성평등 교육의 보완이 필요함에는 동의하나 보완 방법으로는 필수과목 지정보다는 선택과목이나 재교육의 방식이 약 2배 정도 높은 비율로 선호되고 있다.

법여성학을 필수과목화하지 못할 경우 선택과목화하는 것도 차선이기는 하나, 이 경우 사법 시험 위주의 교육 풍토 속에서 법여성학이 지속적으로 개설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사법 시험에 법여성학 관련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등의 제도적 견인 장치가 없는 한 선택과목화는 과목 개설을 하게 하는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의 경우 대학원 과정에 법여성학이 선택과목으로 있으나, 1999년 이후 개설되지 않고 있다.

외국에서 법여성학은 약 10년 전부터 대학에 개설되기 시작하였는데, 호주의 경우 9개 대학에 강좌가 개설되고 있으며 최근에 필수화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힐러리 찰스워스, 2003(b)). 이에 비하면 한국의 법여성학 개설 현황과 논의는 국제적 추세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② 법여성학과 법학 과목의 내용 통합

'여성, 아동, 장애인, 난민, 이주노동자등 소수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정의가 바

로 서는 선진 법치국가의 기반' 구축이 법무부의 주요 목표이며 양성 평등의 주류화가 여성부 정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법 집행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법여성학 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를 말해준다. 이러한 과제의 시급성에 비추어, 앞에서는 법여성학 개론의 필수화나 전공과목화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법여성학 혹은 여성주의 법학은 여성들의 욕구, 열망 혹은 특성들을 법의 설계와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는 기존의 법학 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대안적인 여성주의적 비판 작업이다. 따라서 광의의 법여성학은 개론 과목으로의 법여성학을 넘어서는 기존의 법학 체계에 대한 대안적 가치관이나 패러다임의 성격을 지닌다. 즉 최근의 여성주의 법학자들은 법 언어와 그에 따른 법적 논증 자체가 성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합리적이고 타산적인 인간상이 전제가 되는 법 영역은 남성의 관점과 경험에 의한 것이며 그 안에서 대부분의 여성의 경험과 관점은 설자리를 잃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의 형식논리에 익숙하고 사회의 중심부에서 살고 있는 법조인들이 법의 편파성을 깨닫고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을 보기란 쉽지 않다. 지금까지 법을 만들고, 법을 적용하고, 법을 집행하는 일과 법학을 연구하는 일은 대부분 남성들이 해왔으므로 그들에게는 일에서의 원리와 실제의 경험이 상이함을 느낄 기회가 거의 없으며 그들의 기준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확신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여성학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의 성격이 있다⁸⁴⁾. 또한 법여성학은 내용상 여성 특유의 기본권의 문제, 평등 사상의 변천과 양성평등의 관계, 양성평등을 위한 유엔의 정책과 그 변천, 고용·사회보장·가정생활과 양성평등, 성이중규범과 범죄, 국제법과 성차별, 간통죄·강간죄·낙태죄와 같이 여성과 관련된 특수 형벌과 양성평등 등과 같은 포괄적 내용을 다룬다⁸⁵⁾. 이와 같은 포괄적 범위의 광의의 여성학은 주제별로 기존의 다양한 법학 과목에 통합되어 갈 때, 법여성학과 기존의 법학, 둘 다가 함께 발전해갈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법을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도 이와 같이 법학 교과들에 편재되어 기존 교과와 통합된 법여성학을 배울 때 성

84) 한국성폭력상담소, 앞의 글, 2003, 74면.

85) 윤후정/신인령, 『법여성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인지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고 성별 감수성의 변화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몇 개월에서 수 년간에 걸친 법관련 과목의 학습과정에서 법여성학 개론을 제외하고 다른 과목들에서는 법여성학적 내용을 접할 수 없는 교육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인식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같이 다양한 법학 교과목에 법여성학을 통합시키는 작업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작업 역시 여성부가 중심이 되어 양성평등 주류화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즉 관련 교육 기관들의 교과목들 속에 법여성학을 통합시키는 작업, 예를 들면 ‘법여성학 교수 워크숍’과 같은 작업을 교수들이 할 수 있도록 고무하고 견인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③ 관련 기관에서의 법여성학과 관련 과목의 내실화

2003년도 1학기에 개설된 이화여자대학교의 법여성학은 “법학도 또는 관련 전공자들에게 법여성학과 여성인권문제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게 하며 차별과 폭력, 빈곤, 소외의 대상이 되어 온 여성문제해결을 위해 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천하도록 하는 데 그 주요 목표를 둔다”고 교과 목표를 밝히고 있다⁸⁶⁾. 남녀평등 관련법의 국내외 입법 동향과 남녀차별 문제 및 여성폭력 문제와 법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런 수준의 법여성학은 예비 법학도가 사회 변화의 한 흐름으로서 양성평등의 주류화 경향

86) 학생들이 몰젠더성(gender-blindness)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여성학 이전에 여성학 과목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나, 몰젠더성이란 사회 생활에서 성(gender)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 사회적 변수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학은 사회과학 교양과목으로 법대에서도 이 과목까지 필수화하기는 제도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성학 과목의 수강은 권장 사항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법 여성학이 필수화되면 학생들 스스로 필요에 의해 여성학을 수강하리라 기대된다.

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기초 과목으로 반드시 학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대 이외에도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과 같은 성폭력 형사사법 절차상의 담당자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도 법여성학을 의무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

사법연수원의 교과과정에서 여성 관련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과정은 전체 교과과정 중 [여성과 법]과 민사법 계열의 [가족법연구]이다. [가족법연구]는 양성평등적 시각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있다. [여성과 법]은 현재의 법조문과 실제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관련사안들을 대비시킴으로써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연수생이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약 1천 여명의 전체 연수생 중 3~4%인 30~70명의 극소수만이 이 수업을 듣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여성관련 법들을 묶어 여성을 전공 계열의 하나로 분류한 뒤 그 안의 한 과목으로 재구성하는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⁸⁷⁾.

한편, 순경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는 매 기수마다 2시간씩 성폭력 관련 특강을 실행하고 있다. 10년이상 근무자를 재교육하는 경찰종합학교도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간부후보생 신입 교육과정과 경력자 기본교육과정에 '성폭력범죄 예방 및 수사 요령'이라는 주제로 3시간 강의를 배당하고 있다. 경찰종합학교의 강의 내용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중시하여 피해자의 수사상 불만 사항과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 요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비교적 성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의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⁸⁸⁾. 경찰청은 성폭력 조사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 수사관들에게 보급하고 있다⁸⁹⁾. 이러한 조처들은 그 동안 여성계의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수용되어 변화한 경찰 교육의 긍정적 면모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고정관념은 매뉴얼이나 2~3시간의 강의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미미한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자아

87) 한국성폭력상담소, 앞의 글, 2003.

88) 경찰종합학교, 『경사교육과정 - 기본교재』, 2003.

89) 경찰청,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여성·아동범죄 실무 매뉴얼」, 2002.

의 뿌리를 이루는 완고한 인식 체계이며 감수성이기 때문에, 그 완고성에 균열이 일어나고 새로운 정체성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경찰의 성교육도 일회적인 교육을 벗어나 하나의 독립 교과목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2) 민간 파트너십과 다양한 성인지 교육의 제도화

법여성학의 제도화(법여성학 개론의 필수화와 광의의 법여성학의 각 교과목에의 통합)외에 다양한 성인지 교육과 성인지 교육 환경의 구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성(sexuality, gender)과 관련한 행동, 인식, 역할 등의 변화를 하는 성인지 교육은 대상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단순히 지식 학습 위주의 교육이 아닌 특강, 소모임이나 패널 토론과 역할극, 워크숍, 게임, 사례발표, 미술 표현, 명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추구한다. 특강의 경우 강사는 영화평론가, 변호사, 여성주의 드라마 작가, 성폭력 수사경력이 풍부한 수사관, 신경정신과나 산부인과 의사 등 사회 각계에서 성폭력에 관심을 갖고 일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성폭력 문제를 다각도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일방적인 강의 위주의 교육보다도 이러한 다양한 교육 방법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NGO는 물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같은 여성부 산하 기관에서도 공무원, 시민단체 실무자, 자원 활동가, 군인 등 다양한 범주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다양한 방법의 성인지 교육을 활용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특히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성별 고정관념이 때때로 아주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좋은 측면이 때때로 여성 혹은 남성이어서 안 좋은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형성되었던 경험을 점검하고 나누면서 성고정관념으로 인한 자신의 부정적 경험이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이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몇 시간 프로그램보다는 최소한 2박3일 정도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⁹⁰⁾.

이러한 성인지 교육의 효과를 볼 때, 형사사법절차상의 담당자 교육에서도 다양한 성인지 교육과 교육환경의 구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방안의 하나로 본 상담소는 성폭력 사건 내담자의 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비정부 단체를 사법연수원의 전문연수기관으로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관이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은 사법연수원의 ‘전문분야실무수습’이 잘 설계되어 실행되면, 우리사회 안의 성불평등 문제를 인식하고 양성관계를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다⁹¹⁾.

이외에도 법여성학 과목에서 쟁점이 되는 주제나 드라마를 주고 팀을 나누어 토론을 하도록 하는 방법 등은 쉽게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역할극, 워크숍, 게임 등의 성인지 교육이 정규 교과과정의 시간 속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특강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여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창립됨으로써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성인지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위탁교육이나 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주(New South Wales)의 보건국은 <뉴사우스 보건 웨일즈 성폭력 서비스>(NSW Health Sexual Assault Services)라는 기구와 함께 <폭력방지 교육센터>(The Education Centre Against Violence)를 운영한다. 이 센터의 기능 중의 하나는 성인 성폭력과 아동 성폭력 생존자들을 조사하는 경찰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다⁹²⁾. 호주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기구들이 경찰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의 경우는 여성부와 그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90) 성인지 교육의 이러한 효과에 대한 견해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성인지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정미숙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2003. 10. 27)를 통해 정리된 것이다.

91) 한국성폭력상담소, 앞의 글, 2003.

92) <http://www.health.nsw.gov.au>

이 이런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인다.

또한 NGO들도 최근에는 ‘가해자 안되기 남성 서포터즈 운동’,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대회(speak-out day)’,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 활동’, ‘학생 성교육을 위한 교사 워크숍’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⁹³⁾.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성인지 교육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일반 시민의 성인식과 성감수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수가 성인지력이 있는 경우 이런 활동에 학생들을 참여 관찰하는 과제 등을 제시함으로써 NGO의 프로그램을 성인지 교육의 교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NGO에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검찰과 경찰 내부 교육 전산망에 성교육 전문가의 칼럼을 연재하여 언제라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성폭력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수사관의 칼럼을 연재한다던가 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성폭력 수사 경험이 10년이 넘는 한 수사관은 일간 신문의 성교육 전문가의 칼럼이 성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민감성을 지니는 데 다시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2) 2차 피해방지 지침의 보완 및 실행 방안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들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인지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2차 피해가 문제되는 것은 형사사법 각각의 전문화된 영역에서 기계적인 사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으므로 구체적인 사무처리방법의 변화도 함께 필요하다. 전문화된 영역에서의 사무처리방법은 오랜 기간을 거쳐 관행으로 굳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이의 변화를 위해서는 의식의 전환만이 아닌 관행을 대체할 정도의 새로운

93)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3년 활동 중 일부이다.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 경검찰의 지침강화 및 수사기법 개발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검찰은 수사와 공판단계 모두에서 성폭력 피해자와 접촉하므로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자체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검찰은 1999년 2월 ‘성범죄 수사 및 공판 관여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검찰총장 지침’을 발표하고 이후에도 지침의 엄중실시를 명령하였다.

검찰총장 지침은 앞서 여러 부분에서 그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크게 ‘수사 및 공판담당자의 기본자세’, ‘수사상 유의사항’, ‘공소유지상 유의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칙적인 측면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범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호소는 지침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수사담당자들에 의한 2차 피해가 가장 많이 보고된다는 점에서 지침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지침이 존재하고 상부로부터 엄중실시 명령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2차 피해가 여전히 많은 것은 지침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과, 2차 피해는 특별한 행위로 인한 가해라기보다는 수사관행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수사관행을 대체할 수사기법이 고안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대외적인 지침발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침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민원 또는 진정을 받아들이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⁹⁴⁾를 하여 지침준수에 강제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남성중심

94) 검사징계법 제2조 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를 행한다.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적 수사관행을 대체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수사기법을 연구·도입해야 한다. 법무연수원에서는 미국, 영국 등의 수사기법 또는 지침을 번역한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나⁹⁵⁾ 외국의 사례만이 아닌 우리의 사정에 맞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하며 그것이 실무상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변호사 윤리규정의 강화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되어 공판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만 2차 피해가 문제된다.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다는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경우 성폭력 통념에 기반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및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게 된다.

변호사는 보통 피고인의 대리인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변호사법 제1조⁹⁶⁾와 변호사 윤리규칙 제1조⁹⁷⁾에 의하면 피고인을 대리하면서도 인권보호를 위한 공익적 책무를 가지며 특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것은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74조는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중복신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⁹⁸⁾.

95) 아동 및 취약하거나 위협받고 있는 증인을 위한 지침, 성폭력 피해자 조사기법, 아동증인의 조사지침 등.

96) 변호사법 제1조 제1항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97) 변호사 윤리규칙 제1조 제2항 변호사는 인권사상에 투철하고 양심과 용기로써 그 사명완수에 진력하여야 한다.

98) 제74조 (증인신문의 방법)

①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그러나 형사소송규칙 제74조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위반에 대한 뚜렷한 제재방법이 없고 단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근거하여 신문을 금지할 수 있을 뿐인데 실무상 그 경계가 모호하여 특별한 제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변호사윤리규정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데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에 대한 징계⁹⁹⁾를 해야 한다. 지침의 마련과 징계는 변호사 협회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만약 변호사 협회가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여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변호사의 공익성과 윤리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3) 성폭력사건 공판진행 예규의 마련

국가는 기본권보장의무¹⁰⁰⁾가 있으며 따라서 판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공판정에서 피해자를 존중하고, 부당한 증인신문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다만 피고인의 권리 역시 보호해야 하며, 두 가지 권리의 조화를 꾀하고 형량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원칙¹⁰¹⁾에 의해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야 한다. 따라서 다른 형사사법담당자들과는 달리 2차 피해와 관련된 지침을 만들고 위반시 징계를 가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과 판사의 직무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99)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 생략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회 또는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전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0) 헌법 제10조 2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01)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러나 지침은 일반적으로 경직된 행동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원칙의 확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판사의 경우 위반시 징계처리를 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대법원은 이미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이라는 재판예규¹⁰²⁾를 만들어 법정에서의 자세, 언어, 복장, 증인신문 방법, 변론절차, 증거제출, 양형, 선고 등 재판의 전과정에 대해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판진행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재판예규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사건에 대한 판단을 강제하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법원의 형평성 있는 결정을 유도하고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 지향할만한 목표를 정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예규에 준하여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증인신문 방법’에 대한 재판예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102) 제정 1994.2.16 재판예규 제378호 개정 1999.10.29 재판예규 제745호(제일 94-1)

제 6 장 결 론

1990년대 이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의 참담한 현실은 존재하되 성폭력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와 성폭력을 사회 여론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을 위한 법적인 토대는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의 획기적 감소는 관찰되지 않고 한국은 세계 2위의 성폭력 천국이 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통념들이 우리 사회에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통념은 형사사법 담당자들에게서도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바, 이로 인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성차별적 관행과 같은 2차 피해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2차 피해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문제제기와 연구들이 쌓이면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입는 2차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여성운동계, 학계, 형사사법계에 걸쳐 폭넓게 형성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공감의 바탕 위에서 성폭력 피해 상담 사례들과 피해자 심층면접을 분석하여 2차 피해의 실태를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형사사법 절차상 2차 피해 발생의 맥락이 되고 있는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과 태도 및 법·제도상의 미비점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수사·공판 담당자들은 사회 일반의 가부장적 성 통념과 다르지 않은 생각과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즉 수사·공판 담당자들은 ‘성폭력은 사적인 문제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유발시킨다, 이른바 성폭력이라는 것들의 대부분은 동의된 성관계이다, 대부분의 성폭력 피고소인은 성폭력 범죄자가 아니고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다’와 같은 통념들을 갖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식의 부적절한 증인 신문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사·공판 담당자들의 통념과 태도는 피해자의 인권, 증거확보,

정보권 등을 보장하거나 지원하는 법·제도의 미비함과 결부되어 2차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다.

2차 피해에 대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법·제도의 개선점과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및 피해 방지 지침의 보완과 그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먼저 법·제도의 개선점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제안하였다. 성폭력 범죄는 현재와 같이 나열식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변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아동·장애인 피해자를 배려하여야 하며 수사·공판과정의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시에도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확대시키고 피해자 변호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피해자 지원제도와, 공판조서열람청구권이나 공판참여권과 같은 적극적 참여권에 대한 인정이 요구된다. 그 밖에 친고죄 폐지,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배상명령 제도 및 재정신청 제도 적용 확대 등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의 의무화와 2차 피해 방지 지침의 보완 및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첫 번째 제안인, 성인지 교육의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담당자의 인식 전환은 담당자를 양성하는 제도적 교육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담당자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에서 법여성학의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성인지 교육의 의무화의 두 번째 방안으로는 민간 파트너십과 다양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이미 현재 미약하나마 맹아적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각 교육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법여성학의 제도화 보다는 좀 더 조속히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두 번째 안으로 2차 피해 방지 지침

의 보완 및 실행 방안이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경·검찰의 지침 구체화 및 수사 기법 개발, 변호사 윤리규정의 강화, 판사의 공판 진행 예규의 마련이라는 안들을 중심으로 제안되었다.

이제까지 2차 피해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본 연구는 다른 어떤 연구들보다도 철저히 성폭력 피해 현장의 소리를 대변하였다. 즉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약56백 여 건의 2차 피해 호소사례 검토와 심층면접이라는 성폭력 피해자의 체험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수행되었고, 그만큼 예방과 대책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제안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성폭력 2차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여성계와 형사사법계의 폭넓은 공감대에서 가능하였다. 이 연구에서 피해자 체험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대안이 제시된 만큼, 이 연구가 앞으로 2차 피해를 축소하고 근절해가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가는 작업으로 나아가는 데 징검 다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작업은 아직까지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성폭력 관련법의 기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권위가 공고해지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작업은 여성들에게는 법적 가부장성의 변화, 양성 우호적인 법 질서의 확립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여성계와 형사사법계는 그동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보완의 과정에서 받아시킨 여성계와 사법계와의 공조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고 질적으로 성숙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I. 국내 문헌

1. 단행본, 자료집

- 강은영, 『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경찰수사보안연수소, 「여성폭력예방 수사과정」, 2003
- 경찰청, 「아동학대사건처리- 경찰관용 매뉴얼」, 2002
- _____,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여성·아동범죄 실무 매뉴얼」, 경찰청, 2002
- _____, 『2003 경찰백서』, 2003
- _____, 「경찰혁신을 위한 여경발전방안」
- _____,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여성·아동범죄 실무 매뉴얼」, 2002
- 경찰종합학교, 「경사교육과정 - 기본교재」, 2003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길라잡이 경찰편」, 2002
- _____, 「공보 제4호」, 국가인권위원회, 2003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관한 연구」
- 국회인권포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정책 심포지움 자료집 아동학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1999
- 김문현·박은정·신인령·이용식·홍정선 편저, 「법과 사회정의」, 이화여자대학교, 2000
- 김순진·김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도서출판 학지사, 2000
- 김우룡·정인숙, 「현대 매스미디어의 이해」, 나남출판사, 1995
- 대검찰청, 「범죄 분석」, 2003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용역 연구보고서,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성폭력범죄에 관한 판례연구」, 여성특별위원회 정책자료 99-17, 1999

- 대한법률구조공단, 『각국의 법률구조제도 현황』, 1997
- 문국진, 『아는 사람아 전해주렴』, 동아일보사, 1995
- 문성제, 『현대여성과 법률』, 법문사, 2002
- 미야자와 고이치, *Einführung in die Viktimologie*; 장규원 역, 『피해자학입문』, 길안사, 1999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2
- 사단법인 또하나의문화, 『글로벌 시민교육 매뉴얼 및 자료집』, 2001
- _____ , 『글로벌 시민교육 매뉴얼 및 자료집』, 2002
-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자료집, 『침묵에서 외침으로』, 1994
- 성폭력역고소 대책위원회, 『성폭력가해자에 의한 대구 명예훼손재판 분석토론회 자료집』, 2003
- 손봉호, 『고통받는 인간:고통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심영희,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출판, 1993
- _____ ,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1998
- 안드레아 드워킨, 『신에게는 딸이 없다』, 이혜경 옮김, 동문선, 1993
- 여성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기능·역할 강화방안』, 2002
- _____ , 『남녀차별 개선활동과 향후과제』, 여성부, 2003
- 여성특별위원회, 『알기쉬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특별위원회, 1999
- 윤후정/신인령, 『법여성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 이원숙, 『성폭력과 사회복지』, 강남대출판부, 1998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 _____ , 『형법각론』, 박영사, 2001
- 이태수, 『개정아동복지법의 고찰』, 2002
- 장(운)필화, 『여성체험의 공통성 여성 몸 성』, 또 하나의 문화, 2000
- 정무장관(제2)실, 『정책자료 9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

- 정진수, 『아동 증언에 관한 연구』, 한구형사정책연구원, 2000
-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3
- _____,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사
람생각, 2003
- 천대운, 『성희롱정책: 이론과 실제』, 선학사, 1999
- 치안연구소, 「치안정책 학술세미나 자료집」, “경찰개혁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2000
- _____, 「치안정책 학술세미나 자료집」, “역동적 치안활동을 위한 시민과 경
찰의 역할”, 2002
- 프랜시스 하이덴슨, 이영란 역, 『여성과 범죄』, 나남출판, 1994
- 한국성폭력상담소,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한국성폭력상담소, 1992
- _____,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2주년 기념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
소, 1993
- _____, 『안전한 어린이, 건강한 서울, 건강한 어린이, 어린이성폭력에
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서울특별시, 한국성폭력상담소, 1995
- _____,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성폭력특별법 적용실태와 개
정방안』, 한국성폭력상담소, 1996
- _____,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기념 세미나 자료집 - 국내외 성
폭력 연구동향 및 지원체계』, 한국성폭력상담소, 1997
- _____, 『영업직 여성을 위한 성폭력예방지침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일
하는 여성』, 한국성폭력상담소, 1998
- _____, 『성폭력사건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경찰간담회』, 한국성폭력
상담소, 1999
- _____,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 _____, 『성폭력에 관한 법률지침서』, 한국성폭력상담소, 2000
- _____,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것들』,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 _____ ,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 _____ , 「법조인의 성별의식과 양성평등교육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3
- _____ ,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 서포터즈 컨퍼런스 자료집-남성적 관계와 성문화에 대한 성찰」, 2003
- _____ , 「한국 여성의 전화,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교육」, 한국 성폭력상담소, 2000
- _____ , 「가정폭력·성폭력 연계체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2001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모교육 자료집 - 아동성학대와 교사의 대처」,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2001
- _____ , 한국아동권리학회·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학대사례개입의 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2003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복지관계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0
- _____ , 「성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2
- _____ , 「성폭력상담의 실제」, 한국여성개발원, 1995
- _____ , 「99연구보고서 210-23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인권운동사」, 동녘, 2001
- 한국인간발달학회, 「성폭력의 사회·심리·법률적 조명, 제3회 한국인간발달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1996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 _____ , 「성범죄 연구보고서 89-04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1989
- _____ ,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1989
- _____ ,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성범죄연구 1, 1990
- _____ , 「제5회 형사정책세미나 자료집, 범죄와 피해자 자료집」,

1991

- _____ ,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1991
- _____ , 『1회 워크숍 자료집, 가정파괴범죄에 관한 연구』, 1992
- _____ , 『2000년도 법무부 용역과제 신종 성폭력 연구-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을 중심으로』, 2000
- _____ ,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2000
- _____ , 『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2000
-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공동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 및 후유증』, 200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1994), Washington D.C. 이근우외 역,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 하나의학사, 1995.
- Estrich Susan, *Real Rape*, 1986; 이영난역, 『진짜강간』, 교육과학사, 1993
- Firestone Schulamith, *The Dialectic of Sex.*, 1970; 김예숙 역, 『성의 변증법』, 풀빛, 1983
- Georges Vigarello, *Histoire du viol*, 1998; 이상해 역, 『강간의 역사』, 당대출판사, 2002
- G. 볼스, R. D. 클레인, 정금자 역, 『여성학의 이론』, 을유문화사, 1986
- M. 푸꼬,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 출판, 1994
- S. 하딩, 페미니즘과 과학, 이재경, 박혜경(공)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 Sarsby Jacqueline, *Romantic Love and Society*, Penguin,1983; 박찬길 역, 낭만적 사랑과 사회, 이데아 총서, 민음사, 1985

2. 논문

- 곽영숙, “성학대를 경험한 소아청소년의 후유증에 관한 정신의학적 연구”,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 및 후유증』,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2000

- 구수경, “성폭력특별법에 관한 여성학적 고찰”, 『부산여대여성연구논집』, 1993
- 권기선, “피해아동의 초기진술 증거자료 확보방안”, 아동학대사례개입의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아동권리학회,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3
- 권수현, “남성성과 성폭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8
- 김상희, “가정과피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회 워크샵, 1992
- 김선영,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9
- 김선옥, “한국 여성정책의 변화 방향”, 『지구화와 여성시민권』, 한국여성연구원 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 김성돈, “우리 나라 피해자학의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 김시형·김영정·목소희·안수진, “Delete! 사이버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 2001
- 김용세, “일본 피해자학의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 김원홍, “경찰혁신을 위한 여경인적자원 활성화 방안”, 경찰청 57주년 여경찰설기념세미나, 2003
- 김일수, “원상회복의 형사제재로서의 의미와 기능”, 『피해자학연구』 제2호, 한국피해자 학회, 1993
- 김현수, “가부장적 테러와 수치심의 심리전”, 『페니스 파시즘』, 개마고원, 2001
- 김현영, “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 김현정, “아동성학대와 교사의 대처”,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모교육, 2001
- 남정현, “한국에서의 강간”, 『정신건강연구』 제9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1990

- 노성호, “호주의 피해자학 동향”,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 노정연, “성폭력사건의 법적 처리 및 대처방안”, 「가정폭력·성폭력 연계체계 활성화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1
- 류미진, “여자경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57주년 여경찰설기념세미나, 경찰청, 2003
- 류전철,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 피해자학회, 2000
- 문국진, 경찰청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성폭력특별법 적용실태와 개정방안, 한국성폭력상담소, 1996
- 박강우, “프랑스 피해자학의 생성과 발전”,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 박경식, “스토킹 : 새롭게 인식되는 범죄 행위”, 경찰대논문집, 1999
- 박계현, “성폭력 수사 시 요구되는 진료기록-가정폭력·성폭력에 있어서 폭력의 법적 의미”, 「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의료진 워크숍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서울여성의 전화, 2000
- 박금자, “어린이 성폭력 사건 수사 개선 방향”, 여성범죄 수사상 문제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단체 간담회,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2003
- 박미숙,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보호”,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 박미옥, “성폭력 사건의 수사절차”, 경찰과 함께하는 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워크숍, 2001
- 박선미, “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9
- 박순주,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6
- 박은정, “여성주의와 비판적 법이론”, 『현대법철학의 흐름』, 법문사, 1996
- 박일환, “양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고려”, 『피해자학연구』 제2호, 한국피해자학

- 회, 1993
- 박철현, “캐나다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 박혜경,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결혼과 사랑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사학위논문, 2000
- 백광훈, “사이버스토킹과 그 처벌법규 및 문제점”, 형사정책연구소식 63, 2001
- 변혜정, “성폭력 의미 구성과 여성의 차이”, 『섹슈얼리티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편, 1999
- _____, “성폭력예방과 여성의 성적 건강권”, 『여성건강』 제1권 2호, 대한여성건강학회, 2000
- 서명선,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현황과 과제”, 『여성상담과여성복지』, 여성의전화, 1996
- 서보학,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소은희, “성폭력피해자 후유증 및 특징”, 경찰과 함께하는 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워크샵, 2001
- 송광섭,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 강화”,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 송영옥, “아동증언의 현주소”, 『아동증언 Interviewer기초과정』, 한국아동·청소년권리안전센터, 2003
-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제13호, 한국 여성연구소, 2001
- 신의진, “성폭력피해 후유증 성인 진료시의 유의점”, 『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의료진 워크샵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서울여성의전화, 2000
- 심영희, “몸의 권리와 성관련법의 개선안”, 『한국여성학』 제11집, 한국여성학회, 1995
- _____, “성폭력 성희롱 관련법의 내용과 예방대책”, 『충남대학생생활연구』, 2000

- 심희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자화의 최소화 방안”,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발표논문」, 여성부 주관, 2000
- _____, “아동 성추행·성학대의 수사와 재판의 실태와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간담회
- 안동준,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5회 형사정책 세미나 자료집」, 1991
- 안동현, “성폭력피해 아동의 정신과 치료시의 유의점”, 「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의료진 워크숍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서울여성의전화, 2000
- 안동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국회인권포럼, 정책심포지움 아동학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자료집」, 1999
- 안수진, “스토킹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 엄연수, “로맨스 문화를 통해 본 여고생의 성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6
- 오재환, “피해자학의 위치와 전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5회 형사정책 세미나 자료집」, 1991
- 원형섭, “법적 증거물 채취와 진단서 발부에 관해”, 「가정폭력·성폭력 연계체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1
- _____,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기 치료와 지속적 치료의 필요성과 대안 모색”, 국가인권위원회 간담회, 2003
- 유선영, “성희롱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신문과 방송』 7월호, 1994
- _____, “성범죄 보도가 구성하는 여성신화”, 김명혜·정기현·유세경 편, 『대중매체와 성의 정치학』, 나남출판사, 1999
- 윤혜정,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 윤혜미, “아동보호서비스(C.P.S)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2회 세미나 자료집」, 1994

- 이갑수, “성폭력범죄 수사와 입법론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공안행정』
- 이경미, “성의자율성과 순결이데올로기: 20대 여성의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 _____, “성희롱 속에 감추어진 강요된 침묵 건드리기”, 『샘이깊은 물』 4월호, 1999
- 이경자,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10권 제4호, 한국여성개발원, 1992
- 이경재, “영국피해자학의 발전과정과 그 주요동향”,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 학회, 1998
- 이금형, “경찰의 연계사례”, 『가정폭력·성폭력 연계체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1
- 이명선,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9
- 이명숙, “아동학대사례개입의 법적·제도적 검토”, 아동학대사례개입의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아동권리학회,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3
- 이미경,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피해 최소화 방안”,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여성부·법무부 공동주최, 2002
- _____, “우리나라 여성폭력 추방정책 수립과정의 문제점”,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기념 긴급토론회: 여성폭력추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주최, 2002
- _____, “성폭력피해 생존자들의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2차피해의 문제”, 여성범죄수사상 문제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단체 간담회,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2003
- _____, “성폭력피해 어린이 진술 1회만 하여야”, 『법나들이』, 법제처, 2003
- _____, “성폭력특별법 개정운동을 다시 시작하며”, 한국여성단체연합 2003년 인권위원회 집담회자료

- _____, “토론 :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피해 생존자의 권리 존중”,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기획, 조국(편), 사람생각, 2003
- _____, “성폭력 역고소, 강력한 대처를!”, 「성폭력가해자에 의한 대구 명예훼손재판 분석 토론회자료집」, 성폭력역고소 대책위 대구 여성의전화 특위, 2003
- 이배근,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학대예방대책”, 『한국의 아동복지법』, 2002
- 이백수,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성폭력특별법 적용실태와 개정방안」, 1996
- _____,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내부자료, 2001
- 이상덕, “성폭력특별법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이상돈, “성찰적 법 여성주의-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법철학』, 2003
- 이선경, “아동증언을 위한 환경만들기”, 「아동증언 Interviewer기초과정」, 한국아동·청소년 권리안전센터, 2003
- 이순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근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 이승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범죄”, 「한국법률가대회 발표문」, 2000
- 이영자, “성일탈과 여성”, 『한국여성학』 제 5집, 한국여성학회, 1989
- 이재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5회 형사정책 세미나 자료집」, 1991
- 이재연, “아동증언 인터뷰에서 겪는 어려움”, 「아동증언 Interviewer 기초과정」, 한국아동·청소년권리안전센터, 2003
- 이호균, “아동증언 인터뷰어는 왜 필요한가”, 「아동증언 Interviewer 기초과정」, 한국아동·청소년권리안전센터, 2003
- 이호중, “강간범죄와 형사사법적 통제”,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6호, 1991
- _____,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지원- 피해구조와 배상적 화해의 간극”, 『피해자

- 학 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 장규원, “독일피해자학의 발전과정”,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
- 장명숙, “여성장애인전문성폭력상담소에서 바라본 성폭력특별법”, 여연 2003년 인권위원회 집담회 회의자료
- ____ 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의 모색”, 『여성학논집』 제11집, 1994
- ____,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여성학적 시각에서, 『여성학논집』, 1990
- 장임다혜,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사례발표”, 민변 여성위원회,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대책회의,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2002
- 장혜경,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서울지방경찰청 여성대책자문회의 발제 자료」, 2003
- 장화정, “아동증언을 위한 Interview 기법”, 「아동증언 Interviewer기초과정」, 한국아동·청소년권리안전센터, 2003
- 전희경, “KBS노조간부 성폭력 사건의 여성인권 쟁점들”, 『성폭력을 다시 쓴다: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한국여성의전화 엮음, 2003
- 정경자, “피임광고를 통해서 본 성문화 일고찰”,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0
- ____, “성폭력 피해현황과 그 대책”, 『피해자학연구』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1993
- 정진수, “법 체계상에서의 아동 증언의 위치”, 「아동증언 Interviewer기초과정」, 한국아동·청소년권리안전센터, 2003
-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 ____, “형사법체계와 성폭력관련법률”, 여연 2003년 인권위원회 집담회 회의자료, 2003
- 정희정, “아동증언을 위한 관계형성 기법”, 「아동증언 Interviewer기초과정」, 한

- 국아동·청소년권리안전센터, 2003
- 정희진, “아내폭력’ 경험의 성별적 해석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조국, “ 성주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범죄”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2호, 2001
- ____,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대책회의 토론회, 2002
- ____,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취약집단의 보호”,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주최 토론회, 2002
- 조순경 외, “여성노동과 성적통제”, 『한국여성학』 제5집, 한국여성학회, 1989
- 조주현, “근친강간에 나타난 성과 권력”, 『한국여성학』 제9집, 한국여성학회, 1993
- ____, “낭만적인 사랑과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김정희 외, 현실문화 연구, 1993
- 조중신, “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조사상 유의점”, 『법무연수원 제1기 검찰수사과학회 세미나자료집』, 2003
- ____, “아동성폭력 피해에 대한 조치”, 국가인권위원회 간담회, 2003
- ____, “아동성폭력 피해 실태”, 법무연수원 여성관련범죄 수사실무반 직무교육, 2003
- ____, “형사상 수사과정에서의 성폭력피해자 2차피해”, 서울시경 여성담당수사관 직무교육, 2003
- 진수명,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8호, 2000
- 천근아, “아동의 충격적 경험에 대한 의학적 해석”, 『아동증언 Interviewer기초과정』, 한국아동·청소년권리안전센터, 2003
- 최병각, “피해자의 형사절차 활용방안”,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 최석윤, “미국에서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 최석운, “피해자와 형법상의 결과불법”,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 최영애,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2000
- _____,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및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 최인섭, “범죄피해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5회 형사정책 세미나 자료집』, 1991
- 최희경, “미국헌법상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법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1
- 캐서린 매किन, 엄용희 역, “강간 : 강요와 동의에 대하여”,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2001
- 표창원, “대여성범죄 경찰정책 및 제도적 개선 방향”, 경찰과 함께하는 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워크샵, 2001
- _____, “형사절차와 피해자”,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 교육, 2003
- 표창한, “함께가는 여성”, 『겨울호』, 한국여성민우회, 2001
-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 연구』 제3호, 한국피해자학회, 1994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폭력문화와 폭력성 범죄”, 『제4회 형사정책 세미나 자료집』, 1991
- 허라금, “서구 정치사상에서의 공사개념과 가부장적 성차별성”, 여성학논집 13, 1996
- 힐러리 찰스워스, “인권 개념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새로운 지구질서와 여성주의 인권』 (제3회 김옥길 기념강좌 자료집, 2003. 10. 1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 “호주법과대학에서의 법여성학 교육”, 이화여대 법과대학 젠더법

- 학연구센터 학술강좌(2003. 10. 16)
- A.Karmen, 조병인역, “피해자 비난론 대 피해자 옹호론”, 『피해자학연구』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1993
- A. W. Burgess & L. L. Holmstrom, *Rape Trauma Syndrom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74 ; 조은경, “강간피해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3호, 1994
- Du Bois Barbara(1983), “열정적인 학문: 여성해방주의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가치, 인식과 방법에 관한 소고”, Bowles Gloria and Klein Renate(ed.). *Theories of Women's Studies*, Routledge and Kegan Paul: London, Boston and Melbourne.
- H-H, Kuhne, “유럽에서의 범죄피해자 공공보상제도”, 피해자학연구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1993
- LONI PAYNE, KARIN SMALL, “아동학대범죄 과학적 수사기법에 대하여”, 경찰청 57주년 여경창설기념세미나, 2003
- 藤本哲也, “일본 형사사법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학연구』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1993

3. 회의자료

- 강지원, 영국 진아사건 기자회견 자료, 2003, 6. 5
- 경찰청, 범죄피해 아동 진술녹화 관련 감담회 회의자료, 2003. 5. 7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아동대책 자문위원회 회의 서류, 2003. 9. 3
-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 성명서, 2003. 7. 15
-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간담회 자료, 2003. 6.27
- 법무부, 수사절차상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T/F 구성 및 운영방안, 회의자료, 2003.

- _____,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범죄 수사상 문제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단체 간담회, 2003. 2. 27
- 서울지방경찰청 방법부, 여성대책자문위원회 2/4분기 정기회의 회의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여성대책자문위원회 자료, 2003. 6
- 여성부, 여성부의 여성폭력방지 대책 회의자료, 2002, 12. 5
- _____, 남녀차별에 대한 직권조사 과제발굴을 위한 간담회 자료, 2003. 5. 7
- _____, 아동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회의 자료, 2003. 5. 26
- _____,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활성화 회의자료, 2003. 7. 8
- 인권위원회, 2003년 인권위원회 집담회회의 자료, 2003. 6. 13
-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문회의
- 청소년보호위원회, 신상공개 합헌 결정문, 2003. 6. 26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관련 범죄의 처벌에 대한 해설, 2000
- _____,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보도자료, 2003. 7.7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원 보수교육 계획 자문회의 자료, 2003. 9. 4

4. 신문기사

- 부산일보 '성폭력 이대론 안된다' 기획기사 시리즈 ⑤ 협박, 회유에 시달리는 가족
2003. 10.
- 문화일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색, 2003. 6. 9
- 연합뉴스, 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 결정, 2003. 6. 26
- 중앙일보, 2003. 10. 30.

5. 기타 참고자료

- 한국성폭력상담소(2001), 상담일지

- _____ (2002), 상담일지
- _____ (2000), 상반기 토법일지
- _____ (2001), 상반기 토법일지
- _____ (2002), 상반기 토법일지
- _____ (2003), 상반기 토법일지
- _____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심층 인터뷰
- _____ 고소장, 항고장, 재항고장, 진정서, 탄원서, 의견서, 판결문, 항소이
유서
- _____ (2003), 경찰 통념조사표 1000부
- _____ (2003), 법조인 성인식 · 성평등의식 설문조사 통계

II. 외국 문헌

Abraham P. Ordovery, "Admissibility of Patterns of Similar Sexual Conduct: The Unlamented Death of Character for Chastity", 63 Cornell L. Rev. 90, 96-102, 1997

Amnesty International, *SIERRA LEONE: Rape and other forms of sexual violence against girls and women*, AFR 51/035/2000 29 June, [cited 2003. 9], <http://web.amnesty.org/library/Index/ENGAFR510352000?open&of=ENG>

_____, Broken bodies, shattered minds: Torture and ill-treatment of women, Amnesty International Publications, 2001. [cited 2003. 9]. <http://www.amnesty.org>

_____, *Liberia: Killings, torture and rape continue in Lofa County*, AFR 34/009/2001 1 August 2001. [cited 2003. 9]

<http://web2.amnesty.org/library/Index/engAFR340092001?OpenDocument&of=COUNTRIES\LIBERIA?OpenDocument&of=COUNTRIES\LIBERIA>>

_____, *PHILIPPINES: Fear, shame and impunity: Rape and*

sexual abuse of women in custody, March 2001, ASA 35/001/2001 [cited 2003. 9]. <http://www.amnesty.org>

_____, *UNITED KINGDOM: Decades of Impunity: Serious Allegations of Rape of Kenyan Women by UK Army Personnel*, EUR 45/014/2003 2 July 2003, [cited 2003. 9].

<http://web.amnestv.org/library/index/ENGEUR>

Bartky Sandra Lee, Irene Diamond & Lee Quinby, eds. *Feminism and Foucault: Reflections on Resistance*.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8

Barry Rosenfeld, *Assessment and Treatment of Obsessional Harassment*, *Aggression and Behavior* 5(6), 2000

Benson, Donna J. and Gregg E. Thomson, *Sexual harassment on A University Campus*, *Social Problems* 29, 3, 1982

Beverly J. Ross, *Does Diversity In Legal Scholarship Make a Difference?: A Look At the Law of Rape*, 100 *Dick. L. Rev.* 795, 808-810, 1996

Cristian-Smith, K. Linda, *Romancing the Girl: Adolescent Romance Novels and Construction of Femininity*", in *Becoming Feminism: The Politics of Popular Culture*, Roman & Cristian-Smith(eds.), London: Falmer, 1988

Cristian-Smith, *Becoming a Woman Through Romance*, NewYork: Routledge, 1980

Eke Angela Wyatt, *Stalking offences and victim impact in a forensic sample of Ontario stalking survivors*, York University in Canada, 1999

Griffin, Susan, *Rape the Politics of Consciousness*, San Franxcio: Haper & Low, 1986

Holland & Eisenhart, *Educated in Romance: Woman, Achievement a n d College Culture*,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Morrison Morrey, *When Will We Be Believed? Rape Myths and the Idea of a Fair Trial in Rape Prosecutions*, 24 *U.C. Davis L. Rev.* 1013, 1058-1059,

1991

- Jackson Stevi, *Women and Heterosexual Love: Complicity, Resistance and Change*, In *Heterosexuality in Question*, Jackson, Stevi (ed.), Sage Publication, 1999
- Kevin S. Douglas and Donald G. Dutton. , *Assessing the link between stalking and domestic violence*, *Aggression and Behavior*, 6(2001)
- MacKinnon Catherine A, *Toward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Havard University Press, 1989
- _____ , *Only Words*, HarperCollins Publishers Ltd, 1994
- Menachem Amir, *Patterns in Forcible Rap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 M. Hester & L. Kelly, *Women, Violence and Male Power*, 1996
- Michelle R. Mccauley, Janat Fraser Parker, *Inter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The Internaational Journal*, 2001. April.
- Sanday. Peggy R, *The Socion-cultural Context of Rape;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37. No. 4(1981)
- Susan Brownmiller,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1975
- Russell. Diana E. H, *Sexual exploitation : Rape, child sexual abuse workplace harassment*,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84
- Violence Against Women Grants Office(VAWGO),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The Second Annual Report to Congress under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1997
- _____ (VAWGO), *Stalking and Domestic Violence: The Third Annual Report to Congress under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1998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and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NIJCOC), *Stalking in America: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1998

_____(NIJCOC), *Extent, Nature, and Consequenc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2000

부 록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상

2차 피해 공판절차 모니터링 체크리스트¹⁰³⁾

사건번호		재판부	
기 일	(차) 공개 · 비공개	작성자	

1. 증인 신문에 앞서

a. 피해자가 법정에서 출석할 때 다음의 증인보호조치^(특강7, 특신13, 성폭20)[법조문참조]가 있는가?

(Y- / N- ⇨ 비교)

(1) 들어올 때 별도 출입문 사용

⇨
나갈 때

⇨
(2) 법정경찰의 보호(동행 등)

⇨

b. 비공개심리 및 피고인 배제, 신뢰관계 있는자 동석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성폭22, 특신11, 형소297, 성폭22의2)[법조문참조]

(1) 비공개심리가 진행되지 않을 때, 밑의 인터뷰 ①-④에서 확인
(비공개 · 공개)

103) 이 체크리스트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법정지원팀에서 2003년에 개발한 것이다.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실제 상담활동 및 법정지원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며 체크의 용이를 위해 증인신문 전과 증인신문 과정으로 항목을 나누고,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법정지원팀은 성폭력 사건의 공판과정에 참여하면서 공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모니터링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데, 개별 사건에 대한 균형있는 판단을 위해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있다. 2003년 하반기에 개발하여 현재 시범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 공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현황을 통계화할 예정이다.

- (2) 피고인 등의 퇴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밑의 인터뷰 ①-㉔에서 확인
(퇴정 · 직접)
- (3) 신뢰관계 있는자 동석여부, 밑의 인터뷰 ①-㉔에서 확인
(동석 · 단독)

c. 기타 _____ (Y-☐ / N-☒ ☞ 비교)

(1) 법원 내 장애인시설 완비

☞

(2) 증인대기실 등으로 쓰일 수 있는 장소 구비

☞

2. 증인 신문 상

[공판과정 상 부적절한 증인신문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와 무관한 내용으로서

유형1.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함

☞ 피해자의 품행, 평판, 직업(성매매 업소) 및 성관계 이력 등을 질문

유형2.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

☞ 충분히 반항하였는지 재차질문

유형3. 기타 인격침해성

☞ 삼입시간 · 삼입 시 느낌 · 사정하였는지 여부 질문

참고문헌 -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pp98~102, 박영사 2003

a. 신문의 내용 (형소299, 형소규칙74, 77)[법조문참조] (Y-☐ / N-☒ ☞ 비교)

(1) 논점(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수치심 유발 또는 비난조 질문하지 않는다

판사

☞

피고측 변호사

☞

검사

☞

b. 피해자 인격 보호를 위한 노력 (Y-☐ / N-☒ ☞ 비교)

(1) 피해자에게 경어를 사용한다

- 판사
- ☞
피고측 변호사
- ☞
검사
- ☞
(2) 추궁하거나 위협적인 태도 보이지 않도록 신경쓴다
판사
- ☞
피고측 변호사
- ☞
검사
- ☞
(3) 수치심 유발 여지있는 질문있을 때 적극 제지 (형소299)[법조문참조]
판사
- ☞
피고측 변호사
- ☞
검사
- ☞
(4) 그만큼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판사
- ☞
검사
- ☞
c. 기타
- [공판정 내 진술권] 피해자 진술을 끊는 경향이 있다
(헌27, 형소294의2②)[법조문참조]
- ☞
[절차지연]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지 않는다
(시간끌기, 기일 불출석 등으로, 특히 피고측 변호사)

☞ [실효성 확보] 검사는 증인신문 등에 대한 재판장의 처분에 이의제기를 한다
 (형소304, 형소규칙136)[법조문참조]

□

3. 공판절차상 어려움 관련 인터뷰

interview① - 증인신문에 앞서

㉑ 법정에서 출석할 때 보호조치^(위의 1. a. 특강7, 특신13, 성폭20)가 있었나요?

☞

㉒ 검사로부터 비공개신청^(성폭22)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나요? [비공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질문 사항] 신청할 의사가 있었습니까? 재판부로부터 부당한 이유로 거절당하지는 않았나요?

☞

㉓ 불필요한 법정소환 방지^[법조문참조]

(1) 검사로부터 증언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성폭22의4)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나요?

☞

(2) 법정 외 신문^(형소165) 등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나요?

☞

㉔ 혹은 반대로,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는 충분히 보장받았나요? (진술 신청 받아들여졌는지 여부)^{(원27⑤, 형소294의2)[법조문참조]}

☞

㉕ 공판이 지연될 때, 지연이유 등을 설명해주던가요? 증인대기실 등에 관한 배려가 있습니까?

☞

㉖ 피해사실 노출 방지

(1) 소환절차 중 피해사실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았나요? 이를 막기위한 적절한 조치를 받았나요?^{(특신11, 성폭21)[법조문참조]}

☞

(2) 수사 및 심리 중 출판물 등에 의하여 피해사실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았
나요? (특강8, 성폭20)[법조문참조]



㉔ 피고인 등의 퇴정(특신11, 형소297)을 원하였습니까? 재판부로부터 부당한 이
유로 거절당하지는 않았나요?



㉕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음(성폭22의2)을 고지받았습니까? 신청하였
는데, 거부당하지는 않았나요? 동석하였다면 어떤 사람인지(친족, 상담원, 변호
사)? (단, 성폭22의2에 규정하는 범죄에 한함에 유의)



㉖ 형사절차로부터 소외 여부

(1) 수사검사 및 공판검사와 공판진행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렵
지는 않았나요?



(2) 고소한 사건의 수사절차 종결 후, 검사로부터 처분결과를 통지 받았습
니까? (형소258, 259)[법조문참조]



(3) 재판기일에 관해 정보를 제공받았나요? 검사로부터 기일 조정(특신12 등)[법조문참조]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나요?



(4) 검사 등으로부터 고소를 취소(본인의 의사와는 상반되게) 해달라고 종
용받습니까?



㉗ 기타

(1) 본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일은 없습니까? (성폭4)
[법조문참조]

☞

- (2) 피고인에 대한 보석취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특강6)[법조문참조]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았습니까? (특신15)[법조문참조]

☞

- (3) 소송 등과 관련하여 법률지원 및 상담, 의료지원 등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interview② - 증인신문 上

- ㉠ 논점(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수치심 유발 또는 비난조 질문을 받았나요?

☞

- ㉡ 신문 시, 판사 및 변호사 등의 신문 자세가 추궁하는 식이거나 위협적이지 않았나요?

☞

- ㉢ 수치심 유발 여지있는 질문있을 때, 판사 또는 검사가 이를 적극 제지하나요? (형소299)

☞

- ㉣ 판사 및 검사 등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 ㉤ 재판장이 피해자 본인의 진술을 끊는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헌27, 형소294외2②)

☞

- ㉥ 피고측 변호인 등이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지 않습니까? 이를 재판장이 제지합니까?

☞

㉔ 증인신문 등에 대한 재판장의 처분이 잘못되었을 때, 검사가 이의제기^(형소304. 형소규칙136)를 하는 것 같습니까?



* 관련 법조문

1-a. 증인보호조치

A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①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3. 형법 제32장의 정조에 관한 죄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및 제301조(강간등에 의한 치사상)의 죄

②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B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 (신변안전조치)

①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당해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와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범죄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6조 (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

①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또는 신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하되,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판장 또는 판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판정에 출석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당해관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C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준용)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동의 반포등)·제244조(음화동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략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략취, 유인, 매매등)·제292조(람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략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략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략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략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채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
- ②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1-b. 비공개심리 및 피고인 배제,

신뢰관계 있는자 동석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심리의 비공개)

-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원조직법]

제57조 (재판의 공개)

-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2 형사사법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②제1조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
③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1조 (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등)

①②③④(생략)

⑤증인으로 소환받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⑥재판장 또는 판사는 직권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등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제2항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

①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의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중요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임정하게 한 후 서기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등의 동석)

①법원은 제5조 내지 제9조 (주: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의강간등, 장애인에대한강음,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제추행등, 강간등상해·치상) 와 제11조(주:업무상무력등에의한추행) 및 제12조(제10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주:미수범)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칭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2-8-(1) 제한되는 신문내용

b-(3)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유형1. ⇨ 피해자의 품행, 평판, 직업 및 성관계 이력 등을 질문
→ 특별한 제한 조치가 없음을 유의 (특히, 성관계 이력 질문에 대해)

유형2. ⇨ 충분히 반항하였는지 재차질문
→ 중복신문 제한(형소299, 형소규칙74)

유형3. ⇨ 삽입시간 · 삽입 시 느낌 · 사정하였는지 여부 질문
→ 위협적, 모욕적인 신문 금지(형소규칙74), 명예해치는 신문금지(同77)

(1) [형사소송규칙]

제74조 (증인신문의 방법)

- ①(생략)
-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이하생략)

제77조 (증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 ①(생략)
- ②제1항에 규정한 신문은 증인의 경험,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등 증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 다만,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형사소송법]**

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c. 공판정 내 진술권, 이의제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

- ①(생략)
-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하생략)

[형사소송법]

제304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36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

법 제3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은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interview①-㉔ 불필요한 법정소환 방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4 (증거보전의 특례)

- ①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당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청구와그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165조 (증인의 법정외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interview①-㉔ 진술할 기회 보장

[헌법]

제27조 제5항 (피해자의 진술권)

①②③④(생략)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2. 신청인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interview①-㉕-(1)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비밀누설금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1조 (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등)

-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에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한다.
- ②재판장 또는 판사는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증인선서·증언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하여 소환된 증인의 신원확인은 검사가 제시하는 신원관리카드에 의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조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선서서에 가명으로 서명·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생략)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interview①-㉞-(2) 출판물등으로부터 보호**[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8조 (출판물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특정강력범죄중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다만, 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0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준용)**interview①-㉞-(2) 처분 등에 고지****[형사소송법]**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259조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interview①-㉔-(3) 재판기일 조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2조 (소송진행의 협의등)

- ①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및 변호인과 당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소송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③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집중심리) 및 제13조(판결선고)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소송진행의 협의)

(생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생략)

interview①-㉔-(1) 불이익처분 금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interview①-㉔-(2) 보석취소 및 피고인 신병에 관한 통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보석등의 취소)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 기타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음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5조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변동상통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에 관련된 사법경찰관·검사 및 법원의 처분내용, 재판선고기일이나 선고내용 및 가석방·형집행정지·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등으로 인한 교정시설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등 재판 및 신병에 관련된 변동상황을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성폭력 2차 피해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펴 낸 날 : 2003년 12월 20일

펴 낸 이 : 이미경

펴 낸 곳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만 든 이 : 장필화, 김정희, 박종선, 안수진, 이경환,
이미경, 이영란, 조중신

주 소 :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121-884)

연 락 처 : 전화 02-338-2890~2

팩스 02-338-7122

e-mail ksvrc@korea.com

홈페이지 : <http://sisters.or.kr>

* 본 사업은 2003년도 법무부의 용역과제로 추진된 것이나,
“본 내용은 법무부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